

# 第一篇 古代의 治安制度와 律令

# 第一章 部族國家時代의 治安

## 一. 古朝鮮의 法俗

警察의 概念은 國家 乃至 社會的 組織體內의 秩序維持를 為한 權力作用 이라는 點에 要約되므로 무엇 보다도 먼저 警察은 國家 乃至 民族 등 社會的 集團組織體의 存在를 前提로 한다. 그러나 原始社會의 그것에 대하여는 직접적으로 傳하는 史料가 없을 뿐 아니라 文獻以外의 補助科學의 成果를 통하여서도 당시 社會의 모습을 소상히 밝힐 수가 없음은 말할 나위 조차 없다. 따라서 古朝鮮의 社會生活에 대하여서도 지극히 粗雜한 지식밖에 가지고 있지 못하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는 警察制度와 관련을 갖는 古朝鮮의 法俗관계記事를 통하여 당시의 社會生活의 모습을 엿봄으로써 推測할 수 밖에 없다.

여기에서 한가지 添記하고 싶은 것은 古代의 「警察」을 일컬어 그 時代의 國家統治作用 全體의 總稱이라고 보는 見解도 있다(例 山元一雄著, 日本警察史 p 4面). 즉 西歐의 古代國家 및 近世初期의 絶對主義國家에 있어 「警察」을 國家統治作用의 一體를 包括하는 概念으로 보았기 때문에 이것을 東洋의 古代國家에 仍用하여 보자는 見解이다. 그러나 「警察」이라는 概念이 東洋에 傳來한 것은 東洋諸國이 國家政治 및 行政作用이 細分을 본 後의 일이다. 즉 歐美에 있어서는 三權이 分立되고 法治主義가 完成되어 「警察」은 다만 內務行政中의 消極行政만을 占하게 된 後의 일이므로 東洋의 「警察」概念은 歐美的 近代的 意味의 「警察」과 類를 같이하는 것이다. 西歐 古代의 「警察」concept는 스스로 性格을 달리하는 것이다.

警察史를 論述함에 있어 「警察」의 概念을 比較的 廣汎한 意義로 使用함은 時代의 相異性을 克服하기 為한 試圖이지만 東洋의 古代 「警察」에 西歐古代 「警察」의 異例의인 用語를 그대로 仍用함은 한갓 無益할 뿐 아니라 도리어 概念의 混亂을 가져 올 우려마저 있다.

韓半島에 青銅器가 傳來되어 社會의 發展이 進展됨에 따라 그 결과로 생긴 여러 部族國家 中에서 代表的인 것이 大同江流域을 中心으로 하여 일어난 古朝鮮이었다.

古朝鮮의 政治的 變遷은 檀君神話로 表現되는 祭政一致의 단계를 거쳐 部族聯盟體를 이룩하고, 古朝鮮 중 衛滿朝鮮[註·1]의 단계에 와서는 우리 나라에서 記錄上의 確實한 최초의 王朝가 세워졌다. (史記 朝鮮傳) 이동안 古朝鮮은 緩漫하나마 발전을 거듭하여 社會生活을 秩序있게 영위하였으며, 治安을 위한 法律의 必要에서 일종의 萬民法의 性格을 가진 8條의 禁法을 남기고 있다.

註 1) 李丙燾「衛氏朝鮮興亡考」(서울大論文集 人文社會科學 4. 1956)

三上次男「衛氏朝鮮國의 政治社會的性格」(東大出版會 1954)

총래 「箕子의 8條教」라 일컬어 오던 이 古朝鮮의 慣習法은 이미 先學에 의하여 古代社會에 共通되는 不文律로서 箕子之教가 아니며, 古朝鮮社會의 法俗임이 밝혀진 바 있다[註·2]. 漢書地理志에는 8조목이 전부 전하지 않고,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3조목에 지나지 않는다. 그 3조목은 다음과 같다.

- (1) 사람을 죽인 者는 즉시 死刑에 처한다.
- (2) 남에게 傷害를 입힌 者는 穀物로써 배상해야 한다.
- (3) 남의 물건을 훔친 者는 대려다 奴婢로 삼는다. 但, 自贖하려는 者는 1人當 50萬錢을 내야 한다.

위의 3조목 중 竊盜罪에 대한 規定의 但項만은 後世에 中國法의 영향을 받은 것 같다.

漢書에 의하면 武帝時(B.C 97 및 95)에 賖錢 50萬을 내게하고 死罪 1等을 凛하게 한 일이 있었는데 古朝鮮時代에 이미 貨幣가 널리流通되었으리라고 생각되지 않기 때문에(燕의 明刀錢이 流入한 것은 認定하지만) 뒤에 漢의 郡縣時代에 漢人이 郡縣內의 盜罪에 대하여 凛死賈錢法을 쓴 것으로 생각되며 따라서 이 但項만은 漢時代에 添加 혹은 改正된 것으로 생각된다.

어쨌던 이 竊盜罪에 대한 古朝鮮人의 關心은 상당히 컼던 모양이어서, 위의 제 3조목에 이어 비록 賞錢을 내고 自由民이 되었다 하더라도 國俗에 이를 부끄러히 여겼으며, 婚姻을 하려고 하더라도 相對者를 구할 수가 없었다고 한다. 이 때문에 사람들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서로 훔치지 않았고, 집의 문을 닫는 일이 없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또한 婦人們은 貞節을 지켜 음난하지 않았다고 하였는데, 이 사실로 미루어 보아 妾淫을 禁하는 1조목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은 우리 古代社會에서 흔히 볼 수 있는 慣習法이라는 데서 首肯이 가는 見解라 하겠다[註·3]. 이러한 사실은 당시의 國俗이 아름다웠다는 것을 뜻하는 한편 公共秩序의 維持를 위하여 國家權力 즉 警察權이 어느 程度 정비되어 있었다는 것을 示唆해 주는 것이다.

위의 法條目的 存在는 古朝鮮社會가 個人的 生命과 勞動力, 개인의 私有財產 및 家父長의 家族制度를 존중한 사실을 말해 주며, 아울러 原始的인 氏族社會를 벗어난 古朝鮮社會는 점차複雜化하여 나가는 과정에 있었으므로 당연히 犯罪를 다스리는 治安을 위한 權力機構가 설치되어 있었으리라고 추측된다.

다음은 古朝鮮 中興亡의 자취가 가장 뚜렷한 衛氏朝鮮의 政治組織과 軍事 내지 治安制度는 어떠하였는가. 이를 전하는 확실한 史料가 없어 詳考할 길이 없지만 大略 戰國時代의 中國諸侯王의 制度에 대조의 改編을 加하였던 것이라고 추측된다. 주 中央에 王이 있어 大臣·卿·相과 將軍·博士 및 裨王 등의 官職을 統率하고[註·4] 또 한편으로 古來의 原始部族長制의 遺習에 따

註 2) 李丙燾「所謂 箕子八條教に就いて」(市村記念東洋史論叢 1933).

3) 三國志 魏志 30 東夷傳 夫餘條 및 後漢書 東夷傳 75 夫餘國條, 周書百濟傳.

4) 史記卷 20 侯者年表에 보이는 「朝鮮將」, 「朝鮮相」, 「朝鮮尼谿相」, 「朝鮮王子」 등, 三國志魏志 東夷傳 韓條에 보이는 裴松之所引註魏略 「準信寵之, 拜以博士」, 「初右渠未破時, 朝鮮相歷谿卿以諫, 右渠不用」 등이라고 한記事 중의 官名.

라 地方에도 同名의 官職(卿·相 등)을 두었었다[註·5]. 그리고 一般百姓에 對하여는 兵農一致의 組織과 軍警一體의 制度를 施行하였으니 半島 北部의 한 小國으로서 當時 世界 最大의 帝國이었던 漢帝를 相對로 하여 一年間을 抗爭한 것, 太子를 보내어 講和하려 할 時 武裝兵 萬餘人을 거느리고 馬 五千匹 및 多量의 軍糧을 供給하려 한 事實 등으로 미루어 보건대 當時의 國家體制는 農業經濟와 軍事組織이 符合되어 强靱한 兵農一致制, 또 裨王(裨將·副將)長으로 하여금 漢使 涉何를 濟水邊까지 護送한 事實은 當時 軍警이 아직 分化하지 않았음을 意味하는 것이다.

史記 卷 115 朝鮮傳에는 이 涉何事件의 전말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즉,

「元封 2年(B.C 109)에 漢의 使者涉何가 右渠王을 曉諭하였으나, 그는 武帝의 詔書를 즐겨 받지 않았다. 涉何는 할 수 없이 歸路에 올라 國境에 到達하여 濟水에 臨하였을 때 그의 馬夫로 하여금 自己를 護送하여 준 朝鮮副將 長(人名)을 刺殺하고, 곧 江을 건너 榆林關에 駐入하여 돌아가 武帝에게 報하되 “朝鮮 將을 殺害하였다”고 하니 帝는 이를 壯히 여겨 詰難하지 않고, 그를 遼東 東部都尉에 임명하였다. 이에 朝鮮이 涉何를 怨望하여 發兵 襲攻하여 그를 殺害하였다」는 것인데, 이 涉何事件은 다음과 같은 當時의 國際事情을 想定케 한다.

첫째, 衛氏朝鮮은 元來 漢武帝와 附庸關係에 있지 않았다. 萬一 衛氏朝鮮이 漢武帝의 附庸國이었다면 漢武帝의 使者가 恣意로 衛氏朝鮮의 護送將을 殺害하지 못하였을 것이며, 또 漢帝는 決코 그것을 壯舉로 여겨 殺害者를 榮進시키지는 않았을 것이다.

둘째, 衛氏朝鮮이 어느 程度 漱武帝에게 對抗할 만한 實力이 있었다. 衛氏朝鮮이 漱武帝에 比하여 弱小하였을 것은勿論이지만 萬一 그와 對抗할 能力이 全然 없었다면 漱武帝의 國境要職인 東部都尉에 대하여 이를 襲攻 殺害하지는 못하였을 것이다.

셋째, 漱帝의 使者를 國境까지 無事히 安着케 하기 爲하여 副將을 派遣同行케 한 것, 卑怯하게도 同行 護衛將을 暗殺한 涉何에 對한 응징을 加하기 爲하여 奇襲兵을 發한 것 등은 當時 軍警이 아직 分化되지 않았음을 가리킨다.

## 二. 漱郡縣時代의 法俗

世界帝國을 자랑하던 漱의 武帝는 衛氏朝鮮이 匈奴와 연结하여 狹攻할 것을 두려워하여 水陸兩面으로 大軍을 보내어 東征軍을 일으켰다. 당시의 衛氏朝鮮王 右渠는 漱의 大軍을 맞아 그 銳鋒을 꺾기 몇 차례였으나, 결국 王儉城이 함락됨을 계기로 1년 간의 抗爭끝에 漱軍에게 降服하였다. 그리하여 漱은 衛氏朝鮮을 滅亡시킨 그해(B.C 108) 古朝鮮의 版圖 안에다 樂浪·眞番·臨屯의 세 郡을 두고, 그 이름해(B.C 107)에 濟貊의 땅에 玄菟郡을 두어 이른바 漱 4郡이 設置되었다. 漱의 郡縣은 設置當初부터 우리 民族의 抗拒에 부딪쳐 그 支配領域를縮小시켜 나갔는 데 前後 약 4세紀에 걸쳐 韓半島의 北쪽 一部를 支配하였다. 漱의 統治方式은 郡縣制度에

5) 史記 卷 115 朝鮮傳「大臣成己又反復攻吏」, 漱書 朝鮮傳 應劭註「下戎狄不知官紀 故皆稱相」

있었는데, 즉 官員을 中央政府 或은 그 所屬인 幽州刺史(牧이라 稱한 때도 있었음. 刺史는 郡國을 周行하여 治政·監察·冤獄斷理를 任務로 함)로 부터 任命派遣하였다(郡初取吏於遼東).

當時의 郡은 지금의 道·縣(大略 方百里)은 지금의 郡에 該當하며, 郡 밑에는 많은 屬縣이 있었다. 郡에는 文官職인 太守(秩 二千石)와 武官職(漢書 卷 19 百官公卿表 掌佐守典武職甲卒)인 都尉(秩比 二千石)를 두고, 그 밑에 각각 屬官인 丞(秩 六百石)을 附設하여 이를 補佐케 하였으며, 邊郡에는 丞 대신 特히 兵馬만을 掌理하는 長史(秩 六百石)를 두었다. 또 郡 人口 20萬에 孝廉 1人을 薦舉하여 兵禁을 管掌하고 盜賊을 防備하였다[註·6].

그리고 縣에는 그 大小에 따라 각各 令(萬戶 以上의 縣에 둠, 秩 千石 乃至 六百石)과 長(萬戶 未滿의 縣에 둠, 秩 五百石 乃至 三百石)을 두고 그 밑에 長吏(秩 四百石 至 二百石)인 丞과 尉(左尉 右尉), 少吏(百石 以下)인 斗食(月俸 11斛)과 佐史(月俸 8斛)를 같이 두어, 각각 文治의 補佐와 盜賊을 잡아 가두는 일을 맡아보게 하였다[註·7]. 또 지금의 邑·面에 해당하는 鄉(大概 10亭이 1鄕)에는 教化를 主掌하는 三老(秩 百石)·聽訟 및 收賊稅를 맡아보는 聲夫와 巡察을 일삼고 盗賊을 防備하는 游徼를 두었으며 洞·坊에 該當하는 亭(大概 10里가 1亭)에는 亭長을 두어 盗賊을 잡게 하였다. 里에는 1里百家를 管掌하는 里魁와 民에는 10家를 主宰하는 什과 五家를 主宰하는 伍가 있었는데 이들은 相互 檢察하여 民間의 善한 일을 鑑定하고 惡한 일을 告官에게 告하는 風俗警察 등 末端行政을 擔當하였다[註·8].

그리고 그 밖에 郡에는 鹽官·鐵官·工官·水官 등을 두어 각各 鹽·鐵·工·稅物·魚利·漁稅 및 이에 附隨하는 行政을 管掌케 하였으며, 또 三輔都尉 或은 關都尉를 두어 出入을 살피고, 邊郡에 農都尉를 두어 屯田을 管掌하고, 屬國都尉를 두어 蠻夷의 投降者를 管掌하여, 邊縣에 障塞尉를 두어 오랑캐의 침범을 防止하였다[註·9].

이 가운데 將・游徼 및 亭長은 각 縣·鄉·亭의 盗賊을 檢舉處理하는 일을 管掌하고 있었으므로 武備가 必要하였으며, 따라서 5兵 즉 弓弩·轍·楯·刀劍·甲鎧를 修習設備하고 있었다. 將은 大縣에 2人(左·右將) 小縣에 1人을 두어 主로 盗賊을 다스리되 告訴·告發人の 名分이 서지 않으면 百方 探索하고 前科 및 虐犯者 등을 調查하여 犯罪의 端緒를 捕捉함을 職務로 하였다. 그리고 亭長은 巡察을 擔當하고 2尺板을 所持하여 盗賊을 追窮하고 捕繩으로써 犯法者를 逮捕하였다.

要컨대 이 時代의 警察制度는 比較的 完備되어 위로는 郡의 太守·縣尉·孝廉, 縣의 令·長과 將가 있고, 아래로는 鄉의 游徼, 亭의 亭長, 末端의 里魁와 什·伍에 이르기까지 그 組織이 整備되었던 것 같다. 다만 우리 民族의 抵抗과 戰爭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어느정도 실시되었으며, 또 實効를 지니고 있었느냐에 대하여는 매우 疑問이라 하겠다.

한편 漢武帝가 東方郡縣을 設置한 以來 4百餘年間에 걸쳐, 中國에서는 여러 차례 王朝交替와

註 6) 漢書 卷19上 百官公卿表. 後漢書 卷38 百官志 28

7) 上揭 漢書

8) 上揭 漢書

9) 上揭 後漢書

疆域의 消長, 管轄의 變動이 있었지만 그들의 郡縣統治策에는 커다란 變化가 없었다. 즉 邊境에는 武官職 兼 警察機關인 都尉와 長史 등을 두고, 内縣에는 尉·游·亭徼·亭長·里魁 等 警察機關을 두어, 抑壓을 加하는 한편 末端行政의 自治를 許容하고 懷柔策을 써서 文化侵略을 行하는 同시에 經濟的 收奪을 일삼았던 것이다. 그들은 漢의 移住民이 辰의 材木을 盜伐하다가當時의 慣習刑法에 의하여 正當하게 捕虜奴婢가 된 事件을 奇貨로 萬兵을 動員하여 殲滅하겠다고 危脅하여 多은 奴隸와 財貨를 强奪하였으며[註·10], 或은 隣接君長이나 地方渠帥에게 빙名帖인 官爵과 印綬·官禮服(衣幘)등을 授與하여 朝謁 朝貢을 强要 土產物을 收奪하였으며, 또 한편으로는 官吏·商人·富豪·農·工民·知識層 등 多數의 本國人을 移住시켜 自國의 慣習과 儀禮 및 奢侈의 氣風을 蔓延케 함으로써 우리 民族 固有의 素朴한 風習과 簡소한 社會生活이 많이 變質되어 從來의 8條의 法禁이 60餘條로 增加케 하였다[註·11].

이와 같이 治安과 秩序의 維持가 困難하여지자 警察의 機構가 多岐化하고 그 作用이 漸次 強化된 것은勿論이다. 60餘條의 內容에 關해서는 傳하는 기록이 없어 확실한 것을 알 수 없지만 大略 地方固有의 慣習法에 蕭何의 九章律[註·12]과 郡縣統治에 菲요한 律條를 添加한 것이 아닌가 推測된다.

당시의 治安狀態에 關하여 하나의 參考가 되는 것은 1911년 平南 龍岡郡 海雲面에서 發見된 粘蟬縣神祠碑(A.D. 85年 後漢 章帝 元和 2年 建立으로 比定)인데, 碑文에 그 地方의 土俗山神인 昆(?) 平山君의 威德을 讀揚하여 그 힘으로 「……順風 甘雨를 일으켜 農地를 潤澤하게 하고, 百姓이 平安長壽하고 五穀이 豊盛하며, 盜賊이 일어나지 않고 妖邪가 자취를 감추어 神의 惠澤으로 모두 吉利를 받게 하여 주십시오」라는 祈願의 뜻을 나타내고 있으니, 이것은 國民의 福利를 增進하고 社會의 秩序를 維持하는데 地方山神의 도움을 얻으려는 祈願祝文이다[註·13].

### 三. 南北 部族國家時代의 法俗

3世紀의 記錄인 三國志 魏志 東夷傳에는 우리나라 部族國家時代의 狀態를 風俗誌의 으로 記載

註 10) 三國志 魏書 東夷 韓傳

11) 漢書 卷28下, 地理志燕條에 『其田民飲食以蓬豆 都邑頗放効吏及內郡賈人 往往以杯器食 郡初取吏於遼東 吏見民無閉藏及賈人往者 夜則爲盜 俗稍益薄 今於犯禁寢 至 60餘條』라고 보인다.

12) 戰國時代 魏文侯의 師 學悝의 法經 6篇(盜法·賊法·囚法·捕法·雜法·具法)을 秦의 商鞅이 傳授하여 法을 律로 고쳐 盜律·賊律·囚律·捕律·雜律·具律로 하더니 漢 蕭何가 이에 戶律·興律·厩律 3律을 加하여 漢 9章律로 하였다.

13) 粘蟬縣碑文은 아래와 같다.

『元和 2年 4月戊午粘蟬長淳興

□建丞屬國會議無衆□□

神祠刻石辭曰

昆平山君德配代嵩威如□□

□祐粘蟬興甘風雨惠潤土田,

□□壽考五穀豐成盜賊不起

□□蟄藏出入吉利咸受神光』(朝鮮金石總覽上)

하고 있는데 夫餘·高句麗·沃沮·濱·三韓 등이 그것이다. 이들 部族國家는 南北으로 갈라져 서로 風土를 달리함에 따라 文化的 發展도 한결 같지 않았다. 이 時代도 前時代와 마찬가지로 警察權이 分化되었거나 獨立된 것이 아니므로 여기서는 主로 각 部族社會의 法俗一般에 관하여 살펴 보기로 한다.

## 1. 夫 餘

夫餘는 北만주 平原의 農安·長春地方을 中心으로 農耕과 牧畜에 從事하던 部族國家로서 그 地域이 豐饒한 平野가 많았으므로(方 約二千里) 文化가 일찍부터 發達하여, 後漢 以前에 이미 宮室·倉庫·牢獄 등 施設과 制度가 發達하였으며, 圓形의 城柵을 둘러싸고[註·14] 外敵과 治安에 對備하였다. 政治는 貴族政治로서 國中에 君王이 있고, 그 밑에 6畜으로 官名을 붙인 馬加·牛加·豚加·狗加 등 王의 近親[註·15]인 貴族層과 犬使·大使者·使者 등 官職을 두어 이들이 治者階級을 形成하였으므로, 警察權도 그들이壟斷하였을 것은勿論이다. 또 諸加는 때로 地方四出道를 管掌支配하고 따라서 그곳 警察權도 行使하였으리라고 생각되는데 그 中 大加는 數千家를 管領하고 小加는 數百家에 不過하였다. 각 邑落에는 豪民 즉 上戶와 下戶 즉 奴隸階級이 居住하고 있었는데 總戶口數는 8萬에 이르렀다.

또 諸加가 따로 主管한 四出道란 當時의 地方行政區域으로서, 出道라 이름한 것으로 볼 때에 國都로 부터 國內 四隅에 通하는 道路를 中心으로 한 地方區劃인 듯하다. 생각컨대 國王은 國都 즉 中部에 居하여 諸加를 統轄하고, 諸加는 四出道 即 四部에 割據하며[註·16] 所屬 豪民과 下民을 領率하여 後日 高句麗의 五部, 百濟의 五方制와 類似한 統治를 실시하였던 것 같다. 그리고 犬使는 大使의 錯誤이며[註·17] 大使者 및 使者 등은 漢文化의 影響으로 中國化한 職名임에 틀림없다.

國王과 諸加와의 關係는 諸侯王과 附庸國과의 關係 혹은 그 밖의 封建領主와 卿·大夫와의 關係와 類似하였을 것이다, 아직 部族聯盟體制를 完全히 脫皮하지는 못하였던 것 같다. 즉 三國志 魏志 東夷傳 夫餘條에 의하면 「後漢末에 夫餘王 尉仇臺가 죽고 簡位居가 즉위하였으나 그에게는 嫡子가 없고, 庶子 麻餘가 있을 따름이었는데 位居가 죽음에 諸加가 麻餘를 세웠다」[註·18]고 記述하고 있으니 생각컨대 夫餘에서는 嫡子가 王位를 世襲하는 것이 慣習法이었으나,嫡子가 없으므로 不得已 舊部族長會議에서 國王을 選舉推戴하던 遺制에 의하여 諸加가 評議해

註 14) 三國志 魏志 東夷傳 夫餘條에 「其民土着 有宮室 倉庫 牢獄」「古之亡人 作城柵 皆員 有似牢獄」「國有故城名濱城 蓋本濱貊之地 而夫餘王其中」.

15) 同 上書 「夫餘王……尉仇臺死 簡位居立 無適子 有孽子麻餘 位居死 諸加共立麻餘 牛加兄子名位居爲大使輕財善施 國人附之」, 「季父牛加有二心 位居殺季父父子 籍沒財物」

16) 一加가 반드시 一出道를 統轄한 것이 아니고 大概는 數加가 各出道를 다스린 것 같다. 夫餘는 地方이 4個의 出道로 構成되고 總戶數는 8萬이며, 大加는 數千戶, 小加는 數百戶를 다스림에 不過하였다(李丙壽「韓國史 古代篇 p 214)。

17) 三國志 魏志 東夷傳 夫餘條에 「國有君王 皆以六畜名官有 馬加·牛加·豬加·狗加·犬加·大使者·使者 邑落有豪民」이라고 있으나, 그 밑에 「牛加兄子 名位居爲大使 輕財善施」라고 되어있다.

18) 三國志 魏志 東夷傳 夫餘條

서 麻餘를 選擧한 듯하다. 또한 이보다도 훨씬 前인 舊夫餘風俗에서는 水災나 旱災가 發生하여 五穀이 잘 成熟치 않으면 그 結果的 責任을 王에게 둘려 王을 交替하거나 或은 죽여야 한다고 하였다 한다. 이것은 夫餘가 비록 貴族國家를 形成한 後에도 前代의 遺制가 아직도 깨끗이 除去되지 않았고, 따라서 王權이 強化되거나 弱화되었음을 意味한다. 그리하여 諸加의 地方警察權乃至 自治警察權이 強화되었음에 대하여 國王의 監督權은 能히 이것을 制御하기 힘들었던 것 같다 [註·19]. 魏志東夷傳 夫餘條에 「每家에 武器를 準備하고 있으며……敵이 있거든 諸加가 自進出戰하고 下戶는 軍糧과 馬草를 補給하였다.」 [註·20]고 있음은 外部로 부터의 敵에 대하여 뿐만 아니라 內部의 敵, 즉 盜賊에 對한 治安維持에 있어서도 諸加가 主導權을 지닌 原始的인 地域警察機構 즉 武器自擔 部民皆兵인 同時に 部民皆警인 地方警察體制가 主要役割을 하였음을 意味한다고 하겠다 [註·21].

夫餘는 그 나라의 살림살이가 넉넉하고 일찌기 國亂이 없었으며 [註·22] 土着民의 天性이 勇敢하고 謹厚하여 會同 時에는 서로 獻酬하여 握讓升降의 禮를 다하고 畫夜 질을 걸을 때에는 老幼를 莫論하고 노래를 즐겁게 불렀으며, 殷正月(12月) 迎鼓의 祭天大會 時에는 全國民이 모여 連日 먹고 노래와 춤을 즐겼다 하니 [註·23] 가위 平和스러웠다. 그러나 이와 같은 安寧과 秩序를維持함에는 음산한 牢獄, 劃一的인 邪法 및 엄한 法俗이 있었는데前述한 三國志 魏志 東夷傳 夫餘條에 「用刑이 嚴急하여 殺人者는死刑에 處하고, 또 그 家人을 奴婢로 하였으며(家族委付), 窃盜犯에게는 盜物의 12倍의 賠償을 물리고, 男女姦淫을 犯한 者 및 婦人으로서 姦忌하는 者는 모두 死罪에 處하였을 뿐 아니라, 婦德을 害하는 嫉妬를 더 미워하여 그 死體를 南山 위에 버려 썩은 다음 女家에서 牛馬를 바쳐야 屍身을 引渡하여 주었다」고 하는데 이것도 私有財產制 및 一夫多妻制의 秩序를 維持하기 為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또 祭天行事인 迎鼓 때를 擇하여 刑事裁判을 行하고 或은 囚徒를 釋放하는 등 刑事政策의 配慮를 한 흔적도 엿보이며, 君主나 大加가 死亡했을 때 殺人殉葬이 百數에 達하는 경우도 [註·24] 있었다하고, 또 位居王 때 그 季父 牛加가 反逆의 마음을 품고 있음에 王이 季父의 父子를 死刑에 處하고 그 財物을 番沒하였음을 보전해當時의 刑法이 모든 古代法과 같이 謀叛에 對하여 特히 苛烈하였음을 緣坐의 制를 실시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어떻든 이것들은 모두當時의 警察權이 社會秩序를 維持하고 法令을 強行하여 王位를 保全할 수 있을 程度로 強力하였음을 말하여주는 것이다.

註 19) 三國志 魏志 東夷傳 夫餘條에 「舊夫餘俗 水旱不調 五穀不熟 輒歸咎於王 或言當易 或言當殺」라 하였고 한편 北史 列傳 82 高句麗條에 「其大對盧 則以強弱相陵奪 而自爲之 不由王署置」

20) 三國志 魏志 東夷傳 夫餘條에 「以弓矢刀矛爲兵 家家自有鎧仗……有敵諸加自戰 下戶俱擔糧飲食之」.

21) Perkins; Elements of Police Science Page 2에는 原始警察이 共同社會員 全員임과 武器自擔임을 說明하고 있다.

22) 三國志 魏志 東夷傳 夫餘條

23) 上揭書

24) 殉葬의 習俗이 存在하기 為하여는 무엇보다 絶對的인 權威主義下에 君主 및 貴族에게 非自由人에 대한 生殺與奪權이 있음을前提條件으로 한다. 그러므로 이 時代의 警察權이 가장 嚴酷하였음을 엿볼 수 있다.

## 2. 高句麗

傳說에 의하면 夫餘이 일파인 高句麗가 朱蒙의 인도를 받아 鴨綠江 中流, 佟佳江流域에 자리 잡고 일어난 것은 B.C 37년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 지방에는 이미 B.C 3세기경에 장차 高句麗를 건설할 土着社會의 劢勢이 結集되어 가고 있었다. 그것은 뒤에 高句麗 墳墓의 石室로 그構造가 계승되어 나가는 支石墓가 이때 이 地方에서 만들어졌으므로 미루어 알 수 있다[註·25]. B.C75年 玄菟郡의 移動은 곧 土着社會의 反抗에 부딪쳤기 때문이므로 高句麗의 部族聯盟形成은 이미 이 무렵에 시작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와같이 高句麗는 처음부터 漢民族과의 투쟁과정에서 成長되어 갔고, 그들에게는 強한 군사력이 요청되었고, 이러한 過程에서 高句麗支配層의 軍事的 組織이 더욱 堅固하여졌다. 이리하여 高句麗는 外民族과의 투쟁과정 속에서 강력한 대외 발전을 펴하여 1世紀의 太祖王 때에 와서는 古代國家를 形成하기에 이르른 것이다.

元來 高句麗를 이룩한 中心세력은 消奴部·絕奴部·順奴部·灌奴部·桂婁部의 5族이었다. 奴는 那로도 표현되는 部族單位의 集團(政治的 社會), 즉 原始的小國 内지 部族國家로 알려져 있다[註·26]. 따라서 高句麗의 部族聯盟은 5族이 핵심이 되었고 古代國家형성 이후에도 部族長의 세력이 強한 部族聯盟의 형태는 상당히 오랜동안 계속되었다. 이러한 상태였으므로 옛 王族인 消奴部의 適統大人이나, 王妃族인 絶奴部는 王室 宗族의 相加(大加)와 함께 古雛加의 特別한 존칭을 받을 수 있었다. 또 首相格에 해당하는 것으로서는 聯盟長의 補佐의 存在인 道한沛者나, 그렇지 않으면 여러 聯盟部族의 추대로 王族이외의 가장 有力한 部族長이 취임하는 對廬가 있었는데 對廬는 部族的 傳統을 이은 것이다. 또 王이 거느리고 있는 家臣으로 使者·皂衣·先人 등이 있었으며, 이 밖에 古代國家시대에 까지 殘存한 職名으로 主簿·優臺·丞 등이 있었는데, 다만 治安내지 警察職을 專擔하던 中央官職의 有無 및 그 職名은 지금으로서는 상고 할 길이 없다.

한편 地方行政區域으로서의 五部는 桂婁部(뒤의 內部 或은 黃部), 絶奴部(뒤의 北部 或은 後部), 順奴部(뒤의 東部 或은 左部), 灌奴部(뒤의 南部 或은 前部), 消奴部(뒤의 西部 或은 右部)(後漢書 東夷傳 高句麗條)인데 이것은 扶餘·百濟의 그것과도 共通되는 道한ペ여 桂婁部(内部)가 王位를 世襲하고 있었으나 觀念上으로는 順奴部(東部)가 上位를 차지하였으며(張楚金의 翰苑 高麗條 雍民註) 消奴部(西)부가 下位에 處하였다, 이것은 天文五行思想에서 由來한 것 같다. 그리고 처음에는 國都를 中心으로 한 縣內五部制가 實施되더니 領土가 擴大됨에 이르러 都外에 對한 縣外五部制가 竝置되었던 것 같다. 警察權도 이에따라 地域의 으로 擴張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部族國家時代 高句麗의 國家組織 중 특히 治安관계의 사실을 抽出해 내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며, 더욱이 그것이 制度로서 整備를 보게 되는 것은 高麗時代에서 朝鮮時代를 거치는 時期에

註 25) 三上次男「滿洲地區における支石墓社會の推移と高句麗政權の成立」(東京大學敎養學部 人文科學紀要 2. 1954)

26) 池内宏「高句麗의 五部及五族」(東洋學報 1621. 1926), 三品彰英「高句麗の五族に就いて」(朝鮮學報 6. 1954)

된 것임은 다 알려진 事實이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高句麗初期의 法俗관계 記事를 통해 당시의 治安事情을 추측해 볼 方途밖에 없다.

高句麗人은 元來 夫餘의 한 갈래로서 言語 風俗이 夫餘와 비슷한 바 많았으나 다만, 그 領域에 高山深谷이 많고 沃野가 없어서 힘을 다해 耕作을 하여도 食糧이 不足하므로 人性이 凶急하여 항상 戰鬪를 악하고 다른 나라를 侵犯하기를 즐겨하였다(魏志 高句麗傳)라고 한 것으로 보아, 夫餘와는 다른 점이 많았다. 그러나 歌舞를 좋아하고 厚葬의 風習이 있었으며, 窃盜者에 대하여 十二倍의 賠償을 課한 것 등은 또한 夫餘와 같았다[註·27]. 다만 高句麗에는 牢獄이 없어 犯罪者가 있으면 諸加가 評議하여 死刑에 處하고 그 妻子를 奴婢로 삼았다 한다(家族委付의 制). 牢屋이 고구려에 없었던 이유는 征服國家로 발전해 나가는 過程에서 강력한 규제가 필요했던 것이다. 그리하여 高句麗에 있어서는 夫餘에서 보다 그 治安과 秩序維持가 한 層 困難하였으며 따라서 警察力도 보다 強化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생각된다.

高句麗의 初期社會에 있어서 法俗이 매우 준엄했던 사실은 三國史記 高句麗本紀의 곳곳에 그 사례가 散見된다.

곧 琉璃明王 때 祭天用의 犧牲에 쓰일 奴婢를 잘못 다루어 託利와 斯卑 두 사람을 極刑에 처한 것이라던가[註·28] 同王 28年 父王에게 不孝하였다하여 太子를 極刑에 처한 것 등의 사례는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다[註·29]. 要컨대 高句麗의 初期社會는 이렇게 法俗이 엄격함으로써 秩序를 유지하고 治安을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에 나아가 征服國家로서 對外的인 發展을 期할 수 있었던 것이다.

### 3. 沃沮 및 東濱

이 두 社會가 위치하고 있던 東海岸 地域은 일찌기 臨屯이란 土着社會가 있다가 뒤에 漢의 郡縣이 설치되었던 곳이다. 邑落의 渠帥들이 자칭 三志라고 부른 것은 郡縣時代의 遺風이며 그 후 이 두 社會는 모두 高句麗의 支配下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 두 社會는 權力의 集中을 보지 못한 未熟한 部族社會였으므로 統合된 國家組織이 발달하지 못하여 治安組織 같은 것도 보잘것 없었으리라 생각되나 法俗은 매우 엄했던 것이다. 즉 사회의 발전면으로 보아 전면적인 후진성을 떠어 원시적인 모습을 보여 주면서도, 한편 私有財產觀念의 발생은(豫婦制) 완만하나마 文明社會로의 移行을 말해 준다고 하겠다.

沃沮와 東濱는 모두 그들 社會全體를 統轄하는 王이 없고, 각 邑落마다 渠帥가 있을 뿐이었고 이들은 민간에 섞여 살고 있었다. 東濱에서는 각 邑落마다 獨립된 境界가 설정되어 있었는데 이를 侵犯하는 경우에는 責禍라하여 奴婢·牛馬 등으로 賠償을 치르게 하였다. 또 殺人者는死刑에 처하였으며, 또 도둑이 적었는데 言語 法俗이 대체로 高句麗와 같았다고 한다[註·30].

註 27) 太平御覽卷783 四夷部 高句麗條所引 魏略.

28) 三國史記高句麗本紀 琉璃明王 19年 8月條

29) 上揭書 同王 28年條

30) 三國志魏志 東夷傳濱條.

#### 4. 三 韓

B.C 4~3世紀경에 漢江이 남에 까지도 傳播되기 시작한 金屬文化는 南韓의 原始社會를 崩壞시키고, 支石墓를 중심으로 族長의 權威가 成立되어 政治的 社會가 成長하고 있었다. 이러한 社會의 발전의 결과로 나타난 것이 辰國이었던 것 같다.

記錄上에 辰國이 처음 나타나는 것은 衛氏朝鮮이 成立되었을 때 즉 古朝鮮후기의 무렵이었다. 이 무렵 金屬文化의 惠澤을 입은 流移民이 古朝鮮지방으로 부터 계속하여 辰國社會로 들어왔다. 이리하여 漢郡縣설치 당시의 辰國社會는 駒차 流移民과 土着社會가 結合되어 社會의 발전을 이룩하게 되었다. 이 결과 새로 개편된 것이 馬韓·辰韓·弁韓의 三韓으로서, 數10개의 小國 즉 部族國家로 形成되어 있었다. 三韓전체의 王(部族聯盟長?)으로 月(目)支國(지금의 穂山?)의 辰王이 있었는데, 強力한 權力의 소유자는 아니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 小國들은 각각 族長이 있었는데, 그 大小에 따라 渠帥로 혹은 臣智 혹은 邑借로 불리웠다.

三韓의 社會는 아직 權力의 結集을 보지 못한 小國割據의 未熟한 部族社會였기 때문에 中國人으로 하여금 「綱紀가 확립되지 못하고 따라서 각 邑落이 雜居하여 서로 制御하지 못할 정도의 跪拜之禮가 없었다」<sup>[註·31]</sup>고 평할 정도의 高句麗에 비해 後進의 社會였다. 또 그들은 서로 「徒」라고 부르는 原始의 共同體를 이루고<sup>[註·32]</sup> 모양이 무덤과 같고 門이 위에 있는 움집에서 살며 長幼와 男女의 구별이 없었다고 한 것은 좀 과장이기는 해도 또한 그 後進性을 드러낸 것이라 하겠다. 그러나 弁韓에서는 婚姻의 禮俗이 바르고 法俗도 특히 엄격하였다고 한다. 물론 그 法俗의 內容이 어떤 것이었는지 仔詳한 것은 기록이 없지만 대체로 고구려·부여의 경우와 비슷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당시 三韓의 治安狀態 및 刑罰權(警察權)이 파연 어떠하였는지에 대하여는 밝힐 길이 없다. 다만 注目되는 것은 三韓社會의 祭政分離단계를 示唆해 주는 蘇塗를 통해 당시의 法俗의 일상을 추측하게 한다. 즉 三國志 魏志 東夷 韓傳 馬韓條에 의하면 「信鬼神 國邑各立一人 主祭天神 又諸國 各有別邑 名之爲蘇塗 立大木 縣鈴鼓 事鬼神 諸亡逃至其中 皆不還之 好作賊 其立蘇塗之義 有似浮屠 而所行善惡有異」라고 하여, 각 國邑에는 天神을 主祭하는 祭祀長을 두어 天君이라 하고, 또 小國에는 別邑이 있어서 蘇塗라고 불렀는데 天君이 주관하는 지역이었다. 여기에는 큰 나무를 세우고, 거기에 방울과 북을 달아서 종교적 의식에 사용하였다고 한다. 이 蘇塗에 대하여는 몇 가지 學說이 있어서 樹木崇拜·靈場說 등이 그것인 바 아마도 神聖地域이었는듯 하다<sup>[註·33]</sup>. 그러므로 罪人이 이 區域內에 들어오면 잡아가지를 못하였다. 즉 蘇塗는 罪人에게 있어서는 일종의 治外法權地域이 되었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이를 惡用하여 도둑질하는 者가 많았으리라고 추측된다.

註 31) 三國志魏志 東夷傳 韓條

32) 三國志魏志 東夷傳 辰韓條

33) 孫晉泰「蘇塗考」, 「蘇塗考續補」(民俗學 4~4. 5~4. 1932. 1933) 白鳥庫吉「滿鮮の竿木崇拜」(史學雑誌 47~1. 1936). 田村專之助「魏志馬幹傳に見えたる蘇塗に就いて」(史觀 9. 193).

村上正雄「魏志·韓傳に見えたる蘇塗の一解釋」(朝鮮學報 9. 1956)

## 第二章 三國時代의 刑律

### 一. 高句麗의 國家組織과 刑律

高句麗는 이미 1세기의 太祖王 때 古代國家의 形成을 보았으나, 그후 外民族과의 抗爭을 거치는 동안 國家體制의 재정비가 요구되었다. 이러한 요구에 응하여 4세기의 小獸林王 때는 새로운 制度와 文化的 수입에 노력하여 國家組織의 정비에 힘썼는데, 이 때에 반포된 律令은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다만 우리는 당시에 반포된 律令의 내용을 記錄이 없어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高句麗가 國家組織을 完備하고 古代國家로서의 極盛期를 맞이한 것은 5세기 長壽王 때의 平壤遷都 以後의 일이다.

즉 高句麗는 비로소 完備된 정치·경제·군사 등 制度를 갖추게 된 것이다.

高句麗의 官階組織은 部族國家時代로부터의 傳統이 완전히 止揚된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古代國家의 專制機構로서 과거의 複數의 官僚體制는 解消되고 단일 官僚體制가 成立되었다[註·1].

이제 翰苑(蕃夷部) 高麗條 雍氏 註 所引의 「高麗記」를 비롯하여 周書·北史·隋書·新舊唐書 등에 의거하여 당시의 官制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大對盧(一名 吐掉, 一品官)	(2) 太大兄(一名 莫何何羅支, 正二品官)
(3) 鬱折(一名 烏拙, 從二品官)	(4) 太大使者(一名 謄奢, 正三品官)
(5) 皂衣頭大兄(從三品官)[註·2]	(6) 大使者(正四品官)
(7) 大兄(正五品官)	(8) 拔位使者(從五品官)
(9) 上位使者(一名 乙耆, 正六品官)	(10) 小兄(一名 失支, 正七品官)
(11) 諸兄(一名 翳屬, 從七品官)	(12) 過節(正八品官)
(13) 不節(從八品官)	(14) 先人(一名 仙人, 正九品官)

以上의 14等官階 중 (12), (13)를 除外하고 12等官階로 보기도 하는데, (5)까지의 5官은 國家의 機務·改法·徵發·官爵授與 등의 직무를 쥐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들이 警察權도 統帥한 것으로 추측된다. 이중에서 특히 注目되는 것은 太大兄, 皂衣頭大兄·大兄·小兄·諸兄 등인데, 兄은 年長者·家父長的 族長의 뜻을 포함하고 있으며, 部族國家時代의 族長의 官性格을 지니고 있던 것이 古代國家로 轉換하는 過程에서 각기 相應하는 여러 兄이라는 官職名으로 개편된 것으로 여겨진다[註·3]. 다음으로 注目되는 것은 太大使者·大使者·牧位使者·小使者 등 使者의

註 1) 金哲俊「高句麗·新羅의 官階組織의 成立過程」(李丙燾博士華甲紀念論叢, 1956)

2) 李丙燾博士는 男生墓誌에 보이는 中襄位頭大兄으로 추측한 바 있음(韓國史古代篇 p. 537)

3) 金哲俊教授의 上揭 論文 參照.

이름이 붙은 官等인데, 이들은 族長의 兄과는 달리, 一般 氏族員으로부터 등용된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 地方組織에 대하여 살펴보면 初期에 五族聯盟體制는 古代國家로서의 國家組織이 정비됨에 따라 그것이 畿內(五城을 中心으로 한 四方五百里)의 行政區域으로서의 五部制로 轉化되었다[註·4].

각 部에는 嫡統大人이란 「大加」가 그 部長의 地位를 世襲하고 部內를 統率하였으며 때로는 私兵을 가지기도 하였다. 그리고 畿外도 또한 五部로 나누어 각 部에 都督 或은 太守에 該當하는 補薩을 두어 이를 鎮撫케 하고, 管內의 모든 城鎮에는 刺史와 같은 處閭近支 혹은 道使를 두었다. 그리고 그 밑에는 參佐分幹과 武官인 大模達(衛將軍과 같음, 皐衣頭大兄 以上으로 補함), 末客(中郎將과 같음, 大兄 以上으로 補함) 등을 두어[註·5] 文武事를 分掌케 하였고, 이들이 段階를 이루어 각각 地方警察權을 掌握 行使하였다고 생각된다. 그 밖에 또 國內秩序를 維持하여 때로는 國境을 警備하기 為하여 巡檢制로서 오늘날의 巡警 혹은 憲兵에 해당하는 者로 하여금 巡邏에 從事케 하였는데, 이른바 「武厲羅」와 같은 것이 그것이다. 武厲는 遼西에 있던 高句麗의 城名인데, 國境의 모든 城에서 이와같은 巡邏를 行하였다 것이 分明하다. 海東釋史卷7에 보이는 資治通鑑으로 부터의 引用文에 「高句麗 置邏於遼水之西 以警察渡遼者」라고 있으며, 또 三國史記 婁陽王 23年條에도 唐太宗의 「是行也 唯於遼水西 拔我武厲邏……而已」라고 있다.

高句麗에서는 또 이밖에 內評 外評의 制가 있었는데 생각컨대 內評은 首都 五部를 中心으로 한 畿內의 뜻인 듯하고, 外評은 畿外의 地方五部를 意味한 것인 듯하다[註·6]. 그리고 首都 平壤 以外에 舊都인 國內城 및 漢城(지금의 載寧)의 두 別都를 두었는데 이것을 三京이라 稱하여 特別官司를 두어 治安을 維持하고, 行政을 管掌케 하였다[註·7].

한편 法俗에 있어서는 初期의 傳統이 末期까지 계승되었다. 즉 舊唐書 東夷傳 高麗條에 의하면 高句麗의 法에는 謀反(內亂罪)이나 謀叛(外患罪)을 犯한 者가 있으면 民衆이 모여 火刑시킨 후에 목을 베고, 그 家產 全部를 没收하였고, 城을 지키다가 敵에게 降服한 者, 戰陣에 臨하여 敗走한 者, 殺人者 및 剽劫者는 斬刑에 處하였다. 이 밖에도 盜者에게는 12倍의 賠償을 하도록 하였는데(夫餘와 같았음) 萬一 가난하여 賠償하지 못할 경우와 公私間 負債가 있는 때에는 그

五 部 名	別 名	종래의 部族名
內 部	黃 部	桂 婁 部
北 部	後 部	絕 奴 部
東 部	左 部	順 奴 部
南 部	前 部	灌 奴 部
西 部	右 部	消 奴 部

※ 이 表는 後漢書東夷傳(高麗條)의 註(唐章懷太子註)에 의거하여 作成하였음.

5) 新唐書卷220 東夷傳 高麗條

6) 李丙燾「韓國史古代篇」p. 540

7) 後周書 卷49 異域傳上 高麗條

子女를 評價하여 奴婢로 삼아서 償還하도록 하였고, 他人의 牛馬를 殺傷한 者는 奴婢로 삼았다. 이렇게 用刑이 極히 峻嚴하였으므로 犯法者가 적어 비록 路上에 遺失物이 있을지라도 이것을 拾得 橫領하는 者가 없을 程度였다. 또 앞서 본 바와 같이 高句麗 初期에 關한記事로 魏志 東夷傳 高句麗條에 「無牢獄 有罪 諸加評議 使殺之 没入妻子 爲奴婢」라고 記錄되어 있어 重罪者가 있으면 諸部 族長이 評議하여 死刑을 決定하였다 하는데 이 部族國家時代의 族長 中心의 遺制는 高句麗의 末期까지 繼續되었던 것이다.

다음으로 高句麗의 律令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겠다. 高句麗가 中央集權의 古代國家의 專制機構의 整備過程에서 制定을 본 律令은 部族國家時代의 慣習法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律과 令은 高句麗에 있어서의 二大根本法이었다. 律은 刑罰法典이고 令은 非刑罰法典이며 따라서 律과 令은 그 表裏를 이룬 것이다. 즉 律은 禁止法이고 令은 命令法이며 律은 犯人懲戒法이고 令은 行政法的 規定이다. 令에 違反하면 違令罪로 處罰되었을 것이다. 이 時代에는 아직도 警察法規의 顯著한 分化가 없었으므로 律 즉 刑罰法規를 통하여 警察活動의 輪廓을 엿보기로 한다.

三國史記 高句麗本紀에 의하면 小獸林王 3年(A.D 373)에 비로소 律令을 頒布하였다는 記錄이 나온다. 따라서 이記事內容이 史記에 흔히 보이는 個別의 인政令(例컨테赦免 등)에 關한 것이 아니고 一般的의 律令의 公布를 意味하는 것이므로 이때 高句麗가 비로소 成文法인 律令을 頒布하였음이 틀림 없다. 元來 高句麗의 國土는 그 版圖 全部가 漢·魏·晉의 郡縣故地였으며 이들 歷朝의 律令이 施行되고 있던 곳이므로 비록 主權國의 更迭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곳의 法令이 一朝一夕에 變更될 수 없었을 것이며, 또 成文法時代로 부터逆行하여 不文法下의 生活을 오래 營爲하기란 비록 一人專政時代라 할지라도 推想하기 힘든 일이다. 그리하여 高句麗가 이와 같은 環境下에 小獸林王代에 이르러 비로소 律令을 頒布하였다는 것은 오히려 뒤늦은 感이 없지 않다.

여기서 高句麗의 法域이 擴大되어 간 經緯와 理由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다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漢武帝가 郡縣을 設置한(B.C 108 元封 3年) 後, 33年만인 昭帝 元鳳 6年(B.C 75)에 玄菟郡이 그 管下 土着民(濶貊 즉 高句麗人)의 侵攻으로 그 治所 高句麗縣을 지금의 通溝地方에서 興京老城地方(渾河上流)으로 移去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에 鴨綠江 中流域 方面 舊屬縣들은 實質적으로 漢의 統治를 免하게 되어 여기에 高句麗 部族의 發祥이 이루어졌으며, 곧 이어 新 玄菟郡의 東邊 二縣(西蓋馬 上殷臺)의 땅을 아울르고 漸次 擴大 統一에의 길을 밟아 第6代 太祖王 때(後漢初) 다시 玄菟郡治를 撫順地方으로 물리치고, 後漢未頃에 이르러 沃沮와 東濶를 隸屬시켰으며, 西晉末(A.D 313, 美川王 14年, 懿帝 建興元年)에 드디어 四百二千餘年間 漢族의 郡縣統治의 據點이었던 樂浪을 奪還함에 이르렀다. 이와 같은 高句麗 版圖의 擴張過程은 그 위에 實施되고 있된 中國 歷朝 法制의 一部 驅逐과 一部 繼受를 意味하는 것이었다.

그러면 小獸林王의 律令 頒布當時의 이곳 國際關係는 어떠하였던가. 小獸林王 3年은 前秦王苻堅의 建元 9年, 東晉 孝武帝의 寧康元年(A.D 373), 前涼의 太清 11年에 해당한다. 高句麗

가 3世紀 中葉(A.D 244~5 東川王 18.9年, 魏 正始 5~6年), 曹魏(母丘險)의 侵寇로 一時 遷都(丸都城에서 東黃城으로)[註·8]가 不可避하게 되었으나, 이 國難은 오히려 高句麗人에게 奮發의 機會를 주고 自強의 刺戟劑가 되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위에서 본 바와 같이 第15代 美川王 14年(A.D 313)에는 華北의 混亂을 틈 타 樂浪을 奪還하고 나아가 帶方을 侵攻하였으며, 또 一時慕容氏(燕, 鮮卑族)의 侵犯(A.D 342)으로 國土의 참담한 被害를 맛본 일도 있었으나(第16代 故國原王 때) 前秦王 苻堅(5胡 중의 氏)이 燕을 討滅(A.D 370)한以後로는 이와 友好關係를 맺어, 小獸林王 2年(A.D 372)에는 前秦으로 부터 佛僧 順道와 佛像經文 등을 보내 온 일이 있었으며, 또 大學을 세워 貴族子弟 教育에 새로이 힘을 기울였다.

당시 大陸에는 五胡(鮮卑·匈奴·氐·羌·羯)가 연달아 일어나서 16國이 與亡하였으나, 前秦王 苻堅은 賢相 王猛을 얻어 國勢興隆의 一路를 밟던 때였으며, 이와 反對로 晉室은 南遷 衰微하여 幼帝下 桓溫의 專擅으로 江南을 保有했을 때였으나, 그 傳統文化의 힘은 領域外의 諸族 및 高句麗에도 큰 影響을 미쳤다.

다음 高句麗에 歸屬하기 以前의 郡縣을 統治하면서 이에 適用되던 中國歷朝의 律令에는 어찌한 것이 있었던가 살펴보기로 하자. 古朝鮮에 있어 古來의 慣習刑인 八條의 法禁이 適用되고 있었다함은 앞서 지적한 바와 같다. 이 땅에 漢의 郡縣이 設置되면서 外來의 風俗이 섞여 들어와 土着民의 生活이 複雜해지고 人智가 發達하고 貧富의 差가 심하여 감에 따라 法禁이 차차增加되어 八條로 부터 六十餘條에 達하였다함(漢書 地理志 燕條)은 漢郡縣 初期의 法生活 變遷의 一端을 말하여 주고 있다. 六十餘條의 内容에 關하여서는 이것을 확실히 알 수가 없으나 當時 漢에 適用되고 있던 蕭何의 九章律이 그 主要한 内容을 이루었던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漢郡縣 設置 前後 數世紀間 처음에는 秦·漢의 舊律을 襲用하고 있었고, 다음에는 蕭何의 九章律에 叔孫通의 傍章(律所不及) 18篇(高·惠間), 張湯의 越宮律 27篇(孝武 時), 趙禹의 朝律 6篇(孝武 時)을 加한 律 合 60篇과, 令(漢時決事集) 300餘篇 및 鮑司徒의 嫁娶辭訟決을 撰하여 만든 法比都目 906卷이 通用되고 있었다. 그런데 때에 따라 增損이 있었을 뿐 아니라, 通條連句가 上下 서로 關聯하여 錯雜無常하였으며 이에 대한 諸家(叔孫宣·郭令卿·馬融·鄭玄 등)의 解釋이 또한 紛紜하였으므로(諸儒章句 十有餘家, 家數十言, 凡斷罪 所當由用者 合26.272條, 7.732.200餘言) 魏 明帝(曹叡)는 鄭氏 章句를 專用토록 하였다. 그러나 律文이 複雜하고 事例가 많으므로 陳羣·劉邵·韓遂·庾嶷·黃休·荀詡 등으로 하여금 舊科를 간추리고 漢律을 參考삼아 新律 18篇과 州郡令 45篇, 尚書官令·軍中令 合 180餘篇을 制定公布하였다. 그리고 또한 晉代에 들어가 武帝는 다시 賈充(鄭沖·荀覲·荀勗·羊祜·王業·杜友·杜預·裴楷·周權·郭頤·成公綏·柳軌·史榮邵)등 14人으로 하여금 舊律의 까다로운 것을 생략하고 清約한 것을 保存하여(例컨대 袭斬·族誅·從坐의 制를 減하고, 謀反罪의 嫡養母 및 出嫁女 遷坐를 除去하였으며 禁固相告의 條와 没入官婢의 制를 省減하고 過誤老少女人에 대하여 刑을 輕減하였으며 罰金 및 杖刑을 牛減하고 伯叔母奸淫을 重罰한 것 등) 泰始律 20篇 620條(27.657言)를 制定하고

註 8) 李丙燾「高句麗 東黃城考」(東國史學 第4輯 1957)

또 軍事 田農 등에 關한 規定 令 40篇 2,306條를 制定하였다(秦始 4年 A.D 268).

西晋의 泰始律令이 制定된 것은 高句麗의 小獸林王이 律令을 頒布한 때 (A.D 373)보다 105年前이었다. 泰始律이 制定될 當時 樂浪·帶方·玄菟 등 諸郡은 西晋의 郡縣으로서 幽州에 屬하여 있었으며, 後日 幽州를 나누어 平州를 둘에 따라 다시 後者에 屬하게 되었던 것이다 (A.D 274). 樂浪·帶方 諸郡이 滅亡 (A.D 313~4)한 後도 高句麗와 東晋과의 交通은 繼續되었으며 史記에 나타난 것만도 故國原王時 (A.D 331~370) 同王의 6年 및 23년의 二次에 걸쳐 遣使하고 있다.

그리하여 晉의 文物은 高句麗에 많은 影響力を 주었던 것이다. 泰始律은 西晋의 影響下의 樂浪·帶方·玄菟 등 郡縣故地에 實로 46年間에 걸쳐 適用되고 있었으며, 또 그 後에도 새로운主人公 高句麗의 主權下의 그 國體 및 公序 良俗에 違背되지 않는限, 舊來의 慣習律과 함께 不文律로서 그 効力を 持續하였을 것이다.

以上의 經緯를 參酌하건대 小獸林王 3年의 高句麗律令은 漢律 60篇과 令 300餘篇, 曹魏의 新律 18篇과 令 180餘篇 및 晉 泰始律 20篇과 令 40篇을 繼受 參酌하여 이루어졌을 것이다, 그 가운데 泰始律令은 前 四者를 綜合, 長點만 擇하여 制定한 것으로서 그 編成과 條文 內容의 概略에 關하여는 晉書 刑法志와 唐六典 등에 의하여 그 輪廓이 傳해지고 있지만, 漢魏律에 比하여 보다 더 進步된 것이었으므로 이것을 母法으로 하였으리라고 推測된다.

그리고 이와 同時に 古來 地方固有의 慣習法이 이 機會에 많이 成文化하였을 것임은勿論이며 佛教를 傳受한 前秦으로부터는 法의 繼受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當時 前秦은 高句麗와 가장 親交가 있던 나라로 國勢가 興隆하였으나 文化 程度가 낮은 塞外民族(氐)의 軍事上 成功으로 因한 一時의 勃興에 不過하였으며, 他國에 傳授할 만한 法體系를 具有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또 法의 繼受는 母法이 誕生한 後 즉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相當한 期間을 要하는 것 이 經驗의 通則이다.

高句麗 律令의 內容에 대하여는 그 原文의 片鱗조차 傳하는 바 없으므로 이제 史記 遺事 및 其他 高句麗에 關한 史料 中에서 律令에 關係있는 資料를 간추려 이것을 高句麗律令 制定 當時의 母法으로 推測되는 漢·魏·晉律令(現在 그 輪廓 만을 알 수 있지만)과 對比하여 그 모습을 復原하여 보려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主要 刑事法과 警察法에 해당하는 律에 關하여 살펴 보기로 한다.

## 1. 刑

史記를 비롯한 高句麗 史料에 나타나 있는 同國 刑罰의 모든 種類를 들어보면 大略 生命刑으로서 極刑인 族刑을 비롯하여 誅斬·坑殺·棄市·火刑·自裁·등이 있으며, 其他 謫(放) 즉 流刑과 盜賊·鞭杖·黜爲庶人 등을 볼 수 있다.

### 가. 生命刑

① 族 刑 高句麗에서 族刑이 실시된例가 直接 史記에는 나타나 있지 않다. 그러나 謂反·大逆·謀叛 등에 대하여 이 極刑이 加해졌을 것은勿論이며(朝鮮時代에도 실시되었음), 史

記에 있는例를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즉 高句麗本紀 故國川王 13年條에 王이 朝臣 國戚으로 하여금 新任 國相 乙巴素의 職務命令에 服從케 하기 為하여 「貴賤을 가릴 것 없이 진실로 國相의 命令을 쓰지 않는 者는 族之하리라」라고 教示한 例 및 山上王 元年에 王兄 發岐가(自己의 아우 延優가 故國川王의 뒤를 이어 �即位하여 山上王이 된 것을 듣고) 大怒하여 兵力으로 王宮을 包圍하고 「兄死弟及이 禮인데 네가 越次하여 篡奪함은 大罪를 犯한 것이니 마땅히 빨리 나오라. 그렇지 않으면 誅及妻孥하리라」라고 한 例가 있다.

② 斬 主로 큰 도끼로 斷頭함을 斬이라 稱하였는데(大武神王 五年條에 「怪由……直進 執夫餘王 斬頭」라든가, 琉璃王 31年條에 「嚴尤誘我將延丕 斬之 傳首京師」) 이것은 東洋 諸國에서 오랫동안 行하여진 處刑方法으로서, 舊唐書 列傳 149 東夷傳 高麗條에 「其法有謀反叛者……燒爛備體然後 斬首」, 「殺人行去刃者斬」, 또 北史 卷94 列傳82 高麗條에 「其刑法 叛及謀逆者 繩之柱 燔而斬之」 및 新唐書 卷220 東夷傳에 「叛者 羢炬灼體 乃斬之」의 例가 있으며, 또 史記 高句麗本紀에 많아 나타나는 誅(中川王 元年 11月)「王弟 預物·奢句 等 謀叛 伏誅」, 西川王 17年 春 2月「王弟 逸友·素勃 等二人謀叛 許稱病 往溫湯……王召之 假許拜相 及其至 令力士執而誅之」, 陽原王 13年 夏10月「丸都城 于朱理叛 伏誅」, 琉璃王 27年條「王聞之怒 告黃龍(國王)曰 解明爲子不孝 請爲寡人誅之」는 斬刑을 意味하는 것 같다. 그러나 元來 誅란 說文通訓定聲에 「誅, 殴借爲殊」라고 있고 釋名·釋喪制에 「罪及餘人曰誅 誅株也 如株木根 枝葉盡落也」라고 있는 것 같아 族斬·族殺 或은 族夷를 意味한다.

③ 坑 殺 坑殺의 例로는 琉璃王 19年 郊豕가 逸走하였을 때 이것을 追捕한 者 二人(託利·斯卑)이 그 脚筋을 칼로 斷絕한 罪로 祭天之牲을 豈可傷也리로 하여 드디어 坑殺하였다(遂投二人坑中 殺之). 또 麗唐戰爭中 唐에서 行한 일이지만 史記 高句麗本紀 寶藏王 4年條에 「帝(唐太宗)……餘皆 縱之 使還平壤 收靺鞨三千三百人 悉坑之」라고 있으며, 또 「世勣請克(安市)城之日 男子皆坑之」라고 있음을 보건대 坑殺은 古來로 東洋諸國에서 行하여진 大量處刑法의 하나였음을 알 수 있다.

④ 殺 殺은一般的으로 死刑을 通稱하는 말이었다(周禮 秋官 司刑 「殺罪五百」의 註에 殺死刑也라고 있음). 例를 들면 史記 高句麗本紀 大武神王 15年條에 崔理「遂殺女子出降」이라 있고, 또 次大王條에 「三年夏四月 王使人殺太 祖大王元子莫勤」「秋七月 王田于平儒原 白狐隨而鳴 王射之不中 問於師巫……王曰 凶則爲凶 吉則爲吉 爾既以爲妖 又以福 何其誣耶 遂殺之」라고 한記事 등 그것이다.

⑤ 集 市 集市에 대한 例도 高句麗本紀에 보이지 않으나, 新大王 2年條에 보이는 明臨答夫에게 犯害된 次大王의 太子 鄭安이 逃竄하였다가嗣王(新大王)의 大赦令을 듣고 王門에 나아가 告한 말 中에 「棄之市朝」라고 있는記事는 集市의 刑을 意味한 말인 듯하다. 이 刑은 東洋에 있어서 오랫동안 執行된 死刑의 一種으로서 刑罰 執行을 公開하여 或은 公衆이 刑을 行해서 (Strafen zu gesamter hand) 一般豫防 및 威嚇의 効果를 거두었던 것이다. 舊唐書 東夷傳 高(句)麗條에 「其法有謀 反叛者 則集衆持火炬 競燒灼之 燒爛備體 然後斬首」라고 있는 것도 公開死刑

의 一種이며 하나의 棘市라고 볼 수 있겠다.

⑥ 火 刑 火刑에 대하여는 上述한 舊唐書 以外에 北史 卷94 列傳82 高(句)麗條에 「叛及謀逆者 紮之柱 焚而斬之」라고 있으며, 또 新唐書 東夷傳에 「叛者 叢炬灼體 乃斬之」라고 있는 바와 같이 謀反謀叛者에 대하여 斬首 前에 加하는 酷刑이었으니, 凌遲處死에 있어서의 柳棘局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있다.

⑦ 自裁(賜死) 이것은 自盡이라고도 일컬어지며 君王이 臣下에게 賜藥 或은 賜劍해서 行하여지는 死罪의 名譽刑이다. 琉璃王 28年 王이 太子 解明에게 父王을 隨行하지 않고 舊都에 머물러 構怨隣國(黃龍國)하였다는 不孝罪目으로 賜劍 自裁를 命하여 解明은 마침내 磯津東原으로 나가 槍을 땅에 풀고, 말 타고 달려 그 槍에 찔리여 죽었으며, 또 大武神王 15년에 元妃의 讓訴(自己에게 淫亂하려고 한다는 詐告)에 인하여 王子好童이 伏劍而死하고, 烽上王 2年 9月에 王이 그 아우 噎固가 異心이 있다하여 賜死한例가 모두 이에 屬한다.

⑧ 其他의 刑律 이 밖에 慕本王 4年條에 「臣有諫者이거든 弯弓射之」라 한 것, 中川王 4年에 王이 貫那夫人을 革囊에 넣어 西海에 投入한 일등은 死刑執行의 特殊한 例였다.

⑨ 戮 尸 西紀 642年 淵蓋蘇文이 榮留王을 禿害한 後 尸身을 여러 토막을 내여 개천에 버린 것(三國史記 列傳 蓋蘇文條)은 革命時期의 緊急處刑인 戮尸이며, 故國原王 12年에 燕王 慕容皝이 美川王廟를 파헤치고 그 尸體를 싣고 돌아간 것도 尸質 或은 戮尸에 가까운 일이다.

그 밖에 鞄首(목베어 매어달음)도 경우에 따라 行하여 졌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鞄首는 魏의 新律 및 晉 泰始律에死刑의 一等種으로 規定되어 있다. 紂에 關하여는 左傳에 이미 「若其有罪絞縊以戮」이라 있고 禮記에는 磬(禮, 文王世子 註에 縊殺之曰磬)이라는 死刑執行方法이 記錄되어 있는데 오늘날의 絞首에 해당하는 것 같다. 그러나 絞가 死列의 一種으로 된 것은 北齊·北周 以來의 일이나 高句麗律에는 이에 關한 規定이 없었을 것이다.

#### 나. 肉 刑

中國에 있어 秦末 漢初에 까지 盛行되던 肉刑 即 宮·荆·劓·墨은 漢 文帝 13年(B.C 167)以後 答刑 및 勞役刑으로 漸次 代置되어 晉 泰始律에는 이미 그 片鱗 조차 엿볼 수 없게 되었고, 다만 逃亡奴婢에 대한 黑京의 規定이 晉令에 나타나 있었을 따름이다.

高句麗律에도 이에 關한 것은 規定되지 않았을 것이며 따라서 史記 그 밖의 史料에도 이에 關한 것은 보이지 않는다.

#### 다. 流 刑

史記 高句麗本紀에서 이에 대한 例를 찾아 볼 수 없으나, 當時 이와 같은 刑이 있었던 것은 同書 東明王條에 朱蒙의 母 柳花가 天帝子 解慕澈에 通한 罪로 말미암아 優渤海에 謫居(귀양살이)케 되었다는 記錄 및 앞서 본 新大王 2年條에 鄒安이 新大王에게 「若賜以不死하고 放之遠方 則生死肉骨之惠也」라고 말한 中의 「放之遠方」은 當時 流刑이 있었음을 說明 해주는 것이 아닐까

#### 라. 鞭 杖

晉의 泰始令에도 鞭杖令이 있었으며, 高句麗本紀에도 鞭, 答에 關한 例가 보인다. 即 大武神

王 15年條에 大臣 仇都·逸苟·焚求 등 3人の 性品이 貪鄙하여 沸流部長이 된 것을 奇貨로 그地位를 利用하여 權力を 濫用해서 他人의 妻妾·牛馬·財貨를 掠奪하였으며, 萬一要求에 應하지 않는 者에게는 違法하게 鞭杖을 加하여 無辜한 國民을 忿死하게 하였다. 또 美川王 元年條에 先王 烽上이 其弟 啟固를 殺害하였을 때 그 아들 乙弗(美川王諱)에 害가 미칠까 두려워하여 뛰쳐나와 소금 行商을 하며 다닐 때, 江東 思收村家 考嫗의 誣告로 鴨淥宰로 부터 問責과 答刑을 받았다(決答放之)는記事가 보이며, 또 文獻備考 刑制 卷 127 刑考 1에 의하면 高句麗 大武神王 11年(A.D 28)에 令을 내려, 무릇 十惡 中 律에 의하여 刑罰에 處할 者 以外에 別罪를 犯하여 重杖을 받을 者는 全部 賖을 徵收하였다(「令曰 其十惡中 淮律用刑者外 犯別罪 合被重杖者並徵賖」)는 記錄이 있다. 다만 鞭杖은 輕微한 罪에 對한 處罰이므로 이것을 律에 規定하지 않고 令으로 頒布하였으며, 따라서 三國史記와 같은 極히 간단한 史書에 記載된 例가 적을 따름이다.

#### 마. 賖

위의 事件과 關聯하여 鴨淥宰는 鹽中에 신을 감춘 乙弗로 부터 몇 배에 해당하는 소금을 徵收하여 被害者인 考嫗에게 주었다는 記錄이 있는데, 그 數量에 대하여는 기록된 바 없어, 確實하게 알 수 없으나, 舊唐書 東夷傳 高(句)麗條의 『盜物者 12倍酬贖』이라는 句節로 보아 盜物의相當量을 賖罪로 받쳤을 것이다. 즉 一責十二의 原則은 夫餘族 古來의 慣習刑法이기 때문이다. 또 앞에서 지적한 文獻備考 刑制 大武神王 11年條에도 賖에 關한 記錄이 보인다.

#### 바. 没收

舊唐書 卷 199上 東夷傳 高(句)麗條에 「其法 有謀反叛者……家悉籍沒」이라 있고, 北史 卷 94列傳 82 高(句)麗條에 「其刑法 叛及謀逆者……籍沒其家」라고 있으며, 또 新唐書 卷 220 東夷傳에 「叛者……籍入其家」라고 있는 것은 모두 全家產 没收를 意味한다.

#### 사. 奴隸制

앞서 본 舊唐書 東夷傳 高(句)麗條에 의하면 「殺牛馬者 没身爲奴婢」라 있고, 北史 列傳 高句麗條에는 「若貧不能償者 及公私債負 皆聽評其子女 為奴婢以償之」라 있으며, 또 新唐書 東夷傳에는 「殺牛馬者 没爲奴婢」라고 있다. 즉 他人의 牛馬를 죽인 者는 그 집에 들어가 奴婢가 되며 또 貧寒하여 盜物의 賠償이나 或은 公私負債를 償還하지 못하는 者는 그 子女를 評價하여 奴婢로서 提供케 하였다. 이것은 刑罰奴隸 或은 加害者委付(Noxae datio)의 制度이다.

#### 아. 黜免

앞서 본 大武神王 15年條에 權力を 濫用해서 百姓을 괴롭히고 無辜한 國民을 忿死케 한 仇都·逸苟·焚求 등 3大臣을 王이 死刑에 處하려 하였으나, 이 3人은 모두 國祖 東明聖王의 舊臣이었으므로 極刑으로 다스리지 않고 黜退하여 庶人으로 삼았다는 記錄이 있는데 이 黜爲庶人은 名譽刑의 하나에 屬하는 것이었다.

## 2. 罪

三國史記 및 中國 史書에 記錄되어 있는 罪名을 箖추려 보면 大略 다음과 같다.

### 가. 不 孝

앞서 본 바와 같이 史記 東明王條에 朱蒙母 柳花가 無媒而從人한 罪 즉 不告父母 而從人(嫁)한 罪가 記錄되어 있으며, 또 琉璃明王 28年條에 太子 解明이 不隨父王하고 好勇하여 構怨隣國한 罪가 記錄되어 있는데 이것들은 모두 不孝罪에 屬하는 것이며 十惡의 하나이다[註·9].

### 나. 祭牲傷害

史記 琉璃王 19年條에 逸走한 邯豕를 찾기 爲하여 王이 託利와 斯卑를 보냈는데 2人은 長屋澤 中에 이르러 邯豕의 脚筋을 칼로 絶斷하였다. 王이 怒하여 「祭天之牲 豈可傷也」라 하고 2人을 坑殺하였다함은 이미 앞에서 말한 바와 같다.

### 다. 謀 叛

史記 山上王 元年條에 王이 凱旋한 其弟 蔴須에게 「發岐(王의 弟, 故國川王의 弟) 請兵異國以侵國家 罪莫大焉」이라고 말하였으니, 이것은 發岐가 犯한 謀叛 즉 外患罪의 重罪임을 強調表明한 말이다. 十惡의 一이다. 그러므로 앞서 引用한 新舊唐書 및 北史에 記錄된 것과 같이 特別히 峻嚴한 刑에 處하였다 것이다.

### 라. 謀 反

이는 오늘날의 内亂罪에 해당하여 十惡의 一로 穎하였다는데, 위에 引用한 舊唐書에서 본 바와 같이 火刑을 加한 後 斬刑을 行하는 罪였다.

### 마. 守城降敵

城을 지키는 將兵으로서 敵에게 降服한 罪이니, 이는 斬刑에 處하였다. 百萬의 唐 精兵의 包圍 中에서 安市小城을 지킨 高句麗의 勇士를 想起하지 않을 수 없다.

### 바. 臨陣敗北

앞서 본 新舊唐書에는 臨陣敗北 或은 降敗者는 斬刑에 處하였다.

또 高句麗初인 琉璃王 31年에 王莽이 胡를 치기 爲하여 高句麗兵을 發하였을 때 強制 徵用當한 軍兵은 모두 逃走하여 犯法하니 王莽은 其將 延丕를 誘斬하였다 한다.

### 사. 殺 人

古朝鮮 八條의 禁法에도 「相殺以當時償殺」이라고 있었음은 史上에 著聞된 事實이거나와 新舊唐書에도 「殺人……者斬」이라고 記錄하고 있다.

### 아. 剝 劫

舊唐書 東夷傳 高(句)麗條에 「行劫者 斬」이라 있고, 新唐書 東夷傳에는 「剽劫者 斬」이라고 한記事가 있다. 今日의 脅迫 恐喝에 해당하는 罪이다.

註 9) 增補文獻備考 卷127 刑考에 高句麗 太武神51年記事로서 「令曰 其十惡中 準律用刑者外 犯別罪 合被重杖者 竝徵贖」이라고 보인다.

#### 자. 盜

위에서 引用한 舊唐書에는 「盜物者 十二倍酬藏」이라 있고, 北史에는 「盜則償 十倍」라 있으며, 新唐書에는 「盜者 十倍取償」이라고 하였다. 十을 十二의 近似值로 使用한 것인 듯하다. 乙弗이 老奴의 誣告로 因하여 鴨淥宰로 부터 廉匱의 罪로 問擬當한 것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이른바 宰는 司法警察權을 行使하던 地方의 治邑吏인데 中國式 名稱이다.

#### 자. 家畜殺害

上記한 舊唐書에 「殺牛馬者 没身爲奴婢」라 있고 新唐書에도 「殺牛馬者 没爲奴婢」라고 있으니 그 用刑이 峻嚴하였음을 알 수 있다. 牛馬는 農耕과 戰爭에 함께 緊要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 카. 權力濫用

大武神王 15年에 大臣 仇都·逸苟·焚求 等 三人을 黜免하였는데 이들은 일찌기 沸流部長이 되었을 때 他人의 妻妾·牛馬·財貨를 掠奪하였으며 應하지 않는 者가 있으면 함부로 答刑을 加하여 無辜한 國民을 忿死케 하였다. 또 故國川王 12年에 中畏大夫 沢者於界留外 評者 左可慮가 王후의 親戚으로서 나라의 權勢를 잡자, 그 子弟들이 權勢를 믿고 驕奢하였으며 他人의 子女와 田宅을 마음대로 掠奪하였으므로 國民이 怨憤하였다는記事가 있으며, 또 長壽王 26年(A.D 438)條에 宋太祖의 使者 王白駒가 我將 高仇를 專殺 한데 대한 罪를 물게 하기 為하여 白駒를 잡아 宋으로 護送한 일이 있었다. 이들은 모두 權力を 濫用해서 犯罪를 構成한 것이었다.

#### 타. 妾 淫

大武神王 15年條에 王의 元妃가 王子好童(次妃 昙思王孫女 所生)이 奪嫡하여 太子가 될까 두려워하여 王에게 謳訴하여 가로되 「好童이 不以禮로 待妾하니 殆欲亂乎」라고 誣告하였으며, 처음에는 王이 이것을 믿지 않았으나 元妃가 涕泣하여 「請奏대 大王은 秘密히 옛보소서, 萬一 이 일이 없으면 妾이 스스로 處罰을甘受하겠나이다.」라고 말하니 王이 疑心하였다는記事가 있다. 이것은 尊屬姦淫의 嫌疑를 받게 한 誣告이다.

#### 파. 婦人妬忌

史記 中川王 4年條에 王后 楠氏와 貫那夫人的 相互 嫉妬의 記事が 있는데, 田獵으로 부터 둘 아오는 王을 맞아, 울며 「王后가 나를 革囊에 잡아넣어 海中에 던지려 하고 있다」고 무고한 貫那夫人를 王이 「置革囊 投之西海」하였다. 「男女淫 婦人妬 皆殺之 尤憎妬」한 夫餘의 古法俗에 부합되는 例의 하나이다.

#### 하. 誣 告

上記한 바 乙弗이 王位에 오른 後(美川王) 例의 老嫗를 어떻게 處罰하였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誣陷罪 或은 誣告罪로 處罰되었든가 或은 大不敬으로 極刑에 處하지 않았을까 생각된다.

## 二. 百濟의 國家組織과 刑律

百濟는 北方 夫餘·高句麗계의 流移民部族으로서 漢江流域(慰禮城)을 중심으로 部族聯盟國家

로 크게 成長하여, 古爾王(234~285) 때에는 이미 古代國家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近肖古王(346~375) 때에 와서는 領土의 擴張을 畏하여 馬韓을 併合하고 北進策을 推進하는 동시에, 西쪽으로 東晉, 南쪽으로 倭와 통하여 國제적인 地位를 확고히 하여 古代國家의 體制를 整備하였다. 百濟의 國家組織에 있어서는 처음 古爾王 때의 6佐平에서 泗沘遷都 以後의 22部에 이르는 비교적 정비된 官府名들이 나타나고 있다. 즉 6佐平에 대하여는 三國史記 百濟本紀 古爾王 27年(A.D 260)條에 의하면, 春正月에 官制를 定하여 6佐平(長官級으로서 國務를 分掌함)을 두어 內臣佐平으로 宣納(王命의 出納, 首相), 內頭佐平으로 庫藏(財務), 內法佐平으로 禮儀(禮式), 衛士佐平으로 宿衛兵(親衛), 朝廷佐平으로 刑獄(司法), 兵官佐平으로 在外兵馬(外方의 軍務, 國防)의 일을 각각 管掌케 하였다. 또 16等의 官階를 設置하였는데, 7佐平 1品, 達率·恩率·德率·扞率·奈率을 2品으로 부터 6品, 將德·施德·固德·季德·對德을 7品으로부터 11品, 文督·武督을 12品과 13品, 佐軍을 14品, 振武를 15品, 克虞를 16品에 敍하였다.

그리고 同年 2月 服色을 定하여 6品以上은 紫色의 公服을 입고 銀花로 冠을 裝飾하였으며, 11品以上은 紋色의 公服을 입되 將德은 紫帶, 施德은 皂帶, 固德은 赤帶, 季德은 青帶, 對德은 黃帶를 두르게 하였으며, 16品以上은 青色의 公服을 입되 文督은 對德과 같이 黃帶, 그 以下の 모두 白帶를 두르게 하고, 3月에는 王弟 優壽를 內臣佐平에 拜하였다. 또 이듬해 28년에는 春正月 初吉을 指하여 王이 紫色의 大袖袍와 青錦袴를 입고 金花로 裝飾한 烏羅冠과 素皮帶 烏革履를 두르고 南堂에 앉아 政事를 보살폈으며, 2月에는 眞可로 內頭佐平, 優豆로 內法佐平, 高壽로 衛士佐平, 昆奴로 朝廷佐平, 惟己로 兵官佐平을 삼았다. 여기의 이른바 南堂은 하나의 政廳으로서 [註·10] 君臣의 位次와 官階의 席次를 標示하는 檻標가 排列되고, 이곳에서 王이 政事를 듣고 모든 官員과 더불어 國務를 論議하였던 것이다. 佐平은 대개 5人이고 達率은 30人이며 恩率以下是 常員이 없었는데 각각 一定한 部署가 있어 衆務를 分掌하였으며, 長吏는 3年을 任期로 하였다 [註·11].

다음 南遷 以後는 22部의 官署를 設置하였는데, 內官 곧 宮內官署로는 前內部·穀部·肉部·內掠(原의 誤)部·外掠(原의 誤)部·馬部·刀部·功德部·藥部·木部·法部·後宮部의 12부가 있고, 外官 곧 中央政務官署로는 司軍部 즉 軍部, 司徒部 곧 오늘날의 文教部, 司空部 즉 오늘날의 土木建設部, 司寇部 즉 오늘날의 司法部, 點口部 곧 戶籍部, 外舍部 곧 外戚(王妃親庭)部, 客部 곧 外交部, 緝部 곧 財政部, 日官部 곧 天文部, 都市部 곧 市店部의 10부를 두었었다. 22부의 名稱은 거의 完全히 中國化하고 있으며, 6佐平 16官階의 名稱도 麗·濟의 그것에 比하여 많이 中國化하여 固有의 傳統을 잊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百濟의 政事에 關聯하여 한 가지 興味 있는 것은 三國遺事 卷2 南扶餘條에 「又虎嵐寺有政事嵐國家將議宰相 則書 當選者名 或三四 函封置嵐上 須臾取看名 上有印跡者爲相 故名之」라는記事가 있다. 즉 首都 泗沘市附近에 있는 虎嵐寺 近處에 政事嵐이란 바위가 있어 나라에서宰相을

註 10) 李丙燾「古代南堂考」(서울論文集 人文社會科學 第1輯 1954)

11) 周書 卷49 異域傳 百濟條, 北史 卷94 列傳82 百濟條 隨書 卷81 百濟傳

選任할 때에는 被選資格者 34인의 이름을 써서 紘封하여 嵩上에 두었다가 잠시 후에 開封하여 보아 이를 위에 印跡이 찍혀있는 者로宰相을 삼았는데, 그리하여 그 바위를 政事嵩이라고 이름짓게 되었다는 것이다. 생각컨대 이 政事嵩은宰相을 選任하기 위한 投票를 實施할 때 뿐만 아니라, 新羅의 四靈地와도 같이 國家의 支配層이 重大한 國事를 論議할 때의 會議場所로도 쓰이던 靈嵩인 듯하다. 이와 같은 場所는 비단 南遷 이후에 있었을 뿐 아니라 그 以前 熊津 및 漢城時代에도 또한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南遷 以前의 地方組織에 關하여는 梁書 卷 54 東夷傳 百濟條에 보면 百濟王의 治都是 居拔城 혹은 固麻城(熊津)이라 하였으며, 이곳에서는 邑을 檜魯라 稱하였고 全國을 總 22 檜魯로 나누어 각각 王族 및 그의 宗族을 보내어 分據케 하였는데 百濟 初期의 地方制度는 말하자면 각 城邑인 檜魯를 中心으로 軍事政治의 集中地로 삼은 것으로 高句麗의 南下를 막기 위한 軍事的 行政體制를 갖춘 것이었다. 이 檜魯制의 規模와 그 數에 대하여는 時代와 國運의 消長에 따라 多少 相異하였다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南遷 以後의 百濟의 都內는 萬家나 되었는데 이것을 上部·前部·中部·下部·後部의 5部로 나누었으며(都內 5部制) 각部에는 5巷이 있어(計 25巷) 土庶인이 居住하고 部마다 5百名의 軍隊를 두었었다(計 2,500人). 그리고 地方도 5方으로 나누었는데 中方을 古沙城(지금의 全北古阜), 東方을 得安城(지금의 忠南恩津附近), 南方을 久知下城(지금의 全南長城), 西方을 刀先城(位置 未詳), 北方을 熊津城(지금의 公州)이라 하였다. 이것이 南遷 以後의 制度임은 北方을 熊津城이라 함으로써 可히 짐작할 수 있다.各方에는 方領 1人을 두되 達率(2品官)로서 삼고, 方佐가 副官으로서 이를 補佐하였는데 方領은 7百人 以上 千2百人 以下의 軍隊를 統率하였으며 城의 內外에 居住하는 庶民과 2百의 남어지 小城을 각각 分掌하였다. 그리고 또 各方 밑에는 10部 或은 6·7郡을 두어 全國을 37郡으로 하고(三國史記 卷 28 百濟本紀 6) 各郡에 將 3人을 두되 德率(4品官)로서 補하였다.

各方과 各郡은 行政區域이며 同時に 軍事的인 任務를 遂行하고 있었으므로 대개 險峻한 山地에 依據한 城鎮으로 이루어져 있었다[註·12].

위에서 살핀 바 있는 官制中 第1品官인 衛士 佐平은 宮中 및 國都의 警備에 當하는 宿衛兵(警備警察)을 統率하던 最高軍官이었는데, 都內 5部의 各部에는 5百名씩의 常駐軍 合計 2千5百名이 있어 警備에 任하고 있었으며, 같은 1品官인 兵官 佐平은 地方의 常備軍馬를 管掌하던 最高責任者(王을 除外하고)였는데 이는 同時に 國內治安을 擔當하고 있었다. 國都 泗沘城밖에는 地方에 5方城이 있었으며各方에 2品官인 方領 1人 및 方佐 1人이 있고 그 밑에 7百名 以上 千2百名 以下의 常備軍이 있었으며, 또 國內 37郡의 各郡에 郡將 3人을 4品官인 德率로 補하였다. 이미 앞서 지적한 바 있지만, 이들은 軍事上 任務와 同時に 治安 및 其他 警察의 任務를 擔當하고 있었던 것이다. 즉 그들은 平時에는 憲兵 또는 警察官의 機能을 遂行하였으며, 戰時에는 軍隊로서의 任務를 擔當하였던 것이다. 官品이 比較的 낮은 5品官인 抠率

註 12) 翰苑 蕃夷部 百濟條雍氏註 所引 括地志

7品官인 將德斗 13品 以下의 武督·佐軍·振武 및 克虞도 그 각稱으로 보아 主로 軍警의 業務에 從事하는 官職이었던 것 같다.

當時의 兵器로는 弓·箭·刀·矟(長矛), (北史 卷94 列傳41 百濟條, 周書 卷27 列傳41 異域上 百濟條)·鐵鎧와 鐵(三國史記 卷27 百濟本紀 5)이 있었으며 「俗重騎射」(上記 北史 및 周書)의 文句로 보아 尚武의 風이 있었다. 그리고 또 이미 牢獄制의 發生을 보게 되었는데〔註·13〕 이 것들은 모두 三國鼎立에 있어 軍事上 必要하였을 뿐 아니라 古代專制國家의 國內治安을 確保함에 있어서 또한 繁要하였다 것이다.

이 時代의 刑制에 대하여는 三國史記 百濟本紀 第二에 있는 古爾王 二十九年 春正月 下令 凡官人受財及盜者 三倍徵 罷禁錮終身」이라는記事와 上記 周書 및 北史의 百濟傳에 있는 「其刑罰反叛 退軍及殺人者斬 盜者流 其贓兩倍徵之 婦人犯姦者 没入夫家 爲婢」라는記事가 參考된다. 前者は 즉 公務員으로서 受賄한 者와 他人의 財物을 훔친 者는 그 贓物의 3倍를 賠償해야 하는 同시에 終身토록 仕官의 길을 막아 오랜동안 敝用치 못하도록 한 것이며, 後자는 內亂罪와 外患罪를 犯한 者, 戰陣에 臨하여 後退한 者, 人命을 殺害한 者는 斬首刑에 處하고, 盜者는 流刑에 處하는 同시에 盜物의 2倍를 賠償케 하였으며 (前記 古爾王條에는 三倍徵贓을 下令하였다 하니 아마 時代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었든가 혹은 史記 撰者的 錯誤에 말미암은 듯하다.) 有夫의 婦로서 姦淫을 犯한 者는 그夫家の 婦가 되게 하는 등 嚴罰主義를 採擇하였음을 알려주고 있다.

이것들은 모두 國家의 存立과 官紀 및 社會의 秩序를 維持하여 私有財產制를 確保하여 家父長的 家族制度를 鞏固히 하는 데 主要한 目的이 있었던 것이다.

### 三. 新羅의 國家組織과 治安制度

新羅는 地理의 關係上 大陸文化와의 接觸이 三國 중 가장 늦어, 初期 三姓交立의 部族聯盟이 奈勿麻立干 때에 와서 비로소 金氏王權의 專制化가 이루어져 古代國家의 形成을 보게 되었다.

그러나 新羅가 古代國家로서의 集權體制를 整備한 것은 智證王을 거쳐 法興王 때에 이르러서의 일이다. 智證王(500~514)은 國號를 「新羅」로 定하고, 麻立干 대신 中國式의 「王」號를 채택하였다. 이와같이 中國의인 政治體制의 수입은 종래의 部族聯盟의n 體制를 止揚하고 中央集權의n 專制機構의 정비를 위한 기틀을 마련한 것이었음을 물론이다.

다음 法興王(514~540)때의 개혁으로 먼저 注目되는 것은 律令의 頒布(520)인데, 新羅가 古代國家로서의 國家체제를 整備하였다는 것을 가리킨다. 또한 同王 23年(536)에는 「建元」이란 獨自의인 年號를 세웠는데, 이것은 新羅가 대내적으로 主權의 確立, 대외적으로는 中國과 對等한 獨立國家로서의 자각을 나타낸 것이다. 그리고 同王 14年(527)에는 佛教가 公認됨으로써 王權의 專制化와 國家의 統一를 위한 思想의 뒷바침이 마련되었다. 이로부터 新羅는 對外的 發展을 꾀

註 13) 三國史記 百濟本紀 第一 多婁王 28年條 「春夏旱 憲囚 故死罪」

하여 真興王(540~576) 때는 漢江流域占有(551), 伽耶征伐(562), 東海岸北進을 통한 咸南地方까지 進出하여 三國統一의 기반을 닦아 놓았다. 真興王의 정복사업은 이의 紀念碑인 真興王巡狩碑가 這間의 事情을 잘 傳해주고 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王權의 確立과 官制의 基本體制는 奈勿麻立干 때에 이룩되었으며, 南堂의 制와 17等의 官階도 이때에 成立되고 法興王 때에 이르러 律令 및 百官의 公服이 制定되었으리라고 생각된다. 三國史記에는 第3代 儒理尼師今 9年에 17等의 官制를 設定하였다고 記錄하고 있으나, 아직 傳說時代를 벗어나지 못한 當時에 이미 整備된 官制의 成立이 있을 수 없을 뿐 아니라, 同書의 奈勿王 以前에 紀年은 不明確하며, 또 大君長을 意味하는 固有語인 麻立干을 使用한 것은 奈勿王으로 부터 비롯하고 있기 때문이다. 新羅 17等官階의 成立年代에 대하여는 대체로 法興王~真興王사이에 成立한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註·14]. 17等의 官階와 相應하는 公服을 表示하면 다음과 같다.

17 等 官 階																	
官 階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官 階 名	伊 伐 漁	伊 漁	迺 漁	波 珍 漁	大 阿 漁	阿 漁	一 吉 漁	沙 漁	級 伐 漁	大 奈 麻	奈 麻	大 舍	舍 知	吉 士	大 烏	小 烏	造 位
公 服	紫 衣				緋 衣				青 衣				黃 衣				

그러나 17等의 官階 以外에도 國事를 總攝하는 上大等(一名 上臣)이 있었고, 또 角干(伊伐漁의 別稱)職에도 太大角干·大角干을 加設하였으며, 그리고 또 阿漁은 重阿漁으로 부터 四重阿漁, 大奈麻는 重大奈麻로 부터 九重大奈麻, 奈麻는 重奈麻로 부터 七重奈麻로 分化하였다. 이 것들은 論功行賞時 殊尤의 禮를 더하기 為하여 或은 職務割當의 必要에 의하여 設定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와 같은 例는 高句麗에서도 많이 볼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 한 가지 注意할 것은 官階와 骨品制와의 關係이다. 骨品制는 血統과 地位身分이 結合되어 이루어진 社會身分世襲制度이다. 뒤에 官階가 設定됨에 따라 이 骨品과 官階가 서로 適格을 制限하였다. 例를 들면 王位에는 原則으로 第1骨인 聖骨이, 그리고 聖骨이 없을 때에는 第2骨인 真骨이 나아갈 수 있고, 第1位인 伊伐漁으로 부터 第5位인 大阿漁까지에는 聖骨 또는 真骨만이, 第6位인 阿漁로 부터 第9位인 級伐漁까지에는 6頭品만이, 第10位인 大奈麻 및 第11位인 奈麻에는 5頭品만이, 그리고 第12位 大舍 以下에는 4頭品만이 될 수 있었으며, 3頭品 以下是 庶民層을 形成하였다[註·15]. 그러나 이에 關하여는例外도 있었으며 또 賞罰로 因한 骨品·頭品의 黜陟도 있을 수 있었다. 表示하면 다음과 같다.

註 14) 曾野壽彥「新羅の十七等の官位成立の年代についての考察」(古代研究2, 東京大學教養學部人文科學紀要 5, 1955)

15) 末松保和「新羅史의 諸問題」(1954年刊)

井上秀雄「新羅의 骨品制度」(歷史學研究 304. 1965)

17等官階와 骨品과의 關係

官階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官階名	伊伐渢	伊漁	迺漁	波珍漁	大阿漁	阿漁	一吉漁	沙漁	級伐漁	奈麻	大舍	舍知	吉士	大烏	小烏	造位	
骨品	眞骨以上				六頭品				五頭品		四頭品						

다음 17等의 官階와 關聯하여 상고해야 할 것은 南堂이다[註·16]. 南堂은 元來 部族集會所의 後身으로서 中央政廳의 性格을 지닌 것이었으며, 王樞 臣樞 等 檄標로 席次와 座席을 定한 君臣의 會議場所였다. 初期에는 會議兼行政執行處였던 것이 政務가 漸次 煩雜해짐에 따라 行政機能과 그 所屬官吏를 分離하여 他處로 옮겨 稟主(또는 租主)로 하고 南堂은 純粹한 重大會議(和白)나 儀式을 行하는 半形式의 存在로 化하였다. 三國史記에는 第12代 沾解尼師今條에 「三年秋七月, 作南堂於宮南」이라 있고, 「五年 春正月, 始聽政於南堂」이라 있으며, 第13代 味鄒尼師今 7年條에 「春夏不雨, 會羣羊臣於南堂, 親問政刑得失」이라고 있으나, 新羅의 이 時期에 이미 南堂이 나타났으리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南堂에서 舉行되던 君臣의 重大政務會議인 和白에 하여는 隋書 新羅傳에 「其有大事 則聚群官 詳議而定之」라 있고, 新唐書 新羅傳에는 「官有宰相關・侍中・司農卿・太府令 凡十有七等……事必與衆議 號和白 一人異則罰」라고 있어 政務를 合議制로 處理하였음을 傳해주고 있다. 이 和白은 統一以後에는 平議殿이라 改稱하였다.

南堂으로 부터 稟主가 分離한 것은 第20代 慈悲麻立干 前後의 일일 것으로 생각되는데 稟主 역시 그 政務가 복잡화하여 감에 따라 職務의 分掌이 顯著하게 되어, 多數의 官府가 分立됨에 稟主는 드디어 國家機密과 庶政總理의 最高行政府로 化하였으며, 眞德女王 5年에 이를 執事部로 改稱하게 되었다. 이제 法興王 때로 부터 文武王代에 이르기 까지의 사이에 發展獨立한 中央官署의 組織을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官府名	設置年代	職務	長官
執事部, 本名稟主	眞德女王五年에 改稱	國家機密 및 庶政總理	中侍(後改 侍中)
兵部	法興王三年置	軍事	令
調部	眞平王六年置	貢賦	令
禮部	眞平王八年置	外交·儀禮	令
倉部	眞平女王五年置	財政事務	令
司正部	武烈王六年置	糾彈事務	令
乘府	眞平王以前置	司馭司牧	令
船府	文武王十八年置	舟楫之事	令
例作部	神文王以前置	營繕事務	令
領客部(本名 倭典)	眞平王以前置	外賓接待	令
位和部	眞平王三年置	官吏位階事務	衿荷臣(後改令)
左理方部	眞德女王五年置	刑律事務	令
右理方部	文武王七年置	刑律事務	令

註 16) 李丙燾「古代南堂考」(서울大論文集 人文社會科學 第1輯 1954)

위에서 본 바와 같이 新羅의 官制를 통하여 警察權에 관련시켜 생각하여 보면, 新羅는 建國初부터 4世紀의 誓解尼師今 때에 이르기까지는 部族聯盟會議에서의 決議와 居西干, 尼師今 등이 部族民 및 그 下僚 내지 民衆 자체에 의하여 合議制로 警察權이 行使, 執行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 奈勿麻立干 때에 와서 中央集權의 政治體制를 갖추게 된 이후 즉 南堂 中心의 政治時代에는 南堂에서의 和白 其他 會議와 王主 乃至 各級 官人이 警察權을 掌握 行使하였을 것은 南堂으로 부터 分離되고 또 兵部·左理方部·司正部 및 右理方部가 執事部로 부터 차례로 分立됨에 따라 이들 機關이 각각 警備警察事務와 司法警察事務 즉 搜查 紛彈事務와 刑律事務 등을 分掌하게 되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들의 内部職制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執事部(本名 粧主, 後稱執事省)는 前記한 바와 같이 國家機密과 庶政을 總攝하는 第一級 官府로서 眞德女王 5年 中侍(後稱 侍中) 1人을 두었는데 大阿飡로 부터 伊飡에 이르는 者로써 補하고, 眞興王 26년에 典大等(後稱 侍郎) 2人을 두되 奈麻로 부터 阿飡에 이르는 者로써 補하였으며, 眞平王 11년에 大舍(後稱 郎中) 2人을 奈麻 乃至 舍知로 補하고, 神文王 5년에 舍知(後稱 員外郎, 復稱 舍知) 2人을 大舍 或은 舍知로 充當하였으며, 其他 大舍로 부터 造位에 이르는 者로 補하는 史(後稱 郎, 復稱 史) 14人이 있었는데 文武王 14년에 6人을 보태 너어 總員 27名으로 하였다.

兵部는 軍事에 關한 事務를 管掌하였는데 法興王 3年 始置할 때에는 令 1人을 두었더니 眞興王 5년에 1人을 加하고 太宗王 6년에 또 1人을 보태었다. 位階는 大阿飡으로 부터 太大角于에 이르렀으며 宰相이나 私臣(內省의 長官)을 兼하는 수도 있었다. 眞平王 45년에 大監(後稱 侍郎, 復稱 大監) 2人을 두고 太宗王 15년에 1人을 보태였는데, 位階는 通飡로 부터 阿飡, 眞平王 11년에 弟監(後稱 大舍·郎中·復稱 大舍) 2人을 두되 位階는 舍知로 부터 奈麻, 文武王 12년에 詮舍知(後稱 司兵, 復稱 詮舍知) 1人을 두었으며 그 位階는 大舍 或은 舍知였다. 그 밖에 史 12人이 있었는데 文武王 11년에 2人을 增員하고, 12년에 또 3人을 보태었다. 그들의 位階는 造位로 부터 大舍, 그리고 文武王 11년에 詮幢(後稱 小司兵, 復稱 詮幢) 1人을 두었는데 位階는 史와 같았으며 總員 27名이다.

左理方府는 刑律事務를 管掌하는 中央官署로서 眞德女王 5年에 設置하였는데, 뒤에 孝昭王의 謂「部洪」을 避하여 議方府로 改稱하였다. 令 2人을 두되 位階는 級伐飡로 부터 通飡에 이르고 또 卿 2人을 두었다가 文武王 18년에 1人을 加하였는데 位階는 兵部大監 등 다른 卿과 같았고, 또 佐(後稱 詮事, 復稱 佐) 2人, 位階는 司正佐와 같이 奈麻와 大奈麻로 充當하였다. 그리고 大舍 2人, 位는 丘部大舍와 같이 舍知로 부터 奈麻에 이르렀으며, 그 밖에 史 15人을 두었던 것을 元聖王 13년에 5人을 減하여 總員 19人 乃至 24人이 되었다.

司正部는 百宮을 監察·糾彈하는 職務를 맡아보던 中央官署로서 太宗王 6년에 始置(後稱 肅正臺, 復稱 司正府). 令 1人, 位階는 大阿飡로 부터 角于에 이르고, 眞興王 5년에 卿 2人을 두었다가 文武王 15년에 1人을 加設하였는데 位階는 乘府卿과 같이 通飡로 부터 阿飡에 이르렀으며, 佐(무릇 丞을 全部 佐라고 稱하였다) 그것은 孝成王의 謂「承慶」을 避하기 為함이

었다. 後稱 評事, 復稱 佐) 2人, 位階는 奈麻와 大奈麻豆, 大舍 2人, 位階는 舍知로 부터 奈麻에 이르렀다. 그 밖에 史 10人, 文武王 11年에 5人을 加하다. 總員은 18人 내지 23人이다.

右理方府는 文武王 7年에 始置, 令 2人, 卿 2人, 佐 2人, 大舍 2人, 史 10人, 總員 18人을 두었다.

侍衛府는 國都內에 設置한 武官府로서 宮闈의 宿衛 및 이른바 警備警察事務를 맡아보고 있었는데 眞德女王 5年에 始置하였다. 將軍 6人, 位階는 級伐食로 부터 阿食에 이르는 者로 补하고, 大監 6人, 그 位階는 奈麻로 부터 阿食에 이르고, 隊頭 15人, 그 位階는 舍知로부터 沙食에 이르고, 項 36人, 舍知로부터 大奈麻에 이르는 者로 补하였다. 그 밖에 卒 117人, 그 位階는 造位로 부터 大舍에 이르렀다.

위에서 新羅의 中央 관제를 警察制度와 관련시켜 살펴보았거니와 이제 地方의 그것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여기서 우리는 地方의 行政組織과 軍制를 통하여 警察制度에 接近시켜 나가기로 한다. 當時의 警察權은 대개의 경우 地方의 行政官 또는 地方 駐屯軍이 君主를 代身하여 이것을 掌握 行使하였다.

國都는 일찌기 6村의 氏族團體로 부터 6部의 行政區劃으로 轉化하였으며 地方은 統一前에 있어 大略 2小京과 5州 및 그 밑의 所屬郡縣으로 區分統治되었다.

三國史記 및 三國遺事에 의하면 徐羅伐은 처음 6村이 結合 形成하였는데 그 後 儒理尼師今 9年에 이르러 이것을 改稱하여 村을 部로 命名하였다 한다. 이것은 6個의 氏族的 村落이 각자의 族長下에 血緣的 地緣의 으로 結合된 社會生活을 营爲하다가 氏族制가 崩壞됨에 따라 이에 相應한 行政區劃인 部로 轉化한 것을 意味한다. 이에 대하여는 그것이 新羅 初期의 儒理尼師今 때에 이미 이루어질 수 있는 性質의 것이 아니고 적어도 慈悲麻立于 12年 都內의 坊理名을 定할 때에 改稱된 것이라고 推定되어 있다[註·17]. 梁書 卷54 東夷傳 新羅條에 의하면 「其俗呼城曰健牟羅 其邑在內曰啄評 在外曰邑勒 亦中國之言郡縣也 國有六啄評 五十二邑勒」이라고 있는데, 이른바 六啄評이란 都內의 6部 즉 六啄(啄는 梁과 같음)及梁部·沙梁部등을 생각하라. 啄

註 17) 李丙燾「韓國史 古代篇」p. 367

18) 梁書의 諸刊本이나 南史의 諸刊本에는 「啄評」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新舊唐書의 新羅傳과 通典邊防門에는 「啄評」으로 되어 있으며, 日本書紀通證 卷27 推古天皇 18年紀 沙喙部에는 「沙喙部所掌之部曲 啄當作喙 評見天智紀 下放此」라고 있고, 同書 卷32 天智天皇 7年紀의 沙喙에 關한 부분에 「梁史曰 新羅 其邑在內曰啄評 啄呼穢反 國有六啄評 前紀多作沙喙 者誤」라고 하였다.

19) 六畿停의 新古名과 그 所在를 表示하면 다음과 같다.

	古 名	新 名	所 在	備 考
1.	毛 只 停	東 畿 停	大 城 郡	
2.	首 品 兮 停	南 畿 停	商 城 郡	
3.	根 乃 停	中 畿 停	同 上	
4.	豆 良 翁 知 停	西 畿 停	同 上	
5.	兩 谷 停	北 畿 停	同 上	
6.	官 阿 良 支 停	莫 耶 停	同 上	一云 北阿良

위의 表는 三國史記 卷 34 地理志 一良冊條 最後의記事에 의거하여 作成하였다.

은 噥의 誤記로 본다) [註·18]와 그 周邊의 6 繼停 [註·19] 即 6 評(高句麗의 内評 外評?)을 合稱한 것이라고 解釋되는데, 停은 勿論 軍營의 所在를 意味하는 것이므로 이것이 앞서 지적한 侍衛府와 함께 王宮 및 首都周邊의 治安 및 警備를 擔當하였을 것임은 勿論이다.

新羅에 있어 地方制度는 領土 擴大에 따라 變遷하여 갔는데 中國式인 州郡縣制를 採擇하여 行政區劃을 設定한 것은 智證廟立于 6年(A. D 505)의 일이라 한다. 그러나 이것을 全般的으로 實施한 것은 法興·眞興兩王이 廣汎하게 拓境한 以後의 일일 것이므로 前記한 梁書 新羅傳의 이론바 「五十二邑勒」은 州郡縣制 實施 以前의 固有小國邑의 數일 것이며 (梁書는 唐의 姚思廉이 7世紀初·中葉 즉 太宗時에 編纂한 것이지만 그 史料의 源源은 西紀521年, 法興王 8年, 梁의 普通 2年 新羅의 遣梁使로 부터 얻은 것임이 틀림 없기 때문이다). 또 新羅에 있어서의 地方制度는 軍事組織 즉 軍營 軍團의 所在와 密接한 關係를 갖고 있어 州의 長官을 軍主라 불렸으며 또 적어도 軍事 戰略上 必要하면 州의 廢置, 州治의 移動을 서슴치 않고 斷行하였다.

그리하여 對麗軍略上 東海岸方面에 있어 4個州, 漢江流域에 있어 3個州의 廢置를 行하고 또 對濟戰略上 洛東江流域에서 6個州의 置廢 改編을 行하여 統一 直前에는 洛東江 上流에 沙伐州(州治 尚州), 中流地域에 比自伐州(州治 昌寧), 漢江流域에 新州(後에 漢山州 또 南川州로 바꾸었음. 州治는 廣州), 春川 方面에 首若州(州治 春川), 三陟 江陵 方面에 河西州(州治 江陵)의 五州가 殘存하였으며 州治의 進退 移動도 頻繁히 反復되었다. 이에 따라 그 밑의 所屬郡縣의 改編이 隨伴하였다. 州에서는 軍主, 郡縣에서는 城主가 그곳에 駐屯하는 軍部隊(停 또는 幢, 後述)와 함께 警察權을 掌握 行使하였다.

小京도 智證王 以後 三個處(阿尺村·國原·何瑟羅州)에 設置하고 國都와 같이 각各 六部를 두었으며 仕臣을 長官으로 삼아 統治하였으나, 國原(忠州)을 除外하고는 모두 廢止하였다. 小京의 警察權을 仕臣이 그곳의 駐屯부隊과 함께 行使하였음을 말할 것도 없다.

新羅의 軍制에 關하여는 隋書 卷81 新羅傳에 「其……甲兵同於中國 選人壯健者 悉入軍烽戍邏俱有屯管部伍」라고 있는 바와 같이 그 甲兵制度가 中國과 같아 國民皆兵主義를 채택하여 國內의 모든 壯丁을 뽑아 軍隊에 編入하여 烽燧·邊戍·巡邏에 從事케 하였으며 각각 屯營과 部伍로 編制되어 있었다.

그러나 新羅의 軍制는 이와 같이 一律的으로 論할 수는 없다. 國際情勢의 變動에 따라 屢次 變遷하였으며 統一前後를 通하여 많은 變貌를 가져왔다.

統一以前의 主要軍團으로는 部族을 中心으로 組織된 六停이 있었다. 六停은 國都附近에 設置한 大幢, 尚州에 駐屯하는 貴幢(本 上州停), 廣州에서 守邊하는 漢山停(本 新州停), 春川의 牛道停, 江陵의 河西停, 昌寧의 下州停(一名 比子伐停)을 稱하는 것인데 元來 幢과 停은 다 같은 旗幟 등 標識를 中心으로 한 사람의 集團을 意味하는 固有語의 漢譯인 듯한데, 이것으로써 軍營·軍團 部隊 등을 指稱하게 된 것이다. (三國史記 職官志「羅人謂營爲停」) (幢은 元來 漢語로는 軍을 指揮하는 旗의 뜻으로서 士兵 百名 程度의 部隊 編制의 이름으로 轉用된 것). 幢에는 大小 등 數種이 있었는데 그 中 國都附近에 駐屯하는 큰 軍團을 大幢이라 稱하고, 地方

의 重要한 管區에 있는 그것을 貴幢이라 하였다. 停은 때로는 檟으로 改稱하는 경우도 있었다. (例전대 眞興王 13年에 設置된 上州停이 文武王 13年에 貴幢으로 改稱됨). 停은 大幢이나 貴幢보다는 格이 떨어졌으나, 地方 各軍管區內의 本營으로서 그 所在地에 州의 治所를 두는 것이 普通이었다.

六停 以外에도 各種의 檟·誓幢과 停 등이 있었는데 例를 들면 眞興王 5年에 設置하였다는 十停(一名 三千幢, 設置時를 統一後 地方改編의 때라고 하는 有力한 說이 있음)의 一部이며 眞平王代에 設立한 九誓幢의 一部와 急幢·四千幢·軍師幢 및 二弓, 太宗王 때에 設置된 罷衿幢·漢山州罷幢 等이 이것이다.

이들 各 停과 檟 등은 軍務와 同時に 治安과 警備警察을 擔當하였다.

六停의 位置와 廢置年代는 다음과 같다.

六停置廢表

停 名	位 置	設 置 年 代	廢 止 年 代	復 置 年 代	衿 色
大 檟	今 慶州	眞興王 5年			紫 色
上 州 停 (文武13年改爲貴幢)	今 尚州	同 王 13年			青 色
漢 山 停 (本 新州停)	今 廣州	同 王 14年?	同王29年罷 置南川停	眞平王26年罷南停 復置漢山停	黃 青
牛 道 停 (本 比烈忽停)	今 春川	善德女王 6年?	中間廢止	文武王13年 復置	綠 白
河 西 停 (本悉直停)	今 江陵	太宗王 5年			綠 白
下 州 停 (一名 比子伐停)	今 昌寧	眞興王 16年	眞興王29年罷	神文王年復置改名完山停	白 紫

## 第三章 統一新羅時代의 治安制度

### 一. 統一新羅의 國家組織의 改編과 治安制度

新羅가 三國統一을 完成함에 따라, 領土와 人口의 擴大를 가져와 여기에 必然的으로 國家組織의 再編성이 요구되었다. 專制的 경향이 보다 強化된 王과 個人的 力勢이 보다 成長한 貴族을 重心으로 統一新羅의 官僚體系가 整備되었다. 그러므로 統一新羅의 官制는 唐의 律令制度를 보다 많이 吸收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太宗武烈王 元年(A.D 654)에 理方府令 良首에 命하여 律令을 參酌하여 理方府格 60餘條를 만들어 이를 補充하였다. 같은 新羅의 法治 實績의 昂揚을 말하여 주거니와 統一에 따른 國家組織 再編成을 꼬집어 있어 많은 成文法의 頒布가 있었을 것이다. 統一의 偉業을 完遂한 文武王도 末年에 그의 遺詔중에서 「律令格式, 有不便者, 即便改張」이라고 한말은 그러한 의도에서였던 것 같다. 그러나 당시의 成文法은 오늘날 그 內容의 仔詳한 것을 알 수 없으므로 治安制度 및 그 作用에 대하여 이에 관계되는 若干의 史料를 통하여 그 윤곽을 엿볼 수 밖에 없다.

統一新羅의 官制는 一部의 改編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三國時代의 것을 답습하였다. 먼저 中央官制로 부터 살펴 보면 그 中心機構는 執事部(42代 興德王 4年 改爲省)가 最高行政부로서 國家의 機密事務를 擔當하고, 그밖에 大宮·梁宮·沙梁宮의 三宮事務를 管掌하는 內省, 이 밖에 위에서 본 調部·倉部·禮部·位和府·領客府·兵部·司正府·左右理方府·乘府 등이 部處別로 나뉘어, 각각 國務를 管掌하였다. 이 밖에 諸小官署로는 國內 大寺刹를 管理하는 各寺成典(例, 四天王寺成典, 奉德寺成典 등) 近親王族의 各官을 分掌하는 各宮典(例 青淵宮典·屏村宮典 등), 修城의 業務를 掌理하는 京城周作典, 舟楫에 關한 業務를 分掌하는 船府 등이 있고, 또한 禮部에 屬하는 國立大學인 國學, 首都를 管掌하는 典京府(本 典邑署), 뒤에 典京府에 併合한 大日任典, 郵驛事務를 맡은 京都驛, 祿俸에 關한 事務를 擔任하는 左·右司祿署, 都內의 各市場을 管轄하는 東市典·西市典·南市典 등이增設되었다. 그리고 水時計의 觀測을 分擔하는 漏刻典과 漏刻博士, 氣象觀測을 業務로 하는 天文博士·醫學博士·律令典博士 등 各種 技術官을 配設하였다. 이中 治安業務를 擔當하는 官署는 最高位인 執事部를 비롯하여 兵部·司正部·左右理方府 등이 있다.

都內는 6部의 行政區域으로 나뉘고 坊里制를 實施하여 1,360坊 55里가 있었다고 한다. [註 1] 都內總戶數는 全盛時에 178,936戶에 달했고, 家屋이 相接하고 노래소리가 끊이지 않았으며, 富豪大家가 39個 있었고, 四節遊宅 즉 季節을 따른 別莊이 있으며, 城中에는 瓦家만이 櫛比하고,

註 1) 三國遺事 卷五(念佛師條)에는 360坊이라고 하였음.

茅屋은 하나도 없었다고 한 것을 보면當時都城富饒의 狀態를 可히 짐작할 수 있다. 또 都內東·西·南三方에 市場이 차례로 세워져 繁榮을 자랑하였으니 治安과 秩序維持에 加一層 緊要하였다. 市場의 事務를 管掌하기 위하여 東市典·西市典·南市典의 市典을 두고, 또 6部에는 각각 少監典이란 今日의 區廳 비슷한 것을 두어 部內의 事務를 掌理하였으며 또 國都周邊인 大城郡 및 商城郡에는 從前대로의 六畿停을 두어 首都의 治安을 擔當케 하였다. 6部의 少監典 및 內省의 職制를 表示하면 다음과 같다.

#### 六部少監典(六部監典)

梁 部	監 郎 1 人	大奈麻 1人 · 太舍 2人 · 舍知 1人 · 史 6人
沙 梁 部	"	" 1人 · " 2人 · " 1人 · " 5人
本 彼 部	"	監太舍 1人 · 舍知 1人 · 監幢 5人 · 史 1人
牟 梁 部	監 臣 1 人	大 舍 1人 · " 1人 · " 5人 · " 1人
漢 祇 部	"	" 1人 · " 1人 · " 3人 · " 1人
習 比 郎	"	" 1人 · " 1人 · " 3人 · " 1人

職官志表題官職名	人員	官階(位)	眞平·眞德	景德·惠恭·元聖
內省 三宮<太梁·梁宮·沙梁宮>管轄				
私 臣	1	太一衿 荷 +- 6--(--)	三宮各置 1人 1人兼掌 三宮	景德(後復故) 惠恭(後復稱私臣)
卿	2	+- 8--(--)		
監	2			
大 舍	1			
舍 知	1			
本 彼 宮				
虞	1			
私 母	1			
工 翁	2			
典 翁	1			
史	2			

위 表를 보면 各部의 職員의 格과 數가 같지 않고 다소 差等이 있음을 알 수 있는데, 朴氏의 本據인 梁部와 金氏의 本據인 沙梁部 및 梁宮의 職員數가 顯著히 높고 職位가 높았음을 말해 주고 있다.

新羅는 統一後 擴大된 領土를 統治하기 위하여 地方組織의 整備가 必要하였다. 이리하여 全國을 9州로 나누고, 또 首都의 偏在性을 보충하기 위하여 地方에 小京을 두었다. 史記 羅紀神文王條에 의하면 「5年 봄에 다시 完山州(全州)를 設置하다. 居列州(晋州)를 撤收하여 善州(康州)에 合置하다. 이로써 비로소 9州를 完備하다.」라고 있고, 또 「7年……3月에 一善州(善山州)를 罷하고 다시 沙伐州(尙州)를 두다.」라고 있음을 보면 唐兵의 驅逐한直後 즉 文武王 17.8年頃으로 부터 神文王 7年(A.D 687)의 사이에 걸쳐 9州制를 정비한 것 같다. 州는 大體

로 지금의 道에 해당하는 廣汎한 地域으로서 舊新羅本土內에 3州(沙伐·歛良·蕭), 百濟故地에 3州(熊川·完山·武珍), 高句麗 舊南界에 3州(漢山·首若·河西)를 設置하였는데, 州 밑에 郡, 郡 밑에 縣이 屬하여 있었으며, 州에는 摠管(元聖王 元年 都督으로 改稱함)을 두고, 郡에는 太守, 縣에는 令을 두어 각각 그 領地를 管轄하였다.

또 小京은 國內 要所에 設置한 地方에 있어서의 政治文化의 中心地로서 이곳에는 仕臣(一名 仕大等)을 두어 政務를 管掌하였다. 國王이 때로 巡狩 駐留함을 常例로 하였다.

州의 長官인 摈管은 그 位階가 級凍(第9位)으로 부터 伊凍(第2位)에 이르고 副官인 州助一名 州輔(各州에 1人씩 둠)는 奈麻(第11位)로 부터 重阿凍(第5位)에 이르렀으며, 小京의 長官인 仕臣은 그 位階가 級凍으로 부터 波珍凍(第4位)에 이르고, 副官인 仕大舍 一名 少尹(各小京에 1人씩 둠)은 舍知(第13位)로 부터 大奈麻(第10位)에 이르렀는데 이들은 모두 中央政府로 부터 派遣되어 軍事·司法·賦役·治安을 兼掌하였다. 그러나 軍事 및 治安에 關한 實務는 長史(一云 司馬 位階는 舍知로 부터 大奈麻. 各州에 1人씩 둠), 司法 및 司法警察에 關한 그 것은 外司正이 指揮 또는 執行하였다. 그리고 郡太守는 그 位階가 舍知로 부터 重阿凍에 이르렀으며, 少守(或云 制守)는 幢(第14位의 吉士에 該當함)으로부터 大奈麻, 縣令은 先沮知(一云 造位, 第17位)로 부터 沙凍(第8位)에 이르렀는데 이들은 대개 土豪로써 任命되었다. 地方行政區域을 表示하면 다음과 같다.

#### 行政區域

京都 및 九州 (文武一神文)	改 名 (景德王時)	領 屬				州 治
		州 數	小 京	郡 數	縣 數	
◎ 京 都						
(1) 沙 伐 州	尙 州	1		10	30	今 尚 州
(2) 歉 良 州	良 州	1	金 官(金海)	12	34	今 梁 山
(3) 蒽 州	康 州	1		11	27	今 晋 州
(4) 漢 山 州	漢 州	1	中 原(忠州)	27	46	今 廣 州
(5) 首 若 州	朔 州	1	北 原(原州)	11	27	今 春 川
(6) 熊 川 州	熊 州	1	西 原(清州)	13	29	今 公 州
(7) 河 西 州	溟 州	1		9	25	今 江 陵
(8) 完 山 州	全 州	1	南 原(今同)	10	31	今 全 州
(9) 武 珍 州	武 州	1		14	44	今 光 州
計		9	5	117	293	

國境을 이루게 된 大同江 以南의 舊高句麗領을 다스리던 特殊 官廳으로서 湘江鎮典이 있었다. 이는 地方의 敵을 방비하는 關門으로 삼았다. 여기의 官員은 頭上大監·大谷城頭上·大監·頭上弟監·弟監·步監·少監 등 一종의 軍官으로組織되었으며 軍事·警備·司法·賦役·租稅 등을 兼掌하였던 것 같다. 頭上大監은 定員 1人, 宣德王 3年(A.D782)에 始置되었으며, 大谷城頭上은 位階가 級凍(第9位)으로 부터 四重阿凍(第3位)에 이르는 者로 任命하였다. 大監은 定員 7人으로 位階는 郡太守와 같이 舍知(第13位)로 부터 重阿凍(第5位)에 이르고, 頭上弟監은 定

員 1人으로 位階는 舍知로 부터 大奈麻(第10位)에 이르고, 弟監은 定員 1人에 位階는(第14位)으로 부터 奈麻에 이르렀으며, 步監은 定員 1人 位階는 縣令과 같이 先沮知(第17位)로 부터 沙漁(第8位)까지, 少監은 定員 6人, 位階는 先沮知로 부터 大舍(第12位)에 이르렀다. 다음에 참고로 外官을 表로서 提示하면 다음과 같다.

外官表

官職名	位階	始置年月	全國內員數
摠管(元軍主文武王元年改爲摠管元聖王元年稱都督)	自級食至伊食	智證王 6年	9人
仕臣(一云仕大等)	自級食至波珍食	真興王 25年	5人
州助(一云州輔)	自奈麻至重阿食		9人
郡太守	自舍知至重阿食		115人
長史(一云司馬)	自舍知至大奈麻		9人
仕大舍(一云少尹)	自舍知至大奈麻		5人
外司正		文武王 13年	133人
少守(一云制學)	自幢至大奈麻		85人
縣令	自先沮知至沙漁		201人

職官表

題官職名	人員	官階(位)
渙江鎮典		
頭上大監	1	
大谷城頭上監		6(4重)——9
大頭上弟監	7	6(重)——13
弟監	1	10——13
步監	1	11——?
少監	6	8——17
		12——17

모든 行政의 基礎가 되는 一線 末端行政의 單位區域은 村落이다. 村落에는 村主가 있어 그 行政事務를 管掌하였다. 최근 日本의 奈良 東大寺 正倉院 所藏 經帙의 精貼에서 新羅의 戶籍에 關한 古文書의 數枚가 發見되었는데 [註 2] 이는 3년마다 개정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 村단위의 帳籍이다.

이 帳籍은 景德王 14年(755) 頃에 作成된 것으로 推定되어 있으며, 그 內容은 當時 西原京(今 清州) 및 그 附近의 4個 村落에 關한 戶口의 實態 調查이다. 이에 의하면 當時 村落의 煙戶(집)는 그 戶口의 多少에 의하여 이것을 上上烟·上中烟·上下烟·中上烟·中中烟·中下烟·下上烟·下中烟·下下烟의 九等級으로 나누었는데(唐 貞觀律令에 비롯하는 九等戶制를 參照) 이에 의한 戶等級과 戶口數를 明記하고 또 年齡에 의하여 戶口를 6等級으로 나뉘어 있었는데, 力役徵發의 기준을 세우기 위한 것이다.

註 2) 野村忠夫「正倉院に 發見せる新羅の民政文書について」(史學雜誌 62~4, 1953)  
旗田魏「新羅の村落」(歷史學研究 226, 227, 1958, 1959).

(1) 小 子	小女子……………10歳 以下
(2) 追 子	追女子……………14歳 以下 (追는 稚의 變字)
(3) 助 子	助女子……………15歳 以上
(4) 丁 男	丁 女……………21歳 以上
(5) 除 公	除 母……………61歳 以上
(6) 老 公	老 母……………71歳 以上

또한 村落의 周圍步數 즉 面積, 牛馬 등의 家畜數, 田畠 및 麻田의 結數, 桑·柏子木·楸子木 등의 株數가 자세하게 記載되고 있다. 四個 村落中 戶數가 가장 多은 곳이 十五戶 百二十五口, 第一 적은 곳이 十戶 百六口이며 每戶 平均 人口는 前者가 8.3人強, 後者가 10.6人이었다. 이 帳籍에는 3年間의 數의 增減까지 詳細히 記入하여 그 變動을 알리고 있다. 西原京은 國都에서 멀리 떠러진 地方임에도 不拘하고 이와 같은 詳細한 內容을 把握하고 있다는 것은 新羅의 律令政治가 얼마나 國民生活에 깊이 침투하고 있었던가를 보여 주며, 이를 基本으로 하는 治安行政도 秩序 있게 維持되었으리라고 생각된다. 統一新羅時代의 地方治安制度는 軍事組織(幢·停)으로 說明된다고 하겠다.

統一以前 新羅軍은 밖으로는 麗·濟兩國과 抗爭, 안으로는 治安을 繼持하는 重責을 다 하였으며, 統一以後에는 國境을 警備하고, 또 여러차례 일어난 國內 反亂을 平定하였으며, 全國을 警備하여 治安을 維持하였다. 新羅의 地方 統治의 性格은 顯著하게 軍事的이었으며 治安 任務의 大部分은 實로 軍이 擔當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아래에서 軍事組織의 沿革 및 機能에 대하여 살펴 볼으로써 당시의 地方治安制度를 알아 보고자 한다.

軍官의 種類	員 數	軍官의 種類	品 數
(1) 將軍	36	(17) 三武幢主	48
(2) 大官大監	70	(18) 萬步幢主	37
(3) 隊大監	70	(19) 軍師監	32
(4) 弟 監	63	(20) 大匠大監	15
(5) 監舍知	19	(21) 步騎監	63
(6) 少 監	372	(22) 三千監	60
(7) 大 尺	342	(23) 師子衿幢監	30
(8) 軍師幢主	19	(24) 法幢監	194
(9) 大匠尺幢主	15	(25) 緋衿監	48
(10) 步騎幢主	63	(26) 著衿監	175
(11) 三千幢主	60	(27) 皆知載幢監	4
(12) 著衿騎幢主	178	(28) 法幢頭上	192
(13) 緋衿幢主	40	(29) 法幢火尺	259
(14) 師子衿幢主	30	(30) 法幢辟主	486
(15) 法幢主	158	(31) 三千卒	150
(16) 黑衣長槍末步幢主	268	合 計	3548

統一以後에도 中央에는 侍衛府가 있어 宮城의 警備警察을 擔當하고 있었으며 그 밖에 여러 詛幢(部隊)이 차례로 加設되어 神文王 때에는 드디어 九誓幢이 完成되었다. 地方에는 종래의 六停 以外에 十停 五州誓 및 三邊守幢등의 增設이 있었는데 이것도 대체로 神文王 때에 完成된 것 같다. 軍制編成이 完了된 때의 新羅軍의 面貌의 主要한 것은 大略 다음 表와 같다. (여기의 表는 三國史記 軍官志 武官 諸軍官 및 軍號條에 의하여 作成한 것임.

#### 軍號(軍營)의 種類

- |           |                |                |
|-----------|----------------|----------------|
| (1) 六停    | (2) 九誓幢        | (3) 十停(或云 三千幢) |
| (4) 五州誓   | (5) 三武幢        | (6) 闕衿幢        |
| (7) 急幢    | (8) 四千幢        | (9) 京五種幢       |
| (10) 二節末幢 | (11) 萬步幢       | (12) 大匠尺幢      |
| (13) 軍師幢  | (14) 仲幢        | (15) 百官幢       |
| (16) 四設幢  | (17) 皆知戰幢      | (18) 三十九餘甲幢    |
| (19) 仇七幢  | (20) 二闕(外闕)    | (21) 二弓(外弓)    |
| (22) 三邊守幢 | (23) 新三千幢(外三千) |                |

#### 六停 所屬軍官의 種類와 員數

	1. 大幢	2. 貴幢	3. 漢山停	4. 牛首停	5. 河西停	6. 完山停	(備考)
將軍	4	4	3	2	2	2	
大官大監	5	5	4	4	4	4	
隊大監	3	2	3	2	△	2	領步兵
弟監	5	5	4	4	4	4	無上衿
監舍知	1	1	1	1	1	1	無衿
少監	15	15	15	13	12	12	
少監	6	4	4	4	△	4	領步衿
大尺	15	10	10	10	10	10	屬大官
大尺	6	4	6	4	△	4	領步衿
軍師幢主	6	4	6	4	△	4	
大匠知幢主	1	1	1	1	1	1	
步騎幢主	6	4	6	4	△	4	
黑衣長槍	30	22	28	20	△	20	
末步幢主							
軍師監	2	2	2	2	2	2	
大匠大尺	1	1	1	1	1	1	
步騎監	6	4	6	4	△	4	

#### 九誓幢

誓幢名	創置年代	成分	服色
1. 綠衿誓幢	眞平王五年始置曰誓幢 同三十五年改稱同王四十七年始置曰郎幢 文武王十七年改稱	新羅民	衿色綠紫
2. 紫衿誓幢		新羅民	衿色紫綠

3. 白 衿 誓 檣	文武王十七年始置	百 濟 民	衿 色 白 青
4. 紺 衿 誓 檣	文武王十二年始置長槍檣 孝昭王二年改稱	新 羅 民	衿 色 紺 ?
5. 黃 衿 誓 檣	神文王三年始置	高 句 麗 民	衿 色 黃 赤
6. 黑 衿 誓 檣	神文王三年始置	靺 鞢 民	衿 色 黑 赤
7. 碧 衿 誓 檣	神文王六年始置	報德城民(安勝部象)	衿 色 碧 黃
8. 赤 衿 誓 檣	神文王六年始置	報德城民(同右)	衿 色 赤 黑
9. 青 衿 誓 檣	神文王七年始置	百濟殘民(反亂餘象)	衿 色 青 白

九誓檣 所屬軍官의 種類와 員數表

	(1)綠衿	(2)紫衿	(3)白衿	(4)紺衿	(5)黃衿	(6)黑衿	(7)碧衿	(8)赤衿	(9)青衿
將 軍	2	2	2	2	2	2	2	2	2
大官大監	4	4	4	4	4	4	4	4	4
隊 大 監 (領騎兵)	3	3	△	3	3	3	3	3	3
隊 大 監 (領弘兵)	2	2	2	4	2	2	2	2	2
弟 監	4	4	4	4	4	4	4	4	4
監 舍 知	1	1	1	1	1	1	1	1	1
少 監	13	13	13	13	13	13	13	13	13
少 監 (領騎兵)	6	6	6	3	6	6	6	6	6
少 監 (領步兵)	4	4	4	4	4	4	4	4	4
大 尺	13	13	13	13	13	13	13	13	13
大 尺 (領騎兵)	6	6	6	△	6	6	6	6	6
大 尺 (領步兵)	4	4	4	8	4	4	4	4	4
軍 師 檣 主	1	1	1	1	1	1	1	1	1
大 匠 尺 檣 主	1	1	1	1	1	1	1	1	1
步 騎 檣 主	4	4	4	△	4	4	4	4	4
着 衿 騘 檣 主	18	18	18	18	18	18	18	18	18
黑 衣 長 槍	24	20	△	△	20	20	20	20	20
末 步 檣 主									
軍 師 監	2	2	2	2	2	2	2	2	2
大 匠 大 監	1	1	1	1	1	1	1	1	1
步 騘 監	4	4	4	△	△	4	4	4	4
着 衿 監	18	18	18	18	18	18	18	18	18

## 十 停

## 停 名

## 所 在

1. 音 里 火 停 今 慶北 尙州郡 青里面(本尚州 青驍縣)  
 2. 古 良 夫 里 停 (矜色青) 今 忠南 青陽郡 青陽面(本熊州 青正縣)  
 3. 居 斯 勿 停 今 全北 任實郡 青雄面(本全州 青雄縣)  
 4. 參 良 火 停 今 慶北 達城郡 玄風面(本良州 玄驍縣)  
 5. 召 參 停 (矜色黑) 今 慶南 咸安郡 竹南面(本康州 玄武縣)  
 6. 未 多 夫 里 停 今 全南 羅州郡 南平面(本武州 玄雄縣)

7. 南川停—— (矜色黃) 今 京畿道 利川郡 邑內面(本漢州 黃武縣)  
 8. 骨乃斤停—— 今 京畿道 麗州郡 州內面(本漢州 黃驍縣)  
 9. 伐力川停—— 今 江原道 洪川郡 洪川面(本朔州 緣驍縣)  
 10. 伊火兮停—— (矜色綠) 今 慶北 青松郡 安德面(本溟州 緣武縣)

(十停의 位置比定은 末松氏說에 의함)

#### 十停 所屬軍官의 種類와 員數

停 名	隊 大 監 (領 騎 兵)	小 監 (領 騎 兵)	大 尺 (領 騎 兵)	三 千 檻 主	三 千 監
(1) 音里火停	1	2	2	6	6
(2) 古良夫里停	1	2	2	6	6
(3) 居斯勿停	1	2	2	6	6
(4) 參良火停	1	2	2	6	6
(5) 召參停	1	2	2	6	6
(6) 未多夫里停	1	2	2	6	6
(7) 南川停	1	2	2	6	6
(8) 骨乃斤停	1	2	2	6	6
(9) 伐力川停	1	2	2	6	6
(10) 伊火兮停	1	2	2	6	6

#### 五州誓 所屬軍官의 種類와 員數表

	隊 大 監 (領 騎 兵)	少 監 (領 騎 兵)	少 監 (領 步 兵)	大 尺 (領 騎 兵)	着騎 檻主 (騎 檻主)
(1) 菁州誓	1	3	9	2	6
(2) 完山州誓	1	3	9	2	6
(3) 漢山州誓	1	3	9	2	6
(4) 牛首州誓	△	△	△	△	3
(5) 河西州誓	△	△	△	△	4

위의 표 중 六停은 神文王 5年(A.D 685)의 完山停 設置를 最後로 다시 變動이 없었고, 新로編制한 地方行政區劃인 九州에 相應하는 新規模의 軍管區(十停)를 編成함과 同時に 舊六停의 機能은 停滯期에 들어 갔다.

그리고 九誓幢도 表에 나타난 바와 같이 처음 單獨誓幢으로 부터 出發하여 차차 數가 增加함에 따라 矜色에 의한 區別을 設定하여 가며, 九의 數로 完結하였다. 誓란 「맹세한다」 「戒告한다」 或은 「號令을 宣布한다」(書 大禹謨; 禹乃會群後 誓于師曰 濟濟有衆 威聽朕命 蔡傳 誓戒也 軍旅曰誓)는 뜻이므로 그 誓(告勅)를 받는 軍隊, 바꾸어 말하면 君王直屬部隊로 解釋된다.

九誓幢에 關하여 特히 注意할 것은 九個誓幢中 六個가 異國人으로 編成되었다는 것이다. 처음 內國人으로 編制된 誓幢(綠矜誓幢)과 郎幢(紫矜誓幢)에 百濟人 · 高句麗人 · 鞍韃人의 檻을 보태고 最後에 또 內國人으로 編成된 長槍幢을 加하여 九個誓幢을 이루게 된 것이므로 新羅人 3, 高句麗人 3, 百濟人 2, 鞍韃人 1의 比率을 갖게 된 것이었다.

이 九誓幢이 新羅軍制上 極히 重要한 地位에 있었다는 것은, 三國史記에서 軍號의 第二로 記錄되어 있을 뿐 아니라 그 母體를 이룬 誓幢, 郎幢 및 長槍幢이 地方軍에 對한 王京의 軍隊로서 出發하였다는 것, 所屬軍官이 諸軍官의 主要 種類를 綱羅하고 있는 것(軍官의 種類로 보면 六停은 十六種, 十停은 五種, 五州誓는 六種임에 대하여 九誓幢은 實로 二十一種이었다.) 등으로 미루어 九誓幢이 新羅國軍의 中樞였으며 가장 綜合的인 部隊였다는 것이다. 또한 十停은 三國史記 職官志 武官 軍號條에 「十停……竝眞興王五年置」라고 있어 十停은 眞興王 5年에 同時의 으로 創設된 것 같이 記錄하고 있으나 十停의 각 所在地를 比定해 보면 百濟故地內로 認定되므로 史記의記事는 信憑할 수 有을 알 수 있다. 眞興王 5年에는 十停中 不過 一·二停이 設置되었고, 적어도 十個停의 完成은 統一新羅時代의 初期였을 것으로 믿어진다.

十停의 所在地는 州治 또는 準州治인 重要政治都市에 隣接하여 軍事裝備로서 九州에 각각 一停을 두고 漢山州에는 그곳이 高句麗의 故地에 隣接하는 要地이며, 戰略上의 要衝地였으므로 一停을 더 加設하였다. 그리고 그 軍事的 職能은 景德王 때의 州郡縣名 改定時에 作用하여 地名改定規準의 하나로 되었으며(上添 別表의 靑驍·青正·青雄 三縣의 靑, 玄驍·玄武·玄雄 三縣의 玄, 黃武·黃驍 兩縣의 黃, 綠驍·綠武 兩縣의 綠은 각각 그곳에 註屯하는 停의 級色에서 指한 것이고 또 驍·正·雄·武 等 字는 武人の 屬性에 關한 文字임) 또 이 十停은 軍團으로서 는 騎兵을 그 特徵으로 한 것 같다.

다음 五州誓는 史記職官志에는 「五州誓……竝文武王十二年置」라고 있어 마치 文武王 12年에 同時의 으로 創設된 것 같이 記錄되어 있으나, 이것도 그 真相을 믿을 수는 없고 적어도 菁州나 完山州가 創設된 神文王 5年 以後 組織된 것이라고 보지 않으면 안된다. 또 前記한 諸軍官表에 의하면 菁·完山·漢山의 三州誓와 牛首·河西의 二州誓와는 內容上 差가 있어 뒤의 兩者는 附加的인 것임에 不過하고 主體는 앞의 三者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앞의 三州誓中 完山·漢山 二州誓는 六停中의 完山·漢山 二停과 重複하는 것 같지만 諸軍官員數表를 자세히 살펴보면 內容의 으로는 重複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六停은 모두 騎兵關係軍官이 微弱함에 反하여 五州誓中 前三者는 모두 騎兵軍官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完山·漢山 二州誓와 完山·漢山 二停과는 서로 補完關係에 있는 것이고, 決코 重複되고 있는 것이 아니다. 三州誓의 特徵은 十停과 같이 그 騎兵 機動力에 있었다.

三邊守幢(一云 邊守)은 神文王 10年에 始置되었다. 漢山邊·牛首邊·河西邊의 三邊守이다.

끝으로 前記한 軍號의 種類表에 있는 바와 같이 新羅에는 많은 種類의 軍營이 있었으며 또 그것이 細分되었는데, 例컨대 四說幢이 弩幢·雲梯幢·衛幢·石投幢 등 集中攻擊部隊 및 攻城技術部隊로 構成되었으며 其他 長槍幢(緋鷺誓幢)·甲幢·弓尺 등 技術化部隊가 있었다. 이들은治安을 維持함에 있어서도 그 機動力와 機械力を 使用하였을 것이니, 軍部隊의 機械化 및 機動力 強化는 곧 警察의 機械化를 意味하는 것이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新羅의 軍編制의 目的是 外敵 防禦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國內의 治安維持, 警備警察의 任務를 遂行하는 데도 그 目的이 있었으므로 그 軍事組織網은 首都를 비롯하

여 國內 각처에 펼쳐 있었던 것이다.

## 二. 統一新羅의 律令

앞서 指摘한 바 있거니와, 文武王이 그의 遺詔 속에서 律令格式을 적절히 개정하라고 한 것은統一後 唐의 律令制度를 보다 많이 섭취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하여 統一後의 新羅는 여러 차례의 律令을 개정한 것 같다. 즉 景德王 때에는 律令博士를 두었으며, 惠恭王 때는 百官稱號를 復舊하였다. 그 후 哀莊王 때는 公式 20餘條를 頒示하였는데 이것은 法令의 公式令에 해당하는 新羅公式令을 頒布한 것이지, 法令區分上의 律令格式의 式이 아님은 물론이다. 公式令은 一定한 公文書式을 規定한 것이 그 主要한 內容을 이루고 있다. 이 밖에 與德王 9年의 色服·器用 등에 관한 下敘의 습이 있었으며, 또 職官令이 여러 차례 改正되었다.

統一後 改正된 新羅律令의 仔細한 內容에 대하여는 확실한 것을 알 수 없으므로 여기서는 다만 三國史記·三國遺事 등에서 律令에 관한 약간의 史料를 拾遺하여 그 一端을 살펴 보는데 그 치기로 한다.

### 1. 新羅律

#### 가. 刑

中國에서 答·杖·徒·流·死의 五刑의 制가 確立된 것은 後周 및 隋(A.D 581 建國) 以後의 일이다. 그러므로 新羅가 律을 頒布할 때에는 이 進步된 五刑의 制를 採擇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肉刑에 關한 限, 前漢의 孝文帝로 부터 歷代 王朝에 걸쳐 차차 廢止되었고, 新羅는 이를 이어 받지 않았으며, 따라서 史記를 비롯한 新羅史料에 肉刑의 例는 나타나지 않는다. 다만 極刑에 關하여는 夷九族·夷一族 등의 族刑과 車裂·棄市·斬·自盡 등이 있는데 이것들은 高句麗小獸林王 律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생각된다. 물론 中國에도 이와 같은 刑은 古代로 부터 襲用되어 왔다.

#### ① 族刑

族刑의 例는 三國史記에 七例가 나타나고 있다.

ㄱ. 眞平王 53年(A.D 631)……夏五月 伊渾 柒宿 與 阿阿 石品謀叛 王覺之 捕捉柒宿 斬之東市 並夷九族[註 3].

ㄴ. 16年 丁未 是善德王末年 眞德王元年也 (A.D 647) 大臣毗曇 廉宗謂女主不能善理 舉兵欲廢之 王自內禦之 毗曇等屯於明活城 王師營於月城 攻守十日不解……庚信……於是督諸將卒奮擊之 毗曇等敗走 追斬之 夷九族[註 4].

註 3) 三國史記 新羅本紀 眞平王條

4) 同書 列傳 第一 金度信傳

眞德王 元年正月十七日 誅毗囊 坐死者 三十人[註 5].

□. 文武王二年(A.D 662)……八月……大幢摠管 眞珠 南川州摠管 真欽 許稱病 閑放不恤國事  
遂誅之 並夷其族[註 6].

己. 神文王元年(A.D 681) 月月……八日 蘇判 金欽突 波珍漁 興元 大阿漁 真功等 謀叛伏誅…  
十六日 下教曰……或逃竄山谷 或歸降闕庭 尋枝究葉 並已誅夷[註 7].

口. 惠恭王 四年(A.D 768)……秋七月 一吉漁大恭與弟阿漁大康叛 集衆圍王宮三十三日 王軍討  
平之誅九族[註 8].

臼. 憲德王 十四年(A.D 882) 三月熊川州都督 憲昌 以父周元不得爲王 反叛……城將陷 憲昌知  
不免 自死……戮宗族黨與 凡二百三十九人 縱其民[註 9].

人. 景文王 六年(A.D 866) 冬十月 伊漁允興與弟叔興·季興謀逆 事發覺 走岱山郡 王命追捕斬  
之 夷一族[註 10].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夷九族·夷其族·尋枝究葉 並…誅夷·誅九族·戮宗族黨與·夷一族 등  
은 모두 連坐·緣坐等을 意味하는 것으로서 犯罪者 個人에만 刑事責任을 局限하지 않고 特定範  
圍內의 親族 或은 家族 등에 對하여도 犯罪構成要件의 해당 與否 및 責任條件의 有無 등을 紛明  
하지 않고 無條件 連帶責任을 負擔시켜 極刑에 處한 것이다. 이것은豫防主義 威嚇主義 등 刑事  
政策的 見地에서 실시된 것으로서, 특히 謀叛에 對하여 加하여진 것이다. 위의 例「己」은 職務  
遺棄에 該當함에도 不拘하고 族刑을 加하였는데 이것은 오히려 異例에 屬하는 것으로 보인다.

九族은 父族四(五服의 同族, 姑의 子, 姉妹의 子, 自己의 同族) 母族三(母의 父族, 母의 母族,  
母의 姉妹의 族) 妻族二(妻의 父族, 妻의 母族)를 意味한다[註 11]. 그리하여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239人 或 30人을 誅殺하였는데, 九族을 어떻게 一網打盡할 수 있느냐가當時의 刑律로서  
重要한 課題였을 것이다. 上記한 例中「己」에 있어서도 謀逆輩가 或은 山谷에 逃避하고 或은 闕  
庭에 돌아와 降服하고 있는데 이들을 竅立·搜捕한다는 것은 极히 어려운 일이었을 것  
이다.

註 5) 三國史記 新羅本紀 眞德王條

6) 同書 新羅本紀 文武王條

7) 同書 神文王條

8) 同書 惠恭王條

9) 同書 憲德王條

10) 同書 景文王條

11) 九族의 意義·範圍에 대하여는 古文家의 說과 今文家의 說이 對立하고 있으며, 또 今文家의 說도  
셋으로 나뉘어 있다.

古文家의 說은 高祖·曾祖·祖父·父·己·子·孫·曾孫·玄孫을 즉 同姓直系만을 意味한다.

(詩 王風 葛藟序·箋)

이에 對하여 今文家의 說의 其一是 父族四(五服의 同族, 姑의 子, 姐妹의 子, 自己의 同族), 母  
族三(母의 父族, 母의 母族, 母의 姐妹의 族), 妻族二(妻의 父族, 妻의 母族)를 意味한다고 主張  
하고(詩 王風 葛藟疏), 其二是 父族四(姑의 子, 姐妹의 子, 女子의 子, 自己의 同族), 母族三(外  
祖父, 外祖母, 從母의 子), 妻族二(妻의 父, 妻의 母)를 包含한다하며(白虎通, 宗族), 其三是 外  
祖父, 外祖母, 從母子), 妻父, 妻母, 姑의 子, 姐妹의 子·女子의 子, 自己의 同族을 意味한다.  
(左氏傳 桓公六年 九族 杜注)

連坐 縁坐는 古代 모든 나라의 刑罰現象이었다.

## ② 車 裂

車裂의 一例는 三國史記에 나타난다[註 12]. 車裂은 一名 軶이라고도 하며 釋名에 「車裂曰輞  
輞也者散也 支體分散」이라고 있는 바와 같이 受刑者の 肢體 및 頭部를 四車 或은 五車에 매달고  
車를 四方으로 달리게 하여 身體를 찢기는 苛酷한 刑罰이다. 左傳에 의하면 中國古代의 鄭, 楚  
에 軶刑이 있었으며, 저 有名한 法家 商鞅은 秦에서, 縱橫家 蘇秦은 齊에서 軶에 處刑되었다 한다.  
이 刑은 高句麗律의 母法으로 推測되는 晉泰始律에는 없었으나, 北魏律에는 存在하였으며  
[註 13]. 新羅律에도 規定되었던 것 같다. 그러나 律文에 規定이 없더라도 執權者的 臨機的인  
方法으로 處刑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특히 謀逆罪에 限하여 律外의 方法으로 處刑하는 例는 非  
一非在하였다.

## ③ 支解 또는 四支解

支解는 四支解라고 하며[註 14]. 古代의 酷刑의 하나로서 公羊傳 宣公六年條에 비로소 나타나며 또 韓詩外傳一에 「吳起削刑而車裂 商鞅峻法而支解」라 있고, 韓非子 奮劫弑臣篇에 「此商君之所以車裂於秦 而吳起之所以枝上於楚者也」라 있으며, 六部 成語 刑部 支解人注解에는 「斷人四肢 而分斬之也」라고 있는데, 受刑者の 四肢를 切斷하여 分斬하는 刑을 말한다. 이것이 어느 사이에 刑罰의 하나로서가 아니고 犯罪行爲의 한 형태로 실시되었는데 唐律 및 明律의 名例律  
十惡中 第五 不道의 罪目中에 「支解人」의 用語가 보인다. 大明律直解註에는 이것을 「四支乙裂  
解爲在乙良」(四肢를 裂解하겠을 땅)이라고 解釋하고 있어(大明律 卷十九 殺一家三人條) 他人의  
肢體를 찢어 죽이는 殺人行爲를 말하고 있다. 그러나 元來는 古代 刑罰의 하나다.

## ④ 棄 市

古代 行刑에 棄市의 例는 極히 많다. 三國史記에도 二例가 나타난다.

ㄱ. 眞平王 五十三年(A.D 631) 夏五月 伊飡 柒宿與阿飡 石品 謂叛 王覺之 捕捉柒宿 斬之東市.

ㄴ. 神文王 元年 八月……二十八日……誅伊飡軍官 教書曰……乃與賊臣欽突等交步 知其逆事 會不告言 旣無憂國之心 更絕徇公之志 何以重居宰輔 濫濁憲章 宜與衆棄 以懲後進

上例의 「斬之東市」「與衆棄」는 모두 棄市刑을 意味한다. 中國에서는 古來刑罰執行이 公開되었다. (公開主義) 특히 死刑은 市場이나 十字街頭 사람이 많이 往來하는 場所를 選定하였다. 이것은 一人을 處罰해서 百人을 威嚇하려는 이른바 威嚇的 刑事政策의 表現이다. 北魏律에도 死刑에는 軶・腰斬・殊死・棄市의 四等이 있었다 한다(唐六典). 禮記 王制에는 「刑人于市 與衆棄之」라고 說明하고 있으며, 史記 秦始皇紀에는 「有敢偶語詩書 棄市」의 例가 보인다. 周禮 鄭注(秋官掌戮)에 「殺以刀刃 若今棄市」라고 있는 것을 보면 棄市는 斬刑이었던 것을 알 수

註 12) 三國史記 新羅本紀 景文王條

13) 唐六典에 의하면 北魏 太武帝의 律에는 軶・腰斬・殊死・棄市의 四等이 있었다 한다.

14) 三國史記 新羅本紀 太宗武烈王條

있다.

#### ⑤ 戮 尸

戮尸은 三國史記에 그例가 보이는 바와 같이 古塚에서 尸身을 上에 誅斬한 것이다[註 15]. 元來戮尸에는 2種이 있는데 하나는 加刑한 罪人의 尸身을 暴屍하는 것이고(國語 晉語九 戮其死者의 注에 陳尸爲戮이라고 하였음.) 둘째는 重罪犯人이 刑의 執行前 死亡한 경우에 그 尸身에 刑을 加하는 것이다. (六部成語 刑部 戮死 注解에 重罪之犯 未及行刑而死 應戮其屍라고 있는 것) 後者가 狹義의 戮尸이며 謀叛者 憲昌에 대한 것도 이에 屬한다. 戮尸의 起原도 오래 되어 春秋戰國時代에 이미 行해졌으며 明·清 때까지도 그 遺制가 殘存하였다. (陳顧遠著 中國法制史 p.270).

#### ⑥ 斬·絞 및 自盡

斬의 例는 史記 중에 散見되며 有名한 異次頓도 斬에 處하였던 것이다. 三國史記 法興王十五年條에 「王亦欲與佛教 群臣不信 嘍喋騰口舌 王難之 近臣異次頓奏曰 請斬小臣 以定衆議……及斬之 血從斷處湧 色白如乳」라고 있는 것이 그것이다.

그러나 絞의 例는 보이지 않는다. 絞가 死刑의 하나로 된 것은 北齊·北周로 부터 비롯하였으니[註 16] 法興王의 律 制定當時 北魏로 부터 私淑할 수 없었으며, 또 高句麗律에서도 이것을 이어받을 수 없었을 것이다.

自盡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記事를 찾아 볼 수 있다. 즉 前記한 神文王 元年條에 兵部令 伊渙 軍官이 金欽突 등의 逆事를 알면서도 告言하지 않고 陰으로 두둔하고 있었음에 대하여 軍官과 그 嫡子 1人에게 自盡을 命한記事가 그것이다. 自盡은 自裁라고도 稱하며 司馬遷의 史記 白起傳 및 李斯傳에도 나타나고 있다. [註 17] 唐 開元 獄官令에 의하면 五品 以上으로서 惡逆以上의 罪가 아닌 경우에 限하여 在家 自盡을 聽許하였던 것인데 臣下 或은 王族에 대한 名譽刑이었다.

#### ⑦ 流 刑

「孝昭王 10年(A.D 701)……夏五月 靈巖郡太守 一吉渙 諸逸 背公營私 刑一百杖 入島」[註 18]. 「興德王 3年(A.D 828)……夏四月……漢山州瓢川 縣妖人自言 有速富之術 衆人頗惑之 王聞之 曰 執左道以惑衆者刑之 先王之法也 投界其人遠島」[註 19].

위의 두記事가 三國史記에 보인다. 流에 대하여는 尚書 舜典에 이미 「五流有宅 五宅三居」라고 있으며, 孔安國傳에는 「五刑之流 各有所居 五居之差 有三等之居 大罪四裔 次九州之外 次千里之外」라고 있어 大罪는 四裔, 다음은 九州의 밖, 다음은 千里밖에 보내는 것이며, 流刑의 輕重에 따라 流地에 遠近三等의 差를 둔다고 하고 있다. 이와 關聯하여 北周律에 流五等, 隋唐律에

註 15) 前揭書 憲德王條

16) 絞가 死刑의 一種으로 된 것은 北魏律로 부터 시작된다는 說이 있다. (仁井田陞著 中國法制史研究 刑法篇 99~100)

17) 史記 白起傳 「秦王賜之劍 自裁」同書 李斯傳 「其賜以自裁」

18) 三國史記 新羅本紀 孝昭王條

19) 三國史記 新羅本紀 興德王條

流三等이 있었음이 想起되는데〔註 20〕新羅律에도 이런 것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다. 唐開元天寶年間(A.D 713~756)에는 死罪를 免한 경우「決一百配流嶺南磧西諸州」「決一百長流遠惡處」「先決六十長流嶺南遠惡處」라 하여 杖과 流를 併科하는 것이 通例였는데 위 孝昭王時의 例도 杖과 流를 併科한 것이다. 徒邊刑도 流刑의 하나이다.

### ⑧ 徒刑

徒刑 즉 勞役刑에 關한記事는 三國史記에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徒는 中國에 있어 春秋時代에 이미 行해졌으며(有名한 晉豫讓의 故事에 關하여 史記에 「乃變名姓爲刑人入宮塗廁中挾匕首欲刺襄子襄子如廁心動執問塗廁之刑人則豫讓」이라고 있음.) 그後 秦·漢 및 魏·晉·南北朝에 걸쳐 鬚鉗城旦春·完城旦春·鬼薪·白粲·隸臣·司寇作·復作으로 오랫동안 執行되어 왔으므로 이것이 新羅에 傳承되지 않았을까 여겨진다. 다만 流와 徒가 名稱上으로도 分化되어 律文中에 나타나게 된 것은 北魏孝文帝時의 일이므로(魏書 孝文紀에 「太和十六年五月詔……更定律條流徒限制帝親監決之」라 있음) 이것이 羅律에의 영향 與否에 대하여는 疑問이라고 하겠다.

### ⑨ 杖과 答

三國史記 列傳 第七 裂起傳에 「仇近從元貞公築西原述城元貞公聞人言謂怠於事杖之」라는記事가 나오는데 이것은 일찌기 庸信으로 부터 天下의勇士라는 稱譽를 받은 仇近이 뒤에 元貞公을 쫓아 築城의 일을 하였을 때 元貞公은 仇近이 일에 懈慢하다는 流言을 믿고 이를 杖刑에 處하였다는 것이다. 또 前記한 流刑의 項에서 본 「靈巖郡太守一吉濱諸逸背公營私刑一百杖入島」라고 있는 것은 모두 杖刑의 例이다. 答刑에 대한記事는 三國史記에 보이지 않는다. 생각컨대 答刑은 가장 輕한刑이니 三國史記와 같은 簡略한 史書에 나타나지 않음도 또한 當然한 일이 아닐까 생각된다. 杖과 答는 先秦時부터 行해졌는데 尚書堯典에 이미 「鞭作官刑朴作教刑(孔安國傳, 并援楚也)」의 記錄이 있다. 그後 歷朝를 거쳐 唐에 이르러 答杖徒流死의 새로운 五刑의 體系가 確立되었다.

## 4. 罪

### ① 五逆

三國史記新羅本紀 卷6 武王 9年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内容의記事가 보인다. 「刑獄內에서는 아직도 君王이 哀惜히 여기는 恩惠를 입지 못하고, 刑의 苦役을 받는 者 아직도 釋放 改過의 機會를 얻지 못하였으니, 이 일을 생각할 때 寢食이 便치 못하다. 이제 國內의 罪囚를 大赦할지니 總章2年(A.D 669) 2月21日(即 이 下敎를 내리는 當日) 未明 以前에 五逆 死罪 以下를 犯한 者로 拘禁되어 있는 者는 罪의大小를 論하지 말고 全部 釋放하라」고 下敎하였다.

여기에 이른바 五逆이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一般用語로는 君·父·母·祖父·祖母를 殺害함을 말하며(易林에 「雷霆所擊誅者五逆磨滅無迹」이라 있고, 雲笈七籤에 「凡人求道勿犯五逆」

註 20) 唐律疏議 卷一 名例律疏는 尚書舜典의 疏를 引用하여 「今之三流 即其義也」라고 하며 (1) 二千里居作一年 (2) 二千五百里居作一年 (3) 三千里居作一年으로 하고 있다. 이것은 隋開皇律에 比하여 流配地의 距離를 각 一千里 延長한 것이다.

不祥」이라고 있는 五逆이 이에 該當한다) 佛教用語로는 一者害母 二者害父 三者害阿羅漢 四者破和合僧 五者惡心出佛身血을 意味한다. (俱舍論 十七) 그러나 律令用語로는 國家社會의 根本道德과 身分社會의 基本秩序를 破壞하는 罪質의 殊惡한 犯罪 五種을 가리킨 것으로 여겨지는데 理由는 三國統一의 大業을 成就한 이 마땅에도 宥恕 輕減을 하지 않음으로서 能히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元來 中國에서一切의 宥恕 輕減을 不許하는 殊惡의 犯罪가 指定되고 있었으니 그 것이 이른바 十惡이다. 元來 十惡이란 처음 北齊(A.D 549~577) 律이 十大犯罪(一曰反逆 二曰大逆 三曰叛 四曰降 五曰惡逆 六曰不道 七曰不敬 八曰不孝 九曰不義 十曰內亂)을 추려 重罪十條라고 規定하였던 것에 起因하는데, 隋 開皇律이 이것을 繼受함에 있어 十惡이라 改稱하고, 다시 唐律이 이것을 繼受함에 즈음하여 「降」을 「不睦」으로 代替하였던 것이다. 이제 좀 冗長한 感이 있지만 唐律의 原文을 引用하여 十惡을 說明하면 다음과 같다.

- (1) 「一曰謀反, 謂謀危社稷」
- (2) 「二曰謀大逆, 謂謀毀宗廟・山陵及宮闈」
- (3) 「三曰謀叛, 謂謀背國從僞」
- (4) 「四曰惡逆, 謂毆及謀殺祖父母・父母・殺伯叔父母・姑・兄・姊・外祖父母・夫・夫之祖父母・父母者」
- (5) 「五曰不道, 謂殺一家非死罪三人及支解人 造畜蠱毒・厭魅」  
(註 蠱毒 以毒藥藥人 令人不自知者 厭魅 婦人媚道)
- (6) 「六曰大不敬, 謂盜大祀神之物, 乘輿服御物 及偽造御寶, 合和御藥 誤不如本方 及封題誤, 若造御膳 誤犯食禁, 御幸舟船 誤不牢固, 指斥乘輿情理切害 及對捍制使而無人臣之禮」
- (7) 「七曰不孝, 謂告言詛罵祖父母・父母・夫之祖父母・父母・及 祖父母・父母在別籍財若借泰有闕 居父母喪 身自嫁娶 若作樂釋服從吉 聞祖父母・父母喪 匿不舉哀, 託稱祖父母・父母死」
- (8) 「八曰不睦, 謂謀殺及賣縗麻以上親 殿告夫及大功以上尊長・小功尊屬」
- (9) 「九曰不義, 謂部民殺本屬知府・知州・知縣 軍士殺本管指揮千戶百戶 吏卒殺本部五品以上長官 若殺見受業師 及聞夫喪 匿不舉哀 若作樂釋服從吉 及改嫁」
- (10) 「十曰內亂, 謂姦小功以上親 父祖妾及與和者」

上記 唐律의 十惡에 관한 記事중 (1)은 內亂罪 (2)는 王室의 尊嚴을 害치는 罪 (3)은 外患罪 (4)는 家族 내지 家族倫理를 害치는 罪, (5)는 不道罪 (6)은 大不敬罪, (7)은 不孝罪 (8)은 不睦罪 (9)는 不義罪 (10)은 姦淫罪 등인데, 그러면 五逆의 內容은 무엇일까? (1)의 謀反, (2)의 謀大逆 (3)의 謀叛, (4)의 惡逆이 포함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면 나머지 五逆 의 하나는 무엇일까? 그것은 「不道」나, 혹은 北齊律 重罪十條中의 하나인 「降」이었을 것으로 생각하는 見解도 있다[註 21]. 그러나 新羅에서는 특히 「降」을 五逆의 하나로 規定했음지도 하다. 法興王이 律令을 頒示할 때는 北齊는 아직도 史上에 나타나지 않았고, 羅律이 頒布된 後 20년이 지나서야 北齊가 비로소 舉起하였음을 생각해야 할 것이다. 물론 新羅가 獨自의인 「臨陣無

註 21) 田鳳德「新羅의 律令攷」(서울大論文集 人文社會科學 p. 328. 1956)

退」의 見地에서 降을 五逆중에 넣어 花郎의 무리를 鼓舞하였는지는 알 수 없다.

謀反의 例는 極히 많다. 新羅憲德王 十四年 三月에 熊川州 都督 金憲昌이 叛亂하여 國號를 長安, 年號를 세워 慶雲이라한 것(羅紀 憲德王 十四年條), 善德王 十六年 上大等 伊飡 毗曇과 廉宗이 女王이 政治 그르친다하여 舉兵, 謀叛(實은 謀反)한 것, 神文王 元年에 蘇判 金欽突, 波珍飡 興元, 大阿飡 真功 등이 謀反한 것, 또 同王 四年에 安勝의 族子 將軍大文이 金馬渚(益山)에서 謀叛한 것(實은 謀反), 孝成王四年 波珍飡 永宗이 王妃의 宗黨을 怒하여 謀叛(實은 謀反)한 것, 惠恭王十六年에 伊飡 志貞이 聚衆하여 宮闕을 围犯한 것, 真聖王 三年에 元宗 哀奴 등이 沙伐州에 웅거하여 叛한 事件, 文聖王 三年 春에 一吉飡 弘弼이 謀叛하다가 事前에 發覺되어 海島로 도망간 事件 등은 모두 謀反의 例이다. 史記에 謀反과 謀叛을 가려 쓴 것 같지 않다. 앞서 잠깐 지적한 바 있거니와 謀反은 內亂罪, 謀叛은 外患罪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기에 한가지 添言할 것은 三國史記 景文王 十四年 五月條에 伊飡 近宗이 「謀逆犯闕」하였다라는 記錄이 있는데, 이것은 單純히 反逆을 圖謀하여 宮闕을 犯한 것으로서 宮廟를 謀毀한 것은 아니므로 謀大逆이라고 보는 것(田鳳德「新羅律令攷」p. 328)은 不當하고 이것도 謀反의 하나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또 同王 六年 冬十月에 伊飡 允興과 其弟 叔興 季興이 謀逆하다가 發覺되어 岳山郡으로 逃走……의 事件과 惠恭王 三年 一吉飡 大恭과 其弟 大廉이 叛하여 衆을 모아 三十三日間 王宮을 包圍한 일이 있었는데, 이것들도 모두 謀反 즉 內亂罪에 해당하는 事件이다.

다음 謀叛 즉 外患의 罪에 해당하는 事件을 들어 보면 文武王 十三年 秋七月에 阿飡 大吐가 謀叛付唐하다가 일이 綻露되어 伏誅한 事件, 太宗武烈王 七年 八月二日 毛尺과 黑日을 處刑하였는데 毛尺은 本昱 新羅人으로서 百濟에 逃亡하였다가 大耶城 黑日과 共謀 陷城하였다. 또 黑日은 大耶城에서 毛尺과 共謀하고 百濟兵을 끌어들여 倉庫를 燒失케 하여 城軍으로 하여금 糧穀이 떨어져 敗戰케 하고 百濟와 더불어 本國에 來攻하였다는 罪目이다. 이 毛尺과 黑日에 關한 事件, 三國史記 卷 6, 新羅本紀 文武王 十年 十二月條에 보이는 漢城州摠管 蔡世 取百濟 □□□□國逼彼事覺(蔡世가 百濟……을 取하고 彼地에 갔다가 그 일이 經露됨에) 大阿飡 真珠를 보내 誅斬한 事件 등은 與敵行爲 및 施設破壞 利敵行爲 내지 間諜行爲 등에 해당하므로 外患罪 즉 謀叛에 해당함은勿論이다. 그러나 阿達羅尼師今 十二年 冬十月에 阿飡 吉宣이 謀叛하다가 發覺됨에 處刑될까 두려워 百濟로 逃走한 事件은 謀反罪(內亂罪)인 政治的 亡命에 해당하고 謀叛罪를 構成하지는 않을 것인데, 이것은 羅律頒示前의 事件이다. 또 文武王 十一年의 報書 中에 이른바 「又將百濟婦女 嫁與新羅漢城都督 朴都儒 同謀合計 偷取新羅兵器 襲打一州之地」한豫謀는 곧 朴都儒를 誅斬해서 謀議가 未遂에 그치고 말았으나 이것은 謀叛(外患罪)에 해당한다. 다만 당시에 있어서 百濟는 이미 滅亡하였던 때이므로 百濟에 關한 限, 外患罪가 成立할 수 없었으나, 對唐間에 이 罪가 構成될 것이다.

惡逆事件으로는 文武王 二年 八月에 沙飡 如多이 어머니를 구타한 事件이 있었으나, 處刑받기 전에 벼락에 맞아 죽었다(三國史記 羅紀 文武王條)

謀大逆과 不道에 關하는여 三國史記에서 아직 그 實例를 發見되지 않는다.

## ② 知逆事不告言

三國史記 卷 8 羅紀 神文王 元年 8月 28日條에 보이는 下敎에 「……兵部令 伊渙 軍官은 班序에 따라 上位에 까지 오른 사람인데 能히 拾遺 補闕하여 朝廷에 本分을 다하지도 못하고 또 授命 忘軀하여 國家에 忠誠을 表하지도 못하고 逆賊인 鈦突 등과 關係하여 그 逆謀의 事實을 알고도 일찌기 告하지 않았다. 이미 褒國의 表情이 穷고, 또 奉公의 뜻이 끊어졌으니 어찌宰相의 位에 앉아 國憲을 흐리게 하랴. 마땅히 公開處刑하여 後進을 懲戒해야 할 것이니……」이라 한 것이 곧 이 罪이니 唐律 卷第23 閩訟律 下 密告謀反大逆條의 「諸知謀反及大逆者 密告隨近官司 不告者絞 知謀大逆 謀叛 不告者流二千里……」에 해당하는 犯罪인데 이것이 麗律과 北魏律에도 있었을 것이다. 今日의 國家保安法의 不告知罪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 ③ 妖言惑衆

興德王 3년……夏四月에 漢山州 瓢川縣(지금의 坡州附近인지 未詳)의 妖術人이 自稱 速富의 術을 가졌다하여 衆人이 자못 感信하자 王이 듣고 가로되 「邪道를 主張하여 民衆을 惑하게 하는 者에게 刑을 加함은 先王의 法이라」하고 그 사람을 먼 섬으로 귀양보낸 例가 있다. (三國史記 卷10 羅記 興德王 10年夏 4月條) 이것은 唐律 18卷 賊盜律 造妖書妖言條 「諸造妖書及妖言者絞 傳用以惑衆者 亦如之」에 해당하는 犯罪이다.

## ④ 詐病離職

文武王 2年 8月에 「大幢總管 眞珠와 南川州總管 眞欽이 거짓 病이라 일컬고 閑漫히 놀며 國事를 들보지 않으므로 이를 誅殺하고 그一族을 滅한 事件이다」. 三國史記 卷 6 羅記 文武王 2年 8月條) 즉 病을 詐稱하고 한가히 놀며 不恤國事한 것인데 不恤國事의 內容이 具體的으로 나타나 있지 않으나, 이는 官吏의 職務怠慢의 一種으로서 唐律 職制律中의 어떤 條項에 해당할 것이다.

## ⑤ 背公營私

孝昭王 10年 夏五月에 灵巖太守 一吉渙 諸逸이 公益에 背反하고 私利를 營爲하였으므로 枉刑一百에 處하고 海島로 귀양 보낸 事件이 그 한 例이다. 背公營私의 具體的인 內容은 알 수 없으나 唐律 第15卷 廐庫律中에 해당 條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 ⑥ 敵前不進, 敵前退却

文武王 10年 秋七月에 「王이 舉兵하여 百濟殘衆을 討伐할 때, 衆臣·義官·達官·興元 등이 □□寺營에서 退却하였으므로 罪가 死刑에 該當하였지만 特히 故免하여 龍職에 멈춘 事件」이 있었고, 三國史記 卷 6 羅紀文武王 10年秋七月) 眞聖王 3年에 元完·哀奴 등이 沙伐州에 웅거하여 謀叛하였을 때 王이 奈麻인 令奇에게 命令하여 그들을 捕捉하게 하였는데 令奇가 賊壘를 바라 보고 두려워 進攻하지 못한 事件이 있었는데, 이것을 唐律에 間擬하면 第二十八卷 捕亡律從軍征討亡條中의 「監對寇賊而亡者斬」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 ⑦ 欺謗時政

眞聖王 2年에 匿名子가 時政을 欺謗하는 言辭를 羅列하여 大路에 揭示한 일이 있었다.

(欺謗時政 構辭 榜於朝路), 三國史記 卷2 真聖女王條에 의하면 그 構辭 即 掛書는 陀羅尼語(佛經呪語)를 써서 지은 것으로 그 글에 「南無亡國 刹尼那帝 刹尼判尼蘇判尼 千千三阿干 鳥伊婆婆詞」라고 하였는데 解說者는 말하기를 그 中「刹尼那帝」란 것은 真聖女王을 指稱한 말이고, 「刹尼判尼蘇判尼」는 二蘇判을 말한 것이며, 또 鳥伊는 鳥好(角干魏弘의 妻)의 謂라 한다. 이것은 唐律 第18卷 賊盜律 造祿書狀見條「諸造妖書及妖言者絞」에 해당하는 罪라고 생각된다.

#### ⑧ 軍令違背

太宗武烈王 七月 百濟가 大敗하고 塔伯이 戰死한 後 廉信 등이 唐營에 가니, 蘇定方이 廉信軍이 戰期에 늦었다 하여 新羅督軍 金文穎을 軍門에 斬하려 하였으나 廉信의 激怒를 이기지 못하여 文穎의 罪를 묻지 않은 일이 있었으며, 또 文武王 8年 10月 22日 論功行賞(高句麗를 滅한 直後)할 때, 沙渾 求律이 鳥川戰鬪에서 橋下渡水하여 大勝을 얻은 功이 있었으나 軍令이 없었던 關係로 賞에 參與하지 못한 일이 있었다(以無軍令 自入危道 功雖第一而不錄). 이 경우는 儻이 倖히 戰勝하였기 때문에 刑罰은 받지 않았으나 軍令 違背에 대하여 重罪에 處하였다 것은 물론이다. 上記 敵前退却도 軍令違背의 하나이다.

## 2. 新羅 令

新羅律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新羅의 刑罰法典이며 犯人懲戒法이며 禁止法이다. 이에 대하여 新羅令은 非刑罰法典이며 行政的 規定이며 命令法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國家의 組織 運營에 관한 것을 規定하고 있었을 것임은 令의 性質上 當然히 推定되는 바이다. 新羅令이 存在하였음을 三國史記의 記錄에 의하여 明確히 알 수 있으나, 그 篇目과 內容에 대하여는 자세한 記錄이 없다. 그러므로 新羅가 그 令을 制定 或은 改正함에 있어 參酌하였을 것으로 생각되는 中國歷代 諸王朝의 諸令과 한편 制定當時 新羅令을 參酌하였을 것으로 推想되는 日本의 養老令을 三國史記 其他 新羅史料와 對照하면서 그 篇目 및 內容을 想定하는 걸 밖에 없다. 그리고 本編의 性質上 治安制度에 關聯 있는 令에 局限하여 살펴 보기로 한다.

史記나 漢書에 의하면 中國에서는 漢代에도 唐의 學令, 選舉令에 해당하는 功令[註 22], 倉庫令에相當하는 金布令[註 23] 그 밖에 祀令 官衛令[註 24] 등이 存在하였으며, 三國의 魏明帝時에는 州郡令45篇, 尚書官令, 軍中令, 合 180餘篇이[註 25] 編成되었다. 晉에 이르러 武帝秦始 4年(A.D264)에 頒布한 晉令은 40卷 40篇 2300餘條가 있었다고[註 26], 傳하는데, 그 現存逸文은 大部分이 官品令에 屬하고 其他 祭祀·貢賦·關市·逃亡奴婢·軍制·刑具·士卒·百工의 服裝에 관한 것등 公法的 規定이 많고, 篇名은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後日의 隋·唐令과相當한 距離가 있다.

註 22) 史記儒林傳, 漢書儒林傳

23) 漢書高祖紀, 同書蕭何之傳

24) 漢書郊祀志下 史記張釋之傳 漢書張釋之傳

25) 晉書 卷30 刑法志

26) 晉書 卷3 武帝紀 同書 卷30 刑法志 同書 卷34 杜預傳 唐六典 卷6 刑部郎中員外郎條

1 戸	2 學	3 貢士	4 官品
5 吏員	6 傅廩	7 服制	8 祠
9 戶調	10 佃	11 復除	12 關市
13 捕亡	14 獄官	15 鞭杖	16 醫藥疾病
17 葬葬	18 雜上	19 雜中	20 雜下
21 門下敬騎中書	22 尚書	23 三臺秘書	24 王公侯
25 軍吏員	26 選吏	27 選將	28 選雜士
29 宮衛	30 賦	31 軍戰	32 軍水戰
33~38 大軍法	39, 40 大雜法(唐6典 卷6에 依함)		

新羅令의 制定 및 改正에 있어서 母法의 구실을 하였으리라고 생각되는 高句麗令은 現在로서는 그 篇目과 逸文 조차 찾아볼 수 없으므로 中國 것에서 그것을 求하면前述 泰始令 以外에 南朝의 梁令(武帝 天監元年 A.D 503) 30篇이 있는데 그 篇名은 다음과 같다.

1 戸	2 學	3 貢士贈官	4 官品	5 吏員
6 服制	7 祠	8 戶調	9 公田·公用·儀迎	
10 醫藥疾病	11 復除	12 關市	13 劫賊水火	14 捕亡
15 獄官	16 鞭·杖	17 葬葬	18 雜上	19 雜中
20 雜下	21 宮衛	22 門下敬騎中書	23 尚書	24 三臺秘書
25 王·公·侯	26 選吏	27 選將	28 選雜士	29 軍吏
30 軍賞(唐六典 卷6)				

그밖에 新羅의 律令政治에 많은 影響을 주었으리라고 생각되는 隋의 開皇令 30篇과 唐令이 있는데 後者는 十餘次나 改正을 보았으므로 그 中 篇目이 거의 完全한 開元7年令(30卷 27篇)과 同 25年令 그리고 日本의 養老令을 採擇하여 그 篇目을 對比 表示해 보면 다음과 같다. (仁井田陞著「唐令拾遺」pp55 參照)

隋 開 皇 令	唐 開 元 年 7 令	唐 開 元 25 年 令	日本 養 老 令	
			官 位 令	官 品 令
官 品 令	官 品 令	官 品 令		
諸省臺職員令	三師三公臺省職員令			
諸寺職員令	寺監職員令			
行臺諸監職員令				
諸衛職員令	衛府職員令			
東宮職員令	東宮王府職員令			
諸州郡縣職員令	州縣鎮戍獻瀆關津職員令	州縣職員令		
命婦品員令	內外命婦職員令			
祠	祠	祠	後宮職員令	
戶	戶	戶	神祇	
學	無	學	戶	
選	選	選	學	
封	舉	舉	選	
	爵	爵	繼	
	令	令	嗣	

#### 가. 官位令

新羅의 官號는 時代에 따라 變革이 많아 처음에는 新羅 固有의 名稱을 使用하였으나, 其後로는 中國(唐) 傳來의 官職名으로 改稱하기에 이르렀다. 制度 設置의 當初에 있어서는 職에 常守가 있고, 位에 定員이 있어, 官의 尊卑를 判別하고, 才의 大小에 適應하더니 오랜 세월이 지나서 三國史記를 編纂할當時는 이미 文獻의 記錄이 없어져 상세하게 參考할 道理가 없었다.

그러나 法興王 7年(A.D 520) 以後 新羅에 令이 實施되고 있었다는 事實, 그 母法 或은 姉妹法으로 認定되는 上記 中國諸令에 官品令이 存在한 것, 그리고 17等의 官號가 新羅의 固有語로 比較的 그 前期(적어도 法興王代 以前)에 制定되어 있었음을 생각할 때 新羅에도 모든 上下官員에게 等級에 따라 治安權을 兼任 管掌하는 職位를 賦與하는 官品令 乃至 官位令 (新羅令을 이어 받았던지 혹은 摸倣하였으리라 생각되는 日本 養老令은 官位令이라 稱하고 있음)이 制定되어 있었을 것이 分明하다.

新羅 官階의 授與가 骨品과 結付되어 制限되고 있었음은 이미 위에 살펴 본 바와 같다. 史記 職官志의 官位 17等 중 第5等 大阿食 밑에 「從次(大阿食) 至伊伐食 唯真骨受之 他宗則否」라고 있음은 真骨이라면 第5等 以上에 나아갈 수 있음을 말하는 것이며, 第6等 阿食條下에 「自重 阿食至四重阿食」이라 함은 生涯를 通하여 阿食에 머물러 있을 사람 즉 六頭品(得難)을 위하여 特進의 길을 열어준 것이며 第11等 奈麻條下에 「自重奈麻 至七重奈麻」라고 한것도 以下 頭品을 위하여 特進의 길을 마련한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第10等 大奈麻條下에 「自重奈麻 至九重奈麻」

라고 있는 것은 誤記된 衍文인 듯하다. (田鳳德氏의 前揭論文 및 末松保和著『新羅史の諸問題』 p. 407의 表 參照).

#### 나. 職員令

金富軾이 三國史記를 編纂할當時(A.D 1145)는 新羅가 滅亡한 後(A.D 935) 이며 210년이 經過하여 諸文獻이 흩어져서 모든 官制를 昭詳하게 記述할 道理가 없었을 것이다. 官制中 상고할 수 있는 것만을 採擇 成篇하게 되어 史記 職官志에는 [各官府의 所管事務 즉 그 職務權限] 記錄되어 있지 않아 지금에 와서는 所管業務의 內容도 알 수 없는 官府의 數가 적지 않다.

新羅에 있어 官職의 最高位는 太大角干이었으나 이것은 金庾信의 戰勝功에 대하여 殊尤의 禮를 빼문 非常의 位에 不過하였고, 적어도 國事を 摠知하고 治安權을 兼掌하는 最高位는 法興王 18年(A.D 531)에 始置한 上大等이었다. 그리고 가장 初期로 부터 두어 온 官府는 執事省(本名 祖主 또는 執事部)이었는데 이것은 機密事務를 掌理하였고, 그 長은 侍中(一稱 中侍)이었다. 이제 新羅 後期의 治安關係 官府에 관한 職員令을 想定하여 보기로 하자.

##### ① 省·都·府職員令

上大等; 一人 摈知國事

執事省; 侍中(元 中侍) 1人 位自大阿渾 掌機密事務. 侍郎(元 典大等) 2人 位自奈麻至阿渾. 郎中(元 大舍) 2人 位自舍知至奈麻. 員外郎(元 舍知) 2人 位自舍知至大舍. 郎(元 史) 20人 位自先沮知至大舍.

內省(一時 殿中省이라 稱함); 私臣(一時 殿中令이라 稱함) 1人(一時は 3人) 位自衿荷至太  
大角干. 卽 2人 位自奈麻至阿渾. 監 2人 位自奈麻至沙渾. 大舍 1人. 舍知 1人.

兵部; 令 3人〔註 27〕 位自大阿渾至太角干 又得兼宰相·私臣 掌內外兵馬事〔註 28〕 侍郎(元 大監) 3人 位自□渾至阿渾. 郎中(元 弟監 或 大舍) 2人 位自舍知至奈麻. 司兵(元 弩舍知) 1人

註 27) 職官志上에는 「兵部 令1人 法興王 3年始置」라 있고 新羅本紀 法興王條에는 「四年夏 四月 始置兵部」라고 있다.

註 28) 新羅本紀 眞興王條 「2年春3月……拜異斯夫爲兵部令 掌內外兵馬事」乘府(馬馭府); 令2人 位自大阿渾至角干 掌 車乘. 卽3人 位自□渾至阿渾 大舍(一時 主簿라 稱함) 2人 位自兵部大舍同. 舍知(一時 司牧이라 稱함) 1人 位自舍知至大舍. 史 12人 位自先沮知至大舍.

司正府(一時 肅正堂이라 稱함); 令 1人 位自大阿渾至角干. 卽 3人 位自□渾至阿渾. 佐(一時 評事라 稱함) 2人 位自奈麻至大奈麻. 大舍 2人 位自舍知至奈麻. 史 15人

船府(一時 利濟府라 稱함); 令1人 位自大阿渾至角干 掌舟楫之事. 卽3人 位自□渾至阿渾. 大舍(一時 主簿라 稱함) 2人 位自舍知至奈麻. 舍知(一時 司義라 稱함) 1人 位自舍知至大舍. 史 8人.

領客府(元 倭典, 又稱 領客典或司賓府); 令 2人 位自大阿渾至角干 掌賓客之事. 卽3人 位自□渾至阿渾. 大舍(一時 主簿라 稱함) 2人 位自舍知至奈麻. 舍知(一時 司義라 稱함) 1人 位自舍知至大舍 史 8人.

侍衛府; 將軍6人 位自級食至阿渾 掌宮掖禁禦督攝隊伍. 註 大監 6人 位自奈麻至阿渾. 隊頭15人位自舍知至沙渾. 項36人 位自舍知至大奈麻. 卒 117人 位自先沮知至大舍

註 仁井田陞「唐令拾遺」144面 衛府職員令 第4에 開元(7年 및 25年) 令으로서 左右衛大將軍各一人掌宮掖禁禦督攝隊伍라고 復舊하고 있다.

左理方府(一名 左議方府); 令2人 位自級食至通渾 掌刑律. 卽3人 位自□渾至阿渾. 佐(一時 評事라 稱함) 2人 位自奈麻至大奈麻. 大舍 2人 位自舍知至奈麻. 史 10人.

右理方府(一名 右議方府); 令2人 卽2人 佐2人 大舍2人 史 10人.

位自舍知至大舍. 史17人 位自先沮知至大舍. 小司兵(弩撞) 1人 位與史同.

## ② 署·典職員令

新羅王都의 都內 行政機關으로서 가장 오랜 것으로 생각되는 것이 六部少監典이다.

六部少監典(一云 六監典); 梁部 沙梁部 監郎各 1人 大奈麻各 1人 大舍各 2人 舍知各 1人. 梁部 史6人. 沙梁部 史 5人. 本彼部 監郎 1人 監大舍 1人 舍知 1人 監幢 5人 史 1人. 牟梁部 監臣 1人 大舍 1人 舍知 1人 監幢 5人 史1人. 漢祇部 習比部 監臣各 1人 大舍各 1人 舍知各 1人 監幢各 3人 史各 1人 이를 알기 쉽게 圖表化하면 다음과 같다(末松保和「新羅史の諸問題」p. 239에서 轉載).

	A	B	C	D	E
(1) 梁 部	監 郎 1	大 奈 麻 1	舍 知 1		史 6
(2) 沙 梁 部	監 郎 1	大 奈 麻 1	舍 知 1		史 5
(3) 本 彼 部	監 郎 1	監 大 舍 1	舍 知 1	監 幢 5	史 1
(4) 牟 梁 部	監 臣 1	大 舍 1	舍 知 1	監 幢 5	史 1
(5) 書 祇 部	監 臣 1	大 舍 1	舍 知 1	監 幢 3	史 1
(6) 習 比 部	監 臣 1	大 舍 1	舍 知 1	監 幢 3	史 1

六部少監典의 下부에 設置된 것이 大日任典이었던 것 같다.

大日任典; 大都司(一時 大典儀라 稱함) 6人, 位自舍知至奈麻 小都司(一時 小典儀라 稱함) 2人, 位自舍知至大舍 都事大舍(一時 大典事라 稱함) 2人, 位自舍知至奈麻. 都事舍知(一時 中典事라 稱함) 4人, 位自舍知至大舍 都謁舍知(一時 典謁이라 稱함) 8人, 位自舍知至大舍 都引舍知(一時 典引이라 稱함) 1人, 位自舍知至大舍 幢(一時 小典이라 稱함) 6人, 位自先沮知至大舍都事稽知 6人, 都謁稽知 6人, 都引稽知(或云 都引幢又少典引) 5人, 以伐首 10人.

이를 表로 만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B	C	D	E	F
(1)	大都司 1, 都事大舍 1	小都司 1	都謁舍知 2 ? 幢 1	都引舍知 1	都事稽知 1 都謁稽知 1 比伐首 ?
(2)	大都司 1, 都事大舍 1	小都司 1	都謁舍知 2 ? 幢 1	都引稽知 1	都事稽知 1 都謁稽知 1 比伐首 ?
(3)	大都司 1	都事舍知 1	都謁舍知 1 幢 1	都引稽知 1	都事稽知 1 都謁稽知 1 比伐首 ?
(4)	大都司 1	都事舍知 1	都謁舍知 1 幢 1	都引稽知 1	都事稽知 1 都謁稽知 1 比伐首 ?
(5)	大都司 1	都事舍知 1	都謁舍知 1 幢 1	都引稽知 1	都事稽知 1 都謁稽知 1 比伐首 ?
(6)	大都司 1	都事舍知 1	都謁舍知 1 幢 1	都引稽知 1	都事稽知 1 都謁稽知 1 比伐首 ?

典邑署(一時 典京府라 稱함); 卿 2人, 位自奈麻至沙渾 監 4人, 位自奈麻至大奈麻 大司邑 6人, 位自舍知至奈麻 中司邑 6人, 位自舍知至大舍 小司邑 9人, 位自舍知至大舍 史16人, 木尺70人.

表로 고쳐 보면 다음과 같다. (末松保和「新羅史の諸問題」p. 240 表 參照, 小司邑은 9人이 옳은 듯하다.)

東市典·西市典·南市典; 監 各 2人, 位自奈麻至大奈麻 大舍(一時 主事라 稱함) 各 2人, 位自舍知至奈麻 書生(一時 司直이라 改稱함) 各 2人, 位自先沮知至大舍 史 各 4人.

	A	B	C	D	E	F
(1)	卿 1人	大司 1人	中司邑 1人	小司邑 2人	史 ?	木 尺 ?
(2)	卿 1人	大司邑 1人	中司邑 1人	小司邑 2人	史 ?	木 尺 ?
(3)	監 1人	大司邑 1人	中司邑 1人	小司邑 2人	史 ?	木 尺 ?
(4)	監 1人	大司邑 1人	中司邑 1人	小司邑 1人	史 ?	木 尺 ?
(5)	監 1人	大司邑 1人	中司邑 1人	小司邑 1人	史 ?	木 尺 ?
(6)	監 1人	大司邑 1人	中司邑 1人	小司邑 1人	史 ?	木 尺 ?

京都驛(一時 都亭驛이라 改稱함); 大舍 2人, 位自舍知至奈麻. 史 2人.

內司正典(一時 建平省이라 稱함); 議決 1人, 偵察 2人, 紗正百官 史4人.

律世典; 博士 6人

政官(一云 政法典) 司(大司 1人, 史 2人), 僧官(元聖王 元年 始置)

### ③ 州 · 郡 · 縣職員令(外官令)

都督(一時 軍主 或은 捏管이라 稱함) 9人, 位自級済至伊済 仕臣(或云 仕大等) 5人, 位自級済至彼珍済 州助(或云 州輔) 9人, 位自奈麻至重阿済 郡大守 115人, 位自舍知至重阿済 長史(或云 司馬) 9人, 位自舍知大奈麻 仕大舍(或云 少尹) 5人, 位自舍知至大奈麻 外司正 133人, 位未詳 少守(或云 制守) 85人 位自幢至大奈麻. 縣令 201人 位自先沮知至沙済

### 4. 戶 令

1933년 日本의 奈良 東大寺 正倉院所藏 破損古文書 華嚴經論의 經帙 修理時 發見된 内部 布心의 休紙에 新羅時代 戶籍에 관한 古文書가 有名한 「新羅民政文書」(新羅帳籍)로서 모두 62行에 不過하나當時 西原 小京(今 清州) 및 그附近 所在 4個 村落의 村周(面積) · 戶數 · 人口 · 田畠 · 穀田 · 立 · 穀 · 뽕나무의 株數, 牛馬의 數爻 및 이들에 관한 3年間의 增減 變動을 記錄한 것으로서, 當時 中央政府에 對한 村落의 現況報告였으니 이에 의하여 當時의 首都 废州를 떠나 멀리 떨어진 僮杜에 까지도 戶令이 철저하게 실시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리하여 唐 武德戶令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村 · 坊 · 里 · 鄉 등 隣保組織을 이루어 [註 29] 非違를 檢察하고 姦非를 摘發하여 遙相督察하여 自治警察體制와 그 運營을 無滯遂行하였을 것이다. 上記 民政文書(帳籍)에 의하면 村里行政 및 戶口調查에 關하여 每年 一計 討帳을 作成하고 [註 30] 三年마다 戶籍을 改定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註 31] 앞서 지적한 바 있거니와 煙戶의 等級은 上上에서 下下까지 九等으로 나누는 九等戶制를 채택하였으며 [註 32] 人口는 年齡에 의하여 6等級으로 나뉘어 있었다.

註 29) 仁井田陞「唐令拾遺」qq. 214~229. 三國遺事 卷2 孝昭王代 竹旨郎條에 『善行을 한 使吏 侃珍의 子孫을 勅으로써 秤定戶(一里의 事務를 統轄하는 戶)의 長을 임았다』는記事가 있다. 또 國史記 真聖王 3年條에 祐連이 故闕戰死함에 10餘歲된 祐達의 子로써 村主를 繼嗣하였다는 記錄이 있다.

30) 仁井田陞 上揭書 p. 239 武德 및 開元 7年 戶令「諸每歲一造計帳」

舊唐書 卷48 食貨志

31) 舊唐書 卷48 食貨志 武德 開元 7年, 同 25年 諸戶令에 「諸三年一造戶籍 起正月畢三月 一留縣 一送州 一送戶部」라고 있다.

32) 田鳳德의 上揭論文 및 旗田巍의 上揭論文

## 라. 選舉令

新羅에 있어서의 選舉는 新羅本紀의 冒頭에 나오는 始祖 赫居世條의 「及年十餘歲 岐嶽然夙成六部人以其生神異 推尊之 至是 立爲君焉」으로 부터 비롯하여 38代 元聖王의 天意半 人意半의 推舉로 因한 即位[註 32] 末期 神德王條의 「孝恭王薨 無子 爲國人推戴 即位」 등에서 살펴 볼 수 있다.

그러나 法興王 7年 律令이 頒布된 以後의 人臣選舉에 關한記事만이 곧 選舉令의 適用이었을 것이니 이에 關한例는 散見되고 있으나 그 著例로는 三國史記 法興王 19年條에 妃 및 三子와 함께 投降한 金官國主 金仇亥를 禮遇하여 上等의 位를 薦授하고 그 本國을 食色으로 下賜한 特例가 있으며, 또 眞興王 37年條에 源花制度 或은 花郎制度를 採擇하여 人格의 邪正과 行義의 與否를 確認한 然後에 舉用한 것은 選舉令의 徹底한 施行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한편 文武王 13年에 強首를 沙漁에 拜하고 每年 祖 200石을 下賜한 것은 有名한 이야기이며 [註 33]元聖王 4年(A.D 788)에 從來의 弓箭選人制를 고쳐 大學에 讀書三品科를 設置하고[註 34] 成績을 三等으로 考查하여 人材를 登用한 것은 選舉令의 두드러진 改正이며 이 制度의 나타난 進展이었다.

그리고 同王 5年 9月 選舉令의 適用에 關하여 하나의 興味있는事件이 일어났는데 그것은 子玉(人名)을 選拔하여 楊根縣小守(縣令)을 除授하였더니, 이에 대하여 執事部의 史(下吏)인 毛肖가 子玉은 文籍(讀書科)出身이 아니니 地方守令의 職을 除授할 수 없다고 駁言하였음에 대하여 侍中이 反論하고 子玉은 비록 文籍出身은 되지 못하지만 入唐修學한 學生의 經歷을 갖고 있으니 選拔採用함이 不可하다고 主張하여 王의 贊同을 얻었다는 記錄이 있다. (三國史記新羅本紀 元聖 5年 9月條).

또한 唐 開元 7년 및 25年令에 의하면 致仕制와 解官條를 選舉令 중에 規定하고 있는데[註 35] 三國史記에서도 致仕와 解官에 關한記事를 많이 볼 수 있으니[註 36] 이것도 新羅에 選舉令이 있었음을 保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2) 三國史記 新羅本紀 元聖王條 冒頭에 「初惠恭王末年 叛臣跋扈 宣德時爲上大等 首唱除君則之惡 敬信預之 平亂有功 泊宣德即位 即爲上大等 及宣德薨 無羣臣議後 欲立王之族子周元 周元宅於京北二十里會大雨 闕川水漲 周元不得渡 或曰 即人君大位 固非人謀 今日暴雨 天其或者不 立周元乎 今上大等 敬信 前王之弟 德望素高 有人君之體 於是 衆議翕然 立之繼位 既而雨止 國人皆呼萬歲. 並 三國史紀 神文王條에 의하면 「二年……夏四月 置位和今二人 掌選舉之事」라고 있음.

33) 三國史記 新羅本紀 文武王 13年 春正月條.

34) 上揭書元聖王 四年條

35) 通典卷33 職官 15 致仕官「大唐令 諸職事七十 職致仕 五品以上上表 六品以下中省奏聞」

唐六典 卷2 吏部侍郎條「年七十以上 應致仕 若齒力未衰 亦聽釐務」

唐六典 卷2 吏部侍郎條「凡職事官 應觀省及移疾 不得過程 謂身有疾病滿百日 若所親疾病滿二百日 及當侍者 竝解官 申省以聞」

36) 三國史記중에서 致仕의 例를 摘記하여 보면

「文武王四年春正月 金庚信諸老 不允賜風杖」「(同王) 五年春 二月 中侍文訓致仕」

「(同王) 16年……冬11月……宰相陳純乞致仕 不允 賜風杖」

「孝昭王 4年……冬10月……中侍元宣退老」

「(同王) 7年……2月……中侍幢元良老」

「聖德王 12年……冬10月 中侍魏文請老從之」

新羅는 元來 骨品 即 閥族制度를 固守하여 人材登用을 原始貴族에 制限하였으나 後에 花郎의薦舉 或은 弓術의 優劣에 의하여 人物을 推舉한 일도 있었다. 이들 人物採用方法 및 致仕·解官規準은 모두 選舉令을 中心으로 解決되었으리라 생각된다.

#### 마. 宮衛令

唐令(開元 25年)에 의하면 五更三點(午前 5時 10分頃)이 되어, 承天門에서 복을 울리거든 通行禁止를 解除하고 曇間의 時間이 다하여 承天門에서 400回 복을 치면 閉門하고, 다시 600槌를 울리면 坊門을 全部 閉鎖하고 通行을 禁止한다[註 37]. 모든 院內 4面에는 常時 仗을 갖고 守備하되 夜間에는 땅막이를 치며 時間을 區分하여 巡廻 警察한다[註 38]. 모든 倉庫內에는 火燃와 無斷出入을 嚴禁하며[註 39] 宮殿門에 出入하는 者는 반드시 官爵과 姓名을 具錄 禀申한 然後에 許容된다는[註 40] 등의 條規가 있다. 新羅의 宮衛令은 記錄上 남아 있지 않으므로 그 內容을 알 길이 없으나, (1) 王都守護와 王宮護衛를 任務로 하는 큰 規模의 侍衛府가 있었던 것, (2) 始祖 以來로 兩月城 등 城地를 根據로 王宮을 營爲한 것[註 41], (3) 叛徒가 33日間이나 宮闕을 包圍하되 이를 陷落시키지 못한 것, (4) 賊徒가 聚衆하여 包圍犯闕한 것[註 42], (5) 倭賊其他 外賊이 여러 차례 金城을 包圍한 일이 있는 것[註 43] 등으로 미루어 보아 宮衛令乃至 侍衛令을 두어 恒時 이를 守護 警衛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 바. 軍防令

唐軍防令에 의하면 3년마다 한번씩 點檢하여 成年이 된 者를 軍籍에 加入시키고 60歳가 되면 免役하였다[註 44].

「(同王) 26年……冬12月……上大等裴賦請老 不許 賦風杖」  
「憲德王 4年春……以伊食忠永年70 賦風杖」  
「(同王) 11年春正月 以伊食眞元年 70 賦風杖」  
「(同王) 15年春正月……9日……元順 平原二角干 70告老 賦風杖」  
「景德王 17年 2月 下敎 內外官請暇滿 60日者 聽解官」

註 37) 唐雜律 卷26 犯夜條疏議 唐 開元 25年 令.

38) 唐六典 卷20 左藏令條 (唐開元 7年令)

38) 唐六典 卷20 左藏令條 (唐開元 7年令).

39) 唐六典 卷25 左右監門衛大將軍條 (唐開元 7年令)

40) 三國史記 卷34 雜志第3. 同書 新羅本紀 第1 始祖赫居世條

41) 三國史記 新羅本紀 惠恭王 4年 秋 7月 및 同王 16年條

42) 三國史記 新羅本紀 南解其次雄元年秋7月條 및 助賁尼師今3年夏4月條 (同書) 新羅本

紀 儒禮尼師今14年 春正月條 新羅本紀 說解尼師今37年條

(同書) 新羅本紀 訥祇麻立干28年夏 4月條 新羅本紀 慈悲麻立干2年夏 4月條

43) 唐六典 卷5 兵部郎中條 및 舊唐書 卷43 職官志 「凡三年一簡點 成丁而入 六十而免」(開元7年令) 三國史記 卷44 列傳第4 斯多舍條에 「眞興王命伊食異斯夫 襲加羅(一作加耶)國 時斯多舍年十五六 請從軍王以幼少不許 其請勤而志確 遂命爲貴幢裨將 其徒從之者 亦衆……舍始與武官郎約爲死友 武官病卒 哭之慟甚 七日亦卒 時年十七歲」라고 있어, 斯多舍이 15, 6세에 從軍하였으며 또 金慶信이 百濟를 滅하기 為하여 從軍한 때의 年齡은 66세였으니 (A.D 660 百濟가 亡하고 金慶信은 79세로 A.D 673년에 殤하였다.) 모두例外의 경우에 屬한다. 眞興王이 年少한 것을 理由로 斯多舍의 從軍을 一旦 不許하였음은 軍防令에 違反하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其他 同書 列傳 卷3 金慶信(下)條에 「居烈州大監阿珍舍一吉干謂上將軍曰 公等努力速法 吾年已70 能得幾時活也 此時是吾死日也」라고 있어 70歳 從軍의 例가 보인다.

44) 唐擅輿律 卷16 不給發兵符條疏議 및 宋刑統擅輿律 卷16 同上條 通典 卷29 職官11 武官下折衝 府「衛士以三(二의 誤) 百人爲團, 團有校尉 五十人爲隊 隊有正」

唐六典 卷5 兵部郎中條 및 舊唐書 卷43 職官志 「火十人 有六駄馬」

軍編制에 있어서는 衛士 10人을 「火」라 하여 火長이 引率하고, 50人을 「隊」라 稱하여 隊正(또는 隊頭)이 領率하였으며, 100人을 「旅」라 불러 旅帥가 指揮하고, 200人을 「團」이라 稱하여 校尉가 長이 되었다. 每軍에는 大將 1人, 副2人, 判官 2人, 典4人, 總管4人, 子將(小將)8人, 軍鼓12人, 吹角12人, 司兵·司倉·司騎·司胄·城扇各 1人을 두고 每隊 50人에는 押官 1人, 隊頭 1人, 副 2人, 旗頭 1人, 副 2人, 火長 5人을 둠을 原則으로 하였다. 그리고 將帥가 出征할 때 士兵이 1萬人以上일 때는 長史·司馬·倉曹·胄曹·兵曹·參軍各 1人을 두고 만일 5千人以上일 경우에는 司馬를 두지 않았다[註 44].

防人番代는 一齊히 10月 1日을 기하여 交代하였다[註 45].

무릇 衛士를 一線의 征戍 鎮防에 보낼 때는 團伍를 나누되 弓馬에 能한 者를 越騎團으로 編成하고 其餘를 步兵團으로 하여 主帥 以下가 統領하며[註 46]. 모든 衛士는各自 麥飯 9斗와 米 2斗 및 介胄戒具弓矢등을 備持하고[註 47] 其他 各種 武器와 道具類를 火 및 隊單位로 具有하였다[註 48].

父兄子弟를 一線에 併遣하지 않으며 祖父母나 父母가 老疾中에 있고 집에 兼丁이 없는 경우에는 征行 및 番上을 免하였다[註 49]. 征行時 衛士 以上이 行軍中 死亡하면 所持品과 屍身을

通典 卷29 職官11 武官下 折衝府「十人爲火 火有備六駄馬驥」

通典卷148 兵1令制附「每軍大將一人, 副一人, 判官二人, 典四人, 總管四人, 子將八人」

唐六典 卷5 兵部郎中條 및 舊唐書 卷43 職官志「凡將帥出征 兵滿一萬人已上 置長史司馬倉曹胄曹參軍各一人 千五百人已上 減司馬」

註 45) 唐擅興律 卷16 遣番代違限條疏議 및 宋刑統擅興律 卷16 同上條「依軍防令 防人番代 皆十月一日交代」

註 46) 唐六典 卷5 兵部郎中條 및 舊唐書 卷43 職官志「凡差衛士征戍鎮防 亦有團伍 其善弓馬者 爲越騎團」

舊唐書卷 44 職官志「以便習騎射者 爲越騎 餘爲步兵」

三國史記 列傳 第4 居道條에 依하면 新羅에서는 그 初期인 脫解尼師今時 이미 或種의 騎兵訓練을 行하였던 것 같다. 「每年一度集羣馬於張吐之野 使兵士騎之 馳走以爲戲樂」이란 隣國을 奇襲하기 爲한 單純한 衝策만으로는 생각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同書 職官志下 武官 諸軍官條에 「步騎幢主」「著衿騎幢主」「步騎監」「領馬兵」「領騎兵」「領步兵」等이 軍號條에 「二弓」「長槍幢」「弩幢」「雲梯幢石投幢」等이 있음을 보건대 新羅에서는 일찍부터 騎兵 弓兵 步兵 長槍兵 攻城兵等 多數 兵種을 特殊訓練하였다. 當이며 戰陣에 臨할 때에 비로소 兵種別로 區分 編成한 것 같지 않다. 또 三國史記 列傳 第4 金陽條에는 A.D 838年 「12月……將軍駱金·李順行以馬兵三千突入彼軍……(開成) 4年 (A.D 839) 正月 19日……陽於是命 左右將軍領騎士 行軍曰……」이라고 있어 祐徵軍이 騎兵를 使用하여 閔哀王軍을 慘敗시켰음을 記錄하고 있다. 其他 三國史記 列傳 第2 金度信條(中)에 있는 「麗人知之來追 度信使葛弩俱發」이라는가 同書 列傳 第3 金度信條(下)에 있는 「時長槍幢獨別營 遇唐兵三千餘人 捉送大將軍之營 於是諸幢共言 長槍營獨處成功」等의 記錄은 弓兵, 長槍兵의 戰功을 말하고 있다.

註 47) 新唐書 卷50 兵志「麥飯 九斗 米 二斗 皆自備 并其介胄戎具 藏於庫 有所征行 則 視其入 而出給之」

註 48) 仁井田陞 唐令拾遺 368面 「(開元25年軍防令) 諸火具烏布幕·鐵馬孟·布槽·鋒·鑊·鑿·碓·筐·斧·鉗·鋸皆一, 甲牀二, 鎗二, 隊具火鑊一, 胥馬繩一, 首羈足絆皆三, 人具弓一矢三十, 胡祿·橫刀·礪石·大觴·氈帽·氈裝·行縢皆一.」

註 49) 唐六典卷5 兵部郎中條 및 舊唐書 卷43 職官志「若父兄子弟 不併遣之 若祖父母父母老疾 家無兼丁 免征行及番上」

新羅에 있어서는 父兄子弟를 一線에 併遣한 例가 많다. 三國史記 卷43 列傳第3 金度信(下)條下의 「居烈州大監阿珍含一吉干……便橫戟突陳而死 其子亦隨而死」, 同書 卷47 列傳第7 丕寧子條下의 「丕寧子……即 鞭馬橫槊突厥陳 格殺數人而死……(其子舉眞)……奔入敵中戰死」라는가, 官昌이 其父品日과 함께 從軍한 것(同書 同處 官昌條) 등 그 例가 散見된다. 新羅의 軍防令이 隣國 唐 및 日本에 比하여 獨特하였음을 알 수 있다.

本鄉에 送還하였으며 [註 50] 士卒이 敵前에서 命令에 不服從하면 大將이 刑罰을 專行하였다 [註 51]. 大將이 出征할 때에는 告廟한 後 斧鉞을 받고 辭行을 畢한 後는 다시 집에 反宿하지 않고 [註 52] 征途에 오른다.

이 밖에 軍器의 保管 曝涼 損失時의 補償 및 私家所持의 禁止와 兵糧 烽堠 等에 關하여 規定하고 있다.

위에서 唐軍防令을 中心으로 史記와 比較 說明하여 보았으나, 元來 新羅의 軍事組織은 隋·唐, 그것과는 根本的으로 相異한 點이 많음은 앞에서도 지적한 바 있다.

#### 사. 衣服令

當時로는 治安안을 掌握하여 行使하는 官員은 없었으므로 오늘날의 警察制服을 想像할 수는 없다. 그러나 嚴格한 階級國家를 形成하고 있었으므로 그 尊卑를 表現하기 為한 衣服의 制는 國初로 부터 慣習化하였던 것 같다. 三國史記 新羅本紀 法興王條에 의하면 同王 7年春正月에 「始制百官公服 朱紫之秩」이라고 있으며, 이에 相應하여 同書 雜志 第2冒頭에 「新羅之初 衣服之制 不可考色 至第二十三華 法興王 始定六部人服色尊卑之制 猶是夷俗」이라고 記錄하고 있다. 생각컨대 法興王 7年 律令을 頒布할 때 過去 不文法으로 施行되어 오던 服制 服色을 衣服令으로 成文化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이 法興王 때의 服制는 中國의 影響을 받은 것이 아니고 穀民族 固有의 習俗에 準한 것임을 注意해야 할 것이며 그 內容은 다음과 같다. 즉

自太大角干至大阿漁	紫衣
阿滄至級漁	緋衣 並牙笏
大奈麻·奈麻	青衣
大舍至先沮知	黃衣
伊漁·迎漁	銀冠
波珍漁·大阿漁	衿荷緋冠
上堂大奈麻·赤位大舍	組纓

그러나 그 後 真德王 2年(A.D 648) 金春秋가 入唐하였을 때 唐服을 襲用할 것을 請하여 太

註 50) 唐雜律 卷26 從征從行身死條並疏儀 및 宋刑統雜律 卷26 同上條「諸從征及從行 公使於所在身死 依令 應送還本鄉 疏儀曰 從征謂從軍征討 及 從行謂從車駕行 及從東宮行 並公事充使 於所在身死 依令 應送還本鄉者 軍防令 徵行衛士以士 身死行軍 具錄隨身資財及屍 付本府人將還」

三國史記 列傳第1 金慶信(上)條에 庆信이 捕虜된 百濟裨將 8人과 品釋夫妻의 骸骨과를 交換 安葬한 일이 있다. 그러나 이것은 여기 軍防令에 해당하는 事例라고는 볼 수 없다.

51) 唐六典 卷5 兵部郎中條 및 舊唐書 卷43 職官志 「凡大將出征……臨軍對寇 士卒不用命 並得專行其罰」 日本養老軍防令第25條에 上記와 비슷한 規定이 있다.

三國史記 列傳第2 金慶信(中)條에 「(太宗武烈) 王以手書告慶信 出疆之後 賞罰專之 可也」라고 있는데 이것은 金慶信이 唐의 蘇定方과 相應하여 高句麗의 平壤을 攻擊할 때의 記錄이므로 모든 戰爭에서 그러했던 것 같지는 않다.

52) 唐六典 卷5 兵部郎中條 및 舊唐書 卷43 職官志에 「凡大將出征 皆告廟 授斧鉞 辭齊太公廟 辭訖 不反宿於家」라고 있으며 日本 養老軍防令 第18條에도 이와 비슷한 規定이 있다.

三國史記 列傳第1 金慶信(上)條에 「王又拜慶信爲上州將軍 令拒之 慶信鬪命即駕 不見妻子 逆擊百濟軍走之……三月 還命王宮 未歸家 又急告百濟兵出屯于其界……慶信又不入家 練軍繕兵向西行 于時其家人皆出門外待來 慶信過門 不顧而行」이라고 있다.

宗의 允許를 얻고 兼하여 衣帶의 賦給을 받아 還國 施行하여 羅服을 唐의 服制로 바꿨으며, 文武王 4年(A.D 664)에는 婦人の 服制도 全部 唐制로 革新하였는데 이로 부터 衣冠이 中國과 同一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이때의 衣服令은 唐朝의 그것과 비슷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 德興王 9年(A.D 834)에 이르러 風俗이 점차 素亂하여서 民衆이 奢侈에 흐르고 珍奇한 物件을 貪하는 등 固有의 美風良俗과 素朴儉素한 氣風이 없어져 이에 對한 對策으로 새 法令을 만들었다(敢率舊章 以申明命).

이때의 衣服令은 眞骨大等 · 真骨女 · 6頭品 6頭品女 · 6頭品 5頭品女 4頭品 · 4頭品女 · 平人 · 平人女의 衣服 · 車騎 · 器用 · 屋舍에 걸쳐 詳細하고 周密하게 規定되었던 것 같다. (三國史記 卷第 33 雜志 第 2).

衣服令은 骨品을 中心으로 規定하고 있으나 新羅에 있어서 모든 官品 職位는 骨品制와 密接하게 結付되어 있었으므로 衣服令은 곧 一般官員의 位階의 表示인 制服에 關한 規定으로 볼 수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當時 이 一般官員이 治安에 關한 事務를 分掌하고 있었음이 分明하다.

#### 아. 公式令

三國史記 新羅本紀 哀莊王 6年(A.D 805)條에 의하면 「秋8月 頒示公式 20餘條」라고 있는데 여기 이른바 公式이란 公式令을 意味하는 것으로 解釋된다. 元來 新羅에 있어서 令은 앞서 지적한 바 있거니와, 이미 法興王 7年(A.D 520)에 公布되었으나, 이때까지의 中國의 主要한 王朝의 모든 令——晉의 泰始令(A.D 268)을 비롯하여 南朝의 梁令(A.D 503) 및 北魏令(A.D 431 및 492)——은 公式令의 篇名을 갖고 있지 않았으므로 이를 母法으로 하는 高句麗 및 新羅令도 公式令의 篇을 갖추지 못하고 同篇의 內容은 다른 諸篇에 分散되어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中國에 있어서 公式令의 篇名이 나타난 것은 아마 隋의 開皇令(A.D 582)으로부터 비롯한 것 같으며, 우리나라 文武王이 百司 및 州郡의 銅印을 鑄告 頒賜한 것은 A.D 675年的 일이다.

그런데 이 史記 新羅本紀 文武王 15년의 「春正月 以銅鑄百司及州郡印 頒之」의記事는 唐開元 7年(A.D 719)令의 逸文 「凡內外百司 皆給銅印一鈕」(……其文曰 某司之印)와 對比할 때 그것이 實質的으로 보아 公式令의 實施임이 틀림 없으므로 新羅에서는 오랫동안 公式令이란 獨立한 篇名 없이 그 內容을 施行하여 오다가 前記 哀莊王 때에 이르러 오랜동안의 懸案인 公式令 20餘條를 一括, 獨立 篇名을 부쳐 一般에 公布한 것으로 생간된다. 當時는 新羅의 貴族社會가 漸次 腐敗하여 政爭이 수없이 되풀이 되기 시작하던 때이므로 官紀를 바로 잡기 爲한 試圖로 오랜 課題이던 法令 整備로 虐하였다 것으로 보인다.

新羅의 公式令의 內容을 把握하기 위하여 唐公式令의 逸文과 日本의 養老令을 對比 檢討하면 다음과 같다.

[日養老令]

[唐令의 逸文]

詔書式

制書式(開元 25年令)(貞觀 및 永徽令에서는 詔書式)

[唐六典 卷1 左右司郎中員外郎條] [凡上之所以逮下, 其制有6, 日制 · 敕 · 册 · 令 · 教 · 符, 天子曰 制曰 敕曰冊, 皇太子曰令, 親王公主曰一, 尚

書省下於州 州下於縣 縣下於鄉 皆曰等」

勅旨式

勅旨式

(唐六典 卷9 中書令條) 凡王言之制有七，一曰冊書，二曰制書，三曰慰勞  
制書 四曰發目勅，五曰勅旨(謂百司承旨，而爲程式，秦事請施行者)，六  
曰論事敕書，七曰敕牒

論奏式

奏抄式

(唐六典 卷8 待中條) 凡下之通于上，其制有六，一曰奏抄(謂祭祀支度圖  
用，授六品以下官，斷流以下罪 及除免官當者 索爲奏抄)，二曰奏彈 三曰  
露布 四曰議 五曰表 六曰狀。

奏事式

便奏式

(公式令論奏式條集解) 律令內應奏諸事，大者爲論奏，中者爲奏事，小者  
爲便奏，是合唐律令

奏彈式

奏彈式

(唐六典 卷8 待中條) 凡下之通于上 其制有六，二曰奏彈(謂御史糺劾百司  
不法之事)

——

露布式〔唐六典 卷8 待中條〕凡下之通于上 其制有六……三曰露布(謂諸軍  
破賊 中尚書兵部 而聞奏焉) 三國史記，新羅本紀 太宗武列王條「露布於  
大唐」

——

解 式

解式〔敦煌發見經卷紙背 開元公式令殘卷〕符式 凡應爲解向上者 上官向下  
皆爲符

移 式

移式〔敦煌發見經卷紙背 開元公式令殘卷〕右尚書省 與諸臺省相移式 內  
外諸司 非相管隸者 皆爲移

關 式

關式

〔公式令解式條集解〕檢唐令……尚書省內 吏部與兵部 相報答者 爲關也

牒 式

牒式

〔公式令解式條集部〕檢唐令……尚書省內諸司 爲故牒也

符 式

符式 〔唐會要 卷26 殘表例〕尚書省下州 州下縣 縣下鄉 皆曰符也

平出式，不關式，平關式

——

啓 式

飛驛式 〔開元25年令〕諸州有急速大事 皆合遣驛。 諸在京諸司有事 須乘驛 皆合  
遣驛

——

辭 式

告身式

位記式

勅授位記式	制授告身式
奏授位記式	奏授告身式
判授位記式	—
會式	會式

[公式令 諸司應會式條 集解] 謂被管名申於所管之省 省又押而是爲押署耳 見  
過所式 唐令 過所式[唐六典 卷6 司門郎中員外郎條] 凡度關者 先經本部本司請過所  
在京則省給之 在外則州給之 雖非所部 有來文者 所在給之

其他 唐令의 主要 逸文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1) 諸寫經史羣書 及撰錄舊事 其文有犯國諱者 皆爲字不成
- (2) 神寶·受命寶·皇帝行寶·皇帝之寶·皇帝信寶·天子行寶·天子之寶 天子信寶의 用途 (白玉으로製作)
- (3) 太皇太后·皇太后·皇后·皇太子 皇太子妃寶 皆以金爲之
- (4) 凡內外百司 皆給銅印一鈕……內外諸司有傳符銅符之處 各給封符印一枚……諸有司從行者 各 紿行從印
- (5) 諸給驛馬 紿銅龍傳符 無傳符處 爲紙券
- (6) 諸制敕宣行 文字脫誤 於事理無改動者 勘檢本案 分明可知 即改從正 不須覆奏 其官文書脫誤者 諸長官改正
- (7) 依令 內外官應分番宿直
- (8) 文案不須常留者 每三年一揀除

무릇 國家의 存立 發展과 治安의 維持를 為하는 庶政運營에 있어 當時의 主權者인 君王 및 그 代理機關인 內外 大小 百司의 意思表示가 그 連結을 이루고 있었다. 三國史記에 散見되고 있는 詔·勅·冊·赦·表·敎·報書·具狀申奏(新羅本紀 文武王下) 등은 上의 逮下, , 의 通上, 同等諸官司間의 相互通報, 事由의 性質 및 大·中·小에 따른 意思表示의 形式的 相異에 關한 것들이다. 그리고 위에 列舉한 諸式中에는 治安業務를 執行함에 있어서 日常 使用되던 公式이 많음을 注意해야 할 것이다.

#### 자. 鹿收令

三國史記 新羅本紀 炙知麻立干條에 의하면 同王 9年 3月에 비로소 四方에 郵驛을 設置하고, 尤驛典·京都驛 등의 機關을 두었는데, 各驛에는 반드시 馬匹을 備置하였으므로 그 匹數, 飼育, 備替 等에 關한 規定을 두었을 것이며 또 權臣 등에 대하여 下賜하는 馬匹에 [註 53] 關하여도 必要한 規定이 있었을 것인데, 이것들은 法興王 7年 律令頒布時 鹿牧令으로 一括 施行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關하여 唐令 逸文 및 日令中에서 參考될 만한 것을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各驛의 馬匹數에 대하여;

註 53) 三國史記 新羅本紀 文武王 上條에 「九年…冬…頒馬法 凡一百七十四所, 屬所內 二十二, 官 一十, 賦廩信太角干六, 仁問太角干五, 角干七人 各三, 伊浪 五人各二, 蘇判四人 各二, 波珍浪六人 大阿 十二人 各一, 以下 七十四 所隨宣賜之」라고 있는데 이것은 馬法에 關한記事이지만 賦馬의 뒷 받침이 된다. (列傳 金廩信傳(下), 廩信孫允中에게 「賜絕影山馬一匹」등)

[唐六典 卷5 駕部郎中員外郎條 註] 量驛之閑要 以定其馬數 都亭七五疋 諸道之第一等 減都亭之15, 第2 第3皆以15爲差……

[日本養老廐牧令第16條] 凡諸道置驛馬 大路廿匹 中路十四匹 小路五匹 使稀之處 國司量置不必須足……

馬匠의 飼育에 대하여;

[唐6典 卷17 典廐令條]……馬粟1斗 鹽6勺 乳者倍之.

象日給藥6匁 馬駝牛各1匁.

諸牧馬牛 以120爲群,

馬匹의 管理 및 備替에 關하여;

[唐六典 卷17 諸牧監條] 諸官畜在牧而亡失者 紿訪限 百日 不獲 準失處當時估價徵納……

諸在牧之馬皆印 印右膊以小官字……

[唐廐庫律 卷15] 即驛長私借人馬驢者 減一等 淮令 驛馬驢給以後死 郵驛長陪墳 是故驛長借人驛馬 得罪稍輕.

[廐牧令軍團官馬條義解] 案唐令 因公事死失者 官爲立替 在家死失 卅日內備替라고 있는데 이것은 馬陝에 關한記事이지만 賜馬의 뒷반침이 된다. (列傳 金庚信傳(下), 庚信孫允中에게 「賜絕影山馬1匹」 등)

#### 卦. 關市令

新羅本紀 智證麻立干條에 의하면 同王 10年 春正月 京都에 東市를 두고, 또 孝昭王 4年(A.D 695)에는 西市典과 南市典을 두어 兩市를 管理하였는데, 이것은 모두 關市令에 의하여 施行되었을 것이다. 參考로 唐 關市令 중 主要 逸文을 적어 보면 다음과 같다.

[唐六典 卷20 京都諸市令條] 凡市以日午 擊鼓 300聲 而衆以會 日入前7刻 擊鉦 300聲 而衆以散

諸市每肆立標 題行名

秤以格 斗以概

諸賣買奴婢牛馬駄驢驢等 用本司本部公驗以立券

其造弓矢長刀 官爲立樣 仍題工人姓名 然後聽鬻之 諸器物亦如之

以爲濫之物 交易者 沒官 短狹不中量者還主.

[通典 卷11 食貨11 露爵] 其商賈 淮令 所在收稅

[唐六典 卷6 司門郎中員外郎條] 諸度關者 先經本部本司請過所 在京則省給之 在外州給之 雖非所部 有來文者 所在給之 諸度關津 及乘船筏上下 經津者 皆當有過所

[唐衛禁律 卷8 不應度關條疏議] 依令 各依先後而度

#### 卦. 考課令

神文王 元年 8月 王의 下敎에 「有功者를 褒賞하는 것은 往聖의 良規이고 有罪者를 誅責하는 것은 先王의 令典이라」하여 賞罰 黜陟은 建國以來의 法規임을 밝혔으며, 聖德王은 그 10년 11

月에 親히 百官箴을 지어 群臣에게 알려서 각職官의 規戒를 삼계 함으로써 考課의 基準을 알게 하였던 것 같다. 그리고 景德王은 그의 7年 8月 비로소 常設職인 貞察 1員을 두어 百官을 紹察케 하였던 것이다. 三國史記에는 唐令 逸文에서 보는 바와 같은 詳細한 考課 規準을 閱讀할 수 없으나, 具體的인 實例는 散見할 수 있다.

(1) 婆娑尼師今 11年 7月 使者 10人을 地方에 分遣하여 州·郡主中 公事에 懈慢하고 田野를 荒廢케 한 者를 廉察하여 이를 贶黜한 것,

(2) 眞興王 23年 9月 加耶의 謀叛을 平定한 副將 斯多含의 功을 第1等(最)으로 論定하여 良田 및 生口 200을 賞賜한 것,

(3) 文武王 8年(A.D 668) 平壤을 包圍하여 高句麗를 滅한 後 諸將에게 論功行賞하였는데 이 때 鮑川戰鬪에서 橋下渡水하여 大勝을 거둔 沙渾 求律은 功은 비록 第一等이었으나 軍令을 어기고 스스로 危道로 進入하였다 하여 錄籍되지 못한 것,

(4) 善德王 14年 庚信에게 爵賞을 加하고 眞德王 太和元年(A.D 648) 다시 論功하여 伊食으로 增秩하는 同時 上州行軍大摠管을 拜하였으며, 文武王 3年(A.D 663)에 田 500結을 加賜하고 同王 8年 太大舒發翰의 職과 食邑 500戶를 授與하는 同時 輿杖을 下賜하고 上殿不趨케 한 것,

(5) 金仁問에게 故大琢角干 朴細의 食邑 500戶를 下賜한 것,

(6) 同王 13年 正月 強首를 沙渾에 拜하고 每年 租 200石을 下賜케 한 것,

(7) 憲德王 14年(A.D 822) 入唐宿衛하다가 歲餘에 歸還한 金昕에게 不辱君命의 名目으로 南原太守를 擢授한 것,

(8) 奈解尼師今 때 2次나 大戰功이 있으면서도 上司에게 미움을 받아 記功되지 못한勿稽에게 關한記事 등을 모두 考課와 關聯있는 事例들이다. 그런데 新羅 後期에 이르러는 官吏의 功過考課의 令이 자못 解弛되었는데, 憲德王때 執事侍郎 祿眞이 疾疾에 있는 上大等 忠恭角干에게 進言한 말 가운데 잘 나타나 있다(三國史記 新羅本紀 憲德王條).

#### 타. 假寧令

三國史記 卷45 列傳 第5 祿眞條에 의하면 「上大等 忠恭角干이 政事堂에 앉아 內外官 被選者の 姓名 履歷을 帳簿에 註記하고 缺員 補職을 擬議하다가 退勤後 疾病에 걸려 國醫를 불러 診脈 問議하니 病이 心臟에 들어 龍齒湯을 服用해야 한다 하므로 드디어 21日間 休假를 얻어 門을 닫고 賓客을 만나지 않았다」는記事가 있으며, 또 同書 新羅本紀 景德王 17年條에 의하면 同年 2月 下教하여 內外官員 請暇 滿 60日이 된 者는 解官토록 命하였다고 있는데 이것들은 모두 假寧令의 適用이라고 생각된다. 元來 假寧이란 官人에게 주는 休假를 意味하는데 假는 暇의 뜻이오 寧은 歸寧을 意味한다. 古來 假寧令에 關한 逸文 中 參考되는 것을 들어 보면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初學記 卷20 假] 晉令, 急(急白氏六帖作給)假者, 一月五急, 一年之中, 以 60日爲限, 千里內者

疾病申(申, 同上)作中延 20日 及道路解故 95日

〔敦煌發見唐職官表〕假寧令……元日 多至 並給 7日(節前3日, 節後3日) 寒食通清明 紿暇  
4日, 夏至臘各三日(節前1日, 節後1日) 正月 7日 15日 晦日 春秋二社 2月 8日, 3月 3日, 5月  
5日, 三伏, 7月 7日, 15日, 9月 9日, 10月 1日, 及每月旬休假 1日 外官 5月 9日 紿假 田假 授  
衣假分爲兩番 各 15日

#### 四. 其 他

上記한 것 외에 醫疾令[景德王 17年條, 列傳第5 祿眞條, 列傳 卷10 甄萱條 參照], 哀葬令[列  
傳卷4 金陽條(및 金昕), 列傳 第5 金后稷條, 列傳 第6 强道條 參照] 獄官令 등이 있었을 것을  
추측되며, 또 이것들은 治安行政執行의 基準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